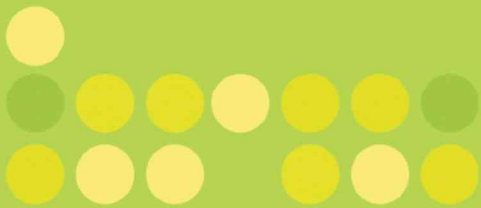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www.welfare.seoul.kr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 성 규

= 연구진 =

연구 책임 : 김 지 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 : 김 세 립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원)

= 자문위원 =

김 재 창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박 옥 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박 현 영 (서울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어 인 순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유 연 희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 장애인복지팀장)

정 현 경 (서울시장래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최 용 기 (서울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황 백 남 (서울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요약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 조사목적

-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및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수적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필요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역적 상황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1년 4월 14일 시행)」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은 2차 조사주기에 해당하는 해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시행 및 주기 규정
 - 2010.12.30. 의결, 2011.01.13. 공포, 2011.4.14.시행
- 1차 조사 실시(2011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1-연구-12)」를 통해 1차 조사 실시

2. 조사설계

□ 표본설계

- 목표집단 :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1,000명
- 응답자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성원수, 학력
 - 장애상태 : 주장애유형 및 등급, 중복장애 유무 및 등급, 장애 발생시기
 - 거주형태 : 재가/시설거주(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그룹홈 등 전환서비스시설 거주 포함)
 - 수급여부 : 수급/비수급

○ 고려사항

- 재가장애인은 자치구별 장애인수 및 장애유형별 분포현황을 고려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표집함
-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이 가능한 조사원 섭외 등 조사운영을 위해 재가 장애인 조사비율을 높임

□ 조사지 개발

○ 개발 방향

- 조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1차조사(2011년)에 사용한 조사지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시의 복지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첨삭함
- 특히 최근 서울시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자리 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조건 및 지원방안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킴
- 응답 편의와 조사의 간결성을 위해 1차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가장 욕구가 높은 영역으로 밝혀진 소득보장, 고용, 주거,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함
- 조사지 제작비 절감 및 조사 편의를 위해 재가장애인용과 시설거주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함

○ 전문가 의견 수렴

- 현장 및 서울시, 재단 전문가 등 총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사문항 및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3. 조사운영

□ 조사기간

- 재가장애인조사 : 2014. 7월 ~ 2014. 9월
- 시설장애인조사 : 2014. 8월 ~ 2014. 10월

□ 조사방법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전화조사를 선호하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
-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응답자의 경우 소득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문항에 한하여 가족 및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하도록 함

4. 최종응답자 특성

- 재가 장애인 705명, 시설 장애인 185명으로 총 89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남성 504명, 여성 386명으로 응답하였으며, 주장애유형은 지체장애 357명, 뇌병변 179명, 지적/자폐성장애 150명, 뇌병변장애 179명, 청각 103명, 시각장애 96명이 응답함

II. 조사결과

1. 소득보장 영역

- 전체 장애인의 80%이상이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보였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20만원 미만이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주요한

생활비 마련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전체 장애인 중 부채가 있는 장애인은 20.8%로 나타났으며, 부채보유액은 3000만원 이상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재가장애인이 시설장애인에 비해 부채를 많이 보유함
- 부채발생원인은 주택임대보증금과 생계비가 각 35%이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프로그램은 장애연금 상향지원 및 장애인 의료비지원확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2. 고용 영역

- 임금근로 경험은 4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했던 직장유형은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가 30.8%로 나타남
- 현재 취업형태는 59.8%가 무직으로 응답하였으며, 현 직장유형은 사회복지관련시설이 33%로 나타났고, 취업경로는 친구 등 지인소개가 35%로 나타남
- 80%에 가까운 취업장애인이 현 직장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 사유로는 임금이 80%로 나타났으며, 60%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미취업상태인 장애인들은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8%였고,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해서가 71.7%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원하는 직장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27.5%로 응답함

3. 주거 영역

- 주택유형은 아파트(49.4%)가 가장 높았고, 점유형태는 월세(33.6%)가 가장 높음

- 공공주택의 유형은 영구임대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만족도는 57.9%가 만족하였고 불만족하는 이유는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주택에서 수리받고 싶은 곳은 화장실이 33.6%로 가장 높았음

4. 일상생활 영역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은 57%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 이용시간은 100~200시간이 30%로 응답, 희망하는 서비스 시간은 200~400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 서비스의 만족도는 50%가 만족하였고, 28.9%가 불만족, 불만족 이유는 필요한 시간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음
-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공공시설에서는 택시, 일상생활영역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의료영역에서는 비수급자 지원, 지역사회 환경에서는 이동 편의성, 전환서비스에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확충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5. 기타 영역

-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일상생활(16.3), 주거(10.5)로 나타남
-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영역이 130건, 소득영역이 12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장애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례는 56.2%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장애여부는 10.3%가 있고 89.2%가 없다고 응답

-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이 43%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20만원~40만원, 40만원~60만원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59.5%)로 나타남
- 재가장애인에게 탈시설 경험은 15.2%가 탈시설을 했다고 응답했고, 탈시설 시 힘들었던 사항은 생활비 부족이 가장 높았음
- 재가장애인 중 가족과 동거 여부는 67.7%가 가족과 동거를 한다고 하였고, 독립욕구는 30.82%가 독립하고 싶다고 응답하며,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문제 미해결이 77%, 생활비 마련 곤란이 76%로 나타남
- 전환서비스 관련 질문에서 경험있음이 7.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환서비스 경험이 도움을 주는 정도는 48%가 매우도움, 36%가 도움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환서비스 탈락 경험은 2.4%가 경험있음으로 응답함
- 시설거주장애인 중 50.3%가 자립욕구가 있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살집이 1순위, 생활비 보조가 2순위로 나타남

III. 정책제언

1. 서울시 자립생활정책의 방향
 - 현실을 반영한 취업지원 정책
 -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과반수이고 공공기관의 알선에 의한 취업비율이 높지 않아서 더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가장 큰 직장생활 불만족 사유는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중증장애인을 위한 적정임금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보여줌

-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상당수이고 그 이유로 심한 장애 정도를 들어 장애 정도에 맞는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과반수가 취업지원 교육을 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취업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음을 들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유형에 따라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황 등 생활실태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중점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영역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차이가 나타남
 - 특히 평생교육이나 여가문화, 양육 등 기타영역에서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남
 - 이러한 장애유형별 지원욕구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
-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대다수가 가족 또는 친인척,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단체, 친구나 선후배 등의 도움을 받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활동보조지원이나 민간단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음
 -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지역공동체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전환서비스 확충

- 전환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전환서비스가 지역사회 자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음
-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로 막는 생활비, 활동지원서비스, 주거문제 등이 해결된 상태에서 자립생활역량을 길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환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 탈시설정책의 방향

-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반수만이 자립생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로 나가기에는 소득, 주거, 일상생활지원 등 제반여건이 충분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시설거주 장애인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자립생활 또는 지역사회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

-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특히 국가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서울시 내에서도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들의 공조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속에도 중증장애인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3
1) 조사목적	3
2) 추진경과	3
2. 조사설계	4
1) 표본설계	4
2) 조사지 개발	6
3. 조사운영	8
1) 조사원 및 조사코디네이터	8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8
3) 응답자 섭외	8
4. 최종응답자 특성	9
제2장 조사결과	11
1. 소득보장 영역	13
1) 소득	13
2) 부채	21
3)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27

2. 고용 영역	28
1) 취업 경험	28
2) 취업 현황	30
3) 취업 욕구	39
4)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47
5)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욕구	48
6) 필요로 하는 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54
3. 주거 영역	55
1) 주거 현황	55
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64
4. 일상생활 영역	65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65
2) 활동보조서비스 비이용 실태	73
3) 의료서비스 비이용 실태	83
4)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영역	86
5)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87
5. 기타 영역	92
1) 자립생활지원 전반에 대한 의견	92
2) 출산 및 양육지원	98
3) 탈시설 경험	104
4) 가족으로부터의 자립 욕구	109
5)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	113
6) 자립에 대한 욕구	119
7) 전환서비스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3
6. 1차년도와의 비교	125
1) 조사설계 비교	125
2) 조사운영	129
3) 욕구현황	130

제3장 정책제언	13
1. 서울시 자립생활정책의 방향	135
1) 현실을 반영한 취업지원 정책	135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136
3)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	136
4) 전환서비스 확충	137
5) 탈시설 정책의 방향	138
6)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	138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개선방안	140
1)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140
2) 개선을 위한 제언	143
■ 참고문헌	145
■ 부 록	147

표 · 목 · 차

<표 1-1> 표본설계	5
<표 1-2> 주요 조사내용	7
<표 1-3> 최종응답자 특성	01
<표 2-1> 월평균 가구소득	51
<표 2-2> 월평균 개인소득	71
<표 2-3> 생활비 마련경로	92
<표 2-4> 부채	2
<표 2-5> 부채 보유액	52
<표 2-6> 부채발생원인	92
<표 2-7>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72
<표 2-8> 임금근로 경험	92
<표 2-9> 이전에 일했던 직장 유형	93
<표 2-10> 현재 취업상태	23
<표 2-11> 현 직장유형	43
<표 2-12> 취업경로	63
<표 2-13> 직장만족도	83
<표 2-14> 불만족사유	93
<표 2-15> 이직의향	14
<표 2-16> 향후 취업의향	34
<표 2-17> 원하는 직장	54
<표 2-18>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64
<표 2-19>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74
<표 2-20> 취업을 위한 교육이수 의향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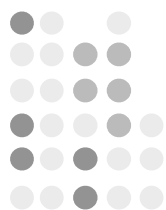
<표 2-21> 원하는 교육 내용	05
<표 2-22> 원하는 교육 형태	25
<표 2-23> 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35
<표 2-24>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45
<표 2-25> 주택유형	65
<표 2-26> 점유형태	85
<표 2-27> (공공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공주택 유형	106
<표 2-28> 주거만족도	26
<표 2-29> 주거불만족 이유	36
<표 2-30> 수리 받고 싶은 곳 1순위, 2순위, 3순위	56
<표 2-31>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46
<표 2-32> 서비스 이용 현황	66
<표 2-33> 서비스 이용 시간	86
<표 2-34> 희망하는 서비스 시간	97
<표 2-35> 서비스 만족도	27
<표 2-36> 서비스 불만족 이유	37
<표 2-37> 서비스 필요 여부	47
<표 2-38>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한 이유	57
<표 2-39> (비수급자인 경우)타인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67
<표 2-40> (비수급자인 경우)주로 도움 받는 대상	77
<표 2-41> 서비스 신청 경험	87
<표 2-42> 재심사로 인한 서비스 비수급 경험	98
<표 2-43> 이의신청 경험	28
<표 2-44>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	48
<표 2-45> 치료 받지 못한 이유	58
<표 2-46>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영역	68
<표 2-47> 공공시설 이용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78
<표 2-48>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88
<표 2-49> 의료서비스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98
<표 2-50> 지역사회 환경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99

<표 2-51> 전환서비스 관련 1, 2, 3순위	19
<표 2-5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	29
<표 2-5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2)	39
<표 2-5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	49
<표 2-55> 서울시의 역할(거주형태별 주요 응답내용)	59
<표 2-56>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지체, 뇌병변)	69
<표 2-57>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 시각, 청각)	69
<표 2-58>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 지적/자폐성, 기타 장애)	79
<표 2-59> 배우자의 장애 보유 여부	89
<표 2-60> 만18세 이하 자녀	99
<표 2-61> 자녀의 장애 여부	100
<표 2-62> 주양육자	100
<표 2-63> 월평균 자녀 양육비	102
<표 2-64>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103
<표 2-65> 장애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2, 3순위	103
<표 2-66> 시설 거주 경험	105
<표 2-67> 시설을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	105
<표 2-6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은 대상	108
<표 2-69> 가족과 동거 여부	110
<표 2-70>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	112
<표 2-71>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	113
<표 2-72>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	114
<표 2-73> 전환서비스가 지역사회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6
<표 2-74> 전환서비스 탈락 경험	117
<표 2-75> 향후 전환서비스 이용 의향	118
<표 2-76> 자립에 대한 욕구	120
<표 2-77>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2, 3순위	121
<표 2-78> 자립하는데 겪는 어려움	122
<표 2-79> 전환서비스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4
<표 2-80> 조사설계 비교	125

<표 2-81> 설문지 구성 비교 ㉞
<표 2-82> 응답자 특성 비교 ㉞
<표 2-8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㉞
<표 2-84> 영역별 필요 서비스 순위 비교 ㉞
<표 3-1> 조사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㉞

 **그 . 림 . 목 . 차**

<그림 1-1> 조사지 개발과정 6



제1장 | 조사개요 |



①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추진경과

1) 조사목적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역적 상황과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1년 4월 시행)」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은 2차 조사주기에 해당하는 해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 추진경과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2011년 4월 14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시장의 시행 의무 및 조사주기가 규정되었다.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서울시 중증장애인들이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2장(자립생활지원)의 제5조(계획의 수립)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할 것(1항)’과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것(2항)’을 규정하고 있다.

1차 실태조사는 2011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1-연구-12)」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중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실태조사는 2011년 10월 6일에서 11월 14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최종응답자는 서울시 등록 18~64세 중증장애인 801명이었다. 이 조사결과는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2014.6.19,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서울시 장애인 정책 입안 시 서울시 장애인 정책환경 분석을 위한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요구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2014년 7월 8일에서 10월 18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최종응답자는 서울시 등록 19~64세 중증장애인 890명이었다. 설문지 구성 등 1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되 조사설계 및 수행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조사설계

1) 표본설계

이번 조사의 목표집단은 서울시 등록 19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 1,000명이었다. 표본설계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서울시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2014. 3월 현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제공)이었다.

표본의 장애유형별, 성별 비율은 등록장애인의 실제 분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령대별 비율은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낮은 연령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거주유형별 표본은 시설장애인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가장애인과 시설거주장애인을 8:2로 설계하였다.

<표 1-1> 표본설계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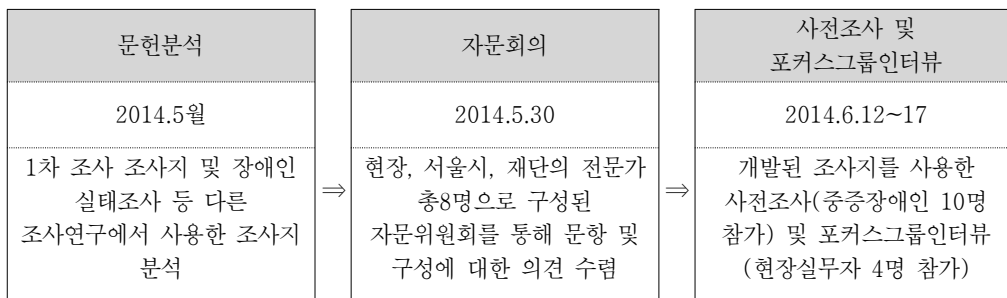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이하	73	48	15	10	13	9	11	11	9	5	30	30	30	80
30대	73	48	15	10	13	9	11	11	9	5				
40대	73	48	17	11	13	10	12	11	10	6				
50대 이상	73	48	17	11	13	10	12	11	10	6				
계	292	192	64	42	52	38	46	44	38	22	30	30	30	80
	484		106		90		90		60		170			
	830										170			

시설장애인에는 거주시설에 거주자와 함께 체험홈 및 그룹홈 등 전환서비스시설 거주자도 포함시켰다. 청각장애인은 시설거주 성인장애인이 적은 특성과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조사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가장애인으로만 설계하였다.

시설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은 80명을 표집하고 다른 장애유형은 30명씩 배분하였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청장년층 장애인의 표집이 재가장애인에 비해서도 더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표집을 배분하지 않고 장애유형만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2) 조사지 개발

조사지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사전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개발 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1> 조사지 개발과정

자문회의에는 서울시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현장전문가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사전조사는 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각 2명씩 총 1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및 수화통역사 등 현장실무자 4명이 참여하여 조사지 개선 및 조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2차 조사지의 특징은 첫째, 조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1차 조사(2011년)에 사용한 조사지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의 편의와 조사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1차 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가장 욕구가 높은 영역으로 밝혀진 소득보장, 고용, 주거,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차조사에서는 문화여가, 의료, 교육, 양육 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하지 않고, 일상생활, 고용, 기타 영역과 관련된 내용만을 추출하여 관련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이 조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이 아닌 자립생활과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고,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역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다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시의 복지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자리 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조건 및 지원방안에 대한 문항(IV. 일상생활 영역, 8번. 4. 지역사회 환경)을 추가하였고,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인 전환서비스 관련 문항(IV. 일상생활 영역, 8번. 5. 전환서비스)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지 제작비 절감 및 조사 편의를 위해 재가장애인용과 시설거주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공통되는 문항으로 구성된 부분은 함께 제작하되 재가장애인에게만 또는 시설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하여 이 부분만 인쇄를 달리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라 필요한 문항만 포함된 설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2>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적특성	거주형태, 성별, 장애유형, 연령, 장애발생시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원수
소득보장영역	월평균 소득, 생활비 마련경로, 부채, 필요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고용영역	취업경험, 고용현황, 취업욕구, 필요한 취업지원, 취업 교육 욕구
주거영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일상생활영역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활동보조서비스 비이용 실태, 의료서비스 비이용 실태,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영역,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타	자립생활 지원 전반에 대한 의견, 출산 및 양육지원, 탈 시설 경험(재가장애인), 가족으로부터의 자립 욕구(재가장애인), 전환서비스 이용경험, 탈시설 욕구(시설거주장애인)

3. 조사운영

1) 조사원 및 조사코디네이터

본조사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가입된 각 지역 자립생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조사원들이 실시하였다. 청각장애인 조사는 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들이 실시하였다.

2014년 7월 2일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내용은 조사개요 및 조사지에 대한 설명과 조사지를 사용하여 서로 조사를 실시해보고 궁금증을 질문하는 팀별 조사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원 교육 참여자들의 60% 가량이 중증장애인당사자였다.

조사코디네이터 3명이 추천되어 조사운영에 참여하였다. 조사코디네이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응답자 및 조사원의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조사진행사항 점검, 조사지 1차 검증 등 조사전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본조사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재가장애인조사가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고, 시설장애인조사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대1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화조사를 선호하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장소로는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거주시설 내 상담실 등 응답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응답자와 조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자택이나 다른 공공장소 등도 활용하였다.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응답자의 경우 소득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문항에 한하여 동석한 가족 및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응답자 섭외

응답자는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응답자는 표본설계에 따라 장애유형,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추천을 받은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조사 중간에 조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애유형, 성별, 연령대의 다른 응답자

를 추가로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센터 내에서 이러한 응답자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슷한 장애유형이나 인접 연령대의 다른 응답자를 추천 받았다.

4. 최종응답자 특성

최종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주형태가 재가인 경우가 79.2%고,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20.8%로 시설거주에 비해 재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현황을 보면, 남자가 504명(56.6%), 여자가 386명(43.4%)으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로 25.1%, 20대 미만이 21.7%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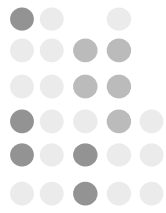
장애유형별로는 주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이 20.1%, 지적/자폐성이 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장애에 대한 등급은 1급인 경우가 66.0%로 가장 높았고, 2급은 23.5%, 3급 9.0%, 4급 이상이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발생시기는 후천적인 경우가 52.5%로 선천적인 경우 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49.1%로 가장 높았고,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10.9% 기타 자격을 갖는 경우가 37.5%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65.8%로 가장 많고, 기혼/동거인 경우가 26.2%, 이혼/별거/사별인 경우가 8.0%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가구원수는 1명이 31.9%로 가장 높고, 2명이 30.8%, 3명이 19.7%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이 48.2%로 가장 높고, 대학교가 20.7%, 중학교는 10.3% 무학인 경우도 9.0%로 조사되었다.

<표 1-3> 최종응답자 특성(N=890)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형태	재가	705	79.2
	시설(법정/비법정)	185	20.8
성별	남	504	56.6
	여	386	43.4
연령	20대 미만	193	21.7
	30대	243	27.3
	40대	223	25.1
	50대	172	19.3
	60대 이상	55	6.2
	무응답	4	0.4
주장애유형	지체	357	40.1
	뇌병변	179	20.1
	시각	96	10.8
	청각	103	11.6
	지적/자폐성	150	16.9
	기타 장애	5	0.6
주장애등급	1급	587	66.0
	2급	209	23.5
	3급	80	9.0
	4급 이상	9	1.0
	무응답	5	0.6
장애발생시기	선천	415	46.6
	후천	467	52.5
	무응답	8	0.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437	49.1
	차상위	97	10.9
	기타	334	37.5
	무응답	22	2.5
결혼상태	미혼	586	65.8
	기혼/동거	233	26.2
	이혼/별거/사별	71	8.0
가구원수	1명	284	31.9
	2명	185	20.8
	3명	175	19.7
	4명	166	18.7
	5명 이상	74	8.3
	무응답	6	0.7
교육수준	무학	80	9.0
	초등학교	69	7.8
	중학교	92	10.3
	고등학교	429	48.2
	대학교	184	20.7
	대학원	34	3.8
	무응답	2	0.2



제2장 | 조사결과



III 조사결과

1. 소득보장 영역

1) 소득

(1) 월평균 가구소득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61.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0.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8.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례가 재가 장애인의 경우 45.1%, 시설 장애인의 경우 16.9%로 가장 많았다. 두 유형에서 모두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례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례 수는 점차 감소하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사례가 20대 이하(10.9%), 30대(16.9%), 40대(16.5%), 50대 이상(17.3%)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례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유사하게 100만원 미만의 구간에 사례 수가 집중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례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에 집중되는 경향이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뚜렷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사례가 42.5%로 집중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사례는 6.0%,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 속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차상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만큼 저소득 집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100만원 미만인 사례가 7.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사례는 2.7%,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는 사례 수가 드물어 유사한 분포를 띄었다. 기타 자격의 경우,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이 11.7%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의 경우보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대다수가(42.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100만원 미만(12.0%)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9%)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100만원 미만 7.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0.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3%로 100만원 미만인 사례의 비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사례가 1명(28.4%), 2명(13.9%), 3명(10.2%), 5명 이상(3.0%)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4명인 경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사례의 비율이 6.3%, 100만원 미만인 사례의 비율이 5.7%로 가구원 수가 더 적거나 많은 유형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 2-1> 월평균 가구소득

※ 단위: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551(61.9)	183(20.6)	76(8.5)	31(3.5)	22(2.5)	22(2.5)	5(0.6)
거주 형태	재가	401(45.1)	167(18.8)	66(7.4)	29(3.3)	19(2.1)	21(2.4)
	시설(법정/비법정)	150(16.9)	16(1.8)	10(1.1)	2(0.2)	3(0.3)	1(0.1)
성별	남	300(33.7)	109(12.2)	48(5.4)	17(1.9)	13(1.5)	13(1.5)
	여	251(28.2)	74(8.3)	28(3.1)	14(1.6)	9(1.0)	9(1.0)
연령	20대 이하	97(10.9)	39(4.4)	22(2.5)	13(1.5)	12(1.3)	8(0.9)
	30대	150(16.9)	52(5.8)	18(2.0)	9(1.0)	3(0.3)	9(1.0)
	40대	147(16.5)	51(5.7)	16(1.8)	3(0.3)	2(0.2)	3(0.3)
	50대 이상	154(17.3)	41(4.6)	20(2.2)	6(0.7)	4(0.4)	2(0.2)
	무응답	3(0.3)	0(0.0)	0(0.0)	0(0.0)	1(0.1)	0(0.0)
주 장애 유형	지체	220(24.7)	75(8.4)	30(3.4)	11(1.2)	10(1.1)	7(0.8)
	뇌병변	118(13.3)	38(4.3)	14(1.6)	4(0.4)	2(0.2)	3(0.3)
	시각	45(5.1)	26(2.9)	10(1.1)	6(0.7)	4(0.4)	5(0.6)
	청각	55(6.2)	24(2.7)	13(1.5)	5(0.6)	3(0.3)	3(0.3)
	지적/자폐성	110(12.4)	20(2.2)	8(0.9)	5(0.6)	3(0.3)	4(0.4)
기타 장애	3(0.3)	0(0.0)	1(0.1)	0(0.0)	0(0.0)	0(0.0)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기초수급	378(42.5)	53(6.0)	2(0.2)	0(0.0)	0(0.0)	1(0.1)
	차상위	62(7.0)	24(2.7)	5(0.6)	3(0.3)	3(0.3)	0(0.0)
	기타	104(11.7)	104(11.7)	61(6.9)	27(3.0)	17(1.9)	20(2.2)
	무응답	7(0.8)	2(0.2)	8(0.9)	1(0.1)	2(0.2)	1(0.1)
결혼 상태	미혼	382(42.9)	99(11.1)	49(5.5)	20(2.2)	15(1.7)	16(1.8)
	기혼/동거	107(12.0)	79(8.9)	24(2.7)	10(1.1)	7(0.8)	6(0.7)
	이혼/별거/사별	62(7.0)	5(0.6)	3(0.3)	1(0.1)	0(0.0)	0(0.0)
가구 원수	1명	253(28.4)	21(2.4)	9(1.0)	0(0.0)	0(0.0)	1(0.1)
	2명	124(13.9)	44(4.9)	10(1.1)	3(0.3)	2(0.2)	1(0.1)
	3명	91(10.2)	45(5.1)	22(2.5)	8(0.9)	1(0.1)	7(0.8)
	4명	51(5.7)	56(6.3)	26(2.9)	13(1.5)	12(1.3)	7(0.8)
	5명 이상	27(3.0)	17(1.9)	9(1.0)	7(0.8)	7(0.8)	6(0.7)
	무응답	5(0.6)	0(0.0)	0(0.0)	0(0.0)	0(0.0)	0(0.0)
교육 수준	무학	57(6.4)	15(1.7)	6(0.7)	2(0.2)	0(0.0)	0(0.0)
	초등학교	52(5.8)	10(1.1)	5(0.6)	1(0.1)	0(0.0)	0(0.0)
	중학교	70(7.9)	17(1.9)	4(0.4)	0(0.0)	0(0.0)	1(0.1)
	고등학교	273(30.7)	91(10.2)	30(3.4)	16(1.8)	12(1.3)	5(0.6)
	대학교	87(9.8)	44(4.9)	19(2.1)	11(1.2)	9(1.0)	12(1.3)
	대학원	11(1.2)	5(0.6)	12(1.3)	1(0.1)	1(0.1)	4(0.4)
무응답	1(0.1)	1(0.1)	0(0.0)	0(0.0)	0(0.0)	0(0.0)	

(2) 월평균 개인소득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6.5%), 100만원 이상(11.6%)이 그 뒤를 이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 장애인의 경우 20만원 미만(36.2%),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1.0%), 100만원 이상(9.9%) 순이었으며, 시설 장애인의 경우 20만원 미만(7.5%),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5.5%),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2.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만원 미만(24.0%),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8.2%) 100만원 이상(8.1%)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20만원 미만(20.1%),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8.3%),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4.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월평균 개인소득이 2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소득 범주에 분포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례의 비율이 20대 이하(12.0%), 30대(9.9%), 40대(10.1%), 50대 이상(11.6%)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장애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사례가 지체(16.7%), 뇌병변(8.7%), 시각(4.3%), 청각(4.8%), 지적/자폐성(9.0%), 기타 장애(0.2%)의 모든 장애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20만원 미만 구간으로의 집중분포 현상이 덜하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개인소득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사례가 기초생활수급권자(21.0%), 차상위(5.8%), 기타 자격(15.8%)의 모든 자격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사례가 미혼(28.0%), 기혼 또는 동거(12.1%), 이혼, 별거, 사별(3.6%)의 모든 결혼상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나,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공통적으로 20만원 미만에 사례가 집중되어 있고,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까지 소득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분포하는 사례 수가 감소하다가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사례 수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교육수준에서 20만원 미만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중학교인 경우에는 20만원 미만 구간에 사례 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다른 교육수준들의 경우에 비해서 덜했다.

<표 2-2>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명(%)

구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389(43.7)	147(16.5)	97(10.9)	87(9.8)	61(6.9)	103(11.6)	6(0.7)	
거주 형태	재가	322(36.2)	98(11.0)	71(8.0)	68(7.6)	55(6.2)	88(9.9)	3(0.3)
	시설(법정/비법정)	67(7.5)	49(5.5)	26(2.9)	71(2.1)	6(0.7)	15(1.7)	3(0.3)
성별	남	210(24.0)	73(8.2)	59(6.6)	47(5.3)	39(4.4)	72(8.1)	4(0.4)
	여	179(20.1)	74(8.3)	38(4.3)	40(4.5)	22(2.5)	31(3.5)	2(0.2)
연령	20대 이하	107(12.0)	40(4.5)	10(1.1)	9(1.0)	7(0.8)	18(2.0)	2(0.2)
	30대	88(9.9)	40(4.5)	29(3.3)	29(3.3)	18(2.0)	37(4.2)	2(0.2)
	40대	90(10.1)	34(3.8)	36(4.0)	20(2.2)	16(1.8)	25(2.8)	2(0.2)
	50대 이상	103(11.6)	32(3.6)	22(2.5)	29(3.3)	19(2.1)	22(2.5)	0(0.0)
	무응답	1(0.1)	1(0.1)	0(0.0)	0(0.0)	1(0.1)	1(0.1)	0(0.1)
주 장애 유형	지체	149(16.7)	55(6.2)	47(5.3)	32(3.6)	29(3.3)	39(4.5)	6(0.7)
	뇌병변	77(8.7)	37(4.2)	10(1.1)	32(3.6)	12(1.4)	11(1.2)	0(0.0)
	시각	38(4.3)	10(1.1)	10(1.1)	9(1.0)	3(0.3)	26(2.9)	0(0.0)
	청각	43(4.8)	15(1.7)	8(0.9)	7(0.8)	9(1.0)	21(2.4)	0(0.0)
	지적/자폐성	80(9.0)	29(3.3)	21(2.4)	6(0.7)	8(0.9)	6(0.7)	0(0.0)
기타 장애	2(0.2)	1(0.1)	1(0.1)	1(0.1)	0(0.0)	0(0.0)	0(0.0)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기초수급	187(21.0)	69(7.8)	78(8.8)	66(7.4)	21(2.4)	12(1.4)	4(0.5)
	차상위	52(5.8)	25(2.8)	5(0.6)	6(0.7)	6(0.7)	3(0.3)	0(0.0)
	기타	141(15.8)	49(5.5)	13(1.5)	15(1.7)	32(3.6)	82(9.2)	2(0.2)
	무응답	9(1.0)	4(0.5)	1(0.1)	0(0.0)	2(0.2)	6(0.7)	0(0.0)
결혼 상태	미혼	249(28.0)	108(12.1)	65(7.3)	69(7.8)	32(3.6)	58(6.5)	5(0.6)
	기혼/동거	108(12.1)	26(2.9)	25(2.8)	13(1.5)	21(2.4)	39(4.4)	1(0.1)
	이혼/별거/사별	32(3.6)	13(1.5)	7(0.8)	5(0.6)	8(0.9)	6(0.7)	0(0.0)
교육 수준	무학	39(4.4)	17(1.9)	15(1.7)	6(0.7)	1(0.1)	2(0.2)	0(0.0)
	초등학교	30(3.4)	11(1.2)	7(0.8)	12(1.4)	7(0.8)	1(0.1)	1(0.1)
	중학교	39(4.4)	21(2.4)	15(1.7)	9(1.0)	6(0.4)	2(0.2)	0(0.0)
	고등학교	209(23.5)	74(8.3)	40(4.5)	38(4.3)	27(3.0)	38(4.3)	3(0.3)
	대학교	64(7.1)	24(2.7)	16(1.8)	20(2.3)	16(1.8)	42(4.7)	2(0.2)
	대학원	7(0.8)	0(0.0)	3(0.3)	2(0.2)	4(0.5)	18(2.0)	0(0.0)
	무응답	1(0.1)	0(0.0)	1(0.1)	0(0.0)	0(0.0)	0(0.0)	0(0.0)

(3) 생활비 마련경로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37.2%),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21.6%), 근로소득(19.3%)을 주요한 생활비 마련경로로 선택하였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29.1%),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15.6%), 근로소득(15.1%) 순이었으며, 시설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8.1%),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6.0%), 근로소득(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19.4%), 장애연금(13.7%), 근로소득(12.9%)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17.8%),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7.9%), 근로소득(6.4%)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6.4%), 기초생활보장급여(4.9%),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친인척의 지원(4.0%)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10.9%), 근로소득(6.6%),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5.4%)의 순이었으며, 40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10.9%),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5.0%), 근로소득(4.6%)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도 40대와 유사하게 기초생활보장급여(10.3%),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4.6%), 근로소득(4.0%)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근로소득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시각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급여(2.6%),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2.5%)이 그 뒤를 이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4.4%), 근로소득(3.7%), 집세, 저축, 이자 등 기타 소득(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6.5%),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4.0%), 근로소득(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36.0%로 다른 소득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차상위의 경우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기타 자격의 경우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14.6%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23.6%), 장애연금 또는 수당(16.7%), 근로소득(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9.6%),

근로소득(6.1%),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4.0%),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2.3%), 근로소득(0.9%)의 순이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3명 이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5명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하는 사례의 비율이 다른 소득원에 의지하는 사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 근로소득을 주된 생활비 마련 경로로 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5.3%, 2.0%로 가장 높았다.

<표 2-3> 생활비 마련경로

※단위: 명(%)

구분	근로 소득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배우자의 근로 소득	집세, 저축 이자 등 기타 소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친인척의 지원	기타	무응답	
전체	172(19.3)	192(21.6)	331(37.2)	45(5.0)	22(2.5)	83(9.3)	38(4.3)	4(0.8)	
거주 형태	재가	134(15.1)	139(15.6)	259(29.1)	43(4.8)	20(2.3)	67(7.8)	37(4.2)	4(0.5)
	시설(법정/비법정)	38(4.3)	53(6.0)	72(8.1)	2(0.2)	2(0.2)	14(1.6)	1(0.1)	3(0.3)
성별	남	115(12.9)	122(13.7)	173(19.4)	16(1.8)	12(1.4)	40(4.5)	22(2.5)	4(0.5)
	여	57(6.4)	70(7.9)	158(17.8)	29(3.3)	10(1.1)	43(4.8)	16(1.8)	3(0.3)
연령	20대 이하	35(3.9)	57(6.4)	44(4.9)	1(0.1)	4(0.5)	36(4.0)	14(1.6)	2(0.2)
	30대	59(6.6)	48(5.4)	97(10.9)	6(0.7)	1(0.1)	24(2.7)	5(0.6)	3(0.3)
	40대	41(4.6)	45(5.0)	97(10.9)	15(1.7)	6(0.7)	13(1.5)	4(0.5)	2(0.2)
	50대 이상	36(4.0)	41(4.6)	92(10.3)	23(2.6)	10(2.6)	10(1.1)	15(1.7)	0(0.0)
	무응답	1(0.1)	1(0.1)	1(0.1)	0(0.0)	1(0.1)	0(0.0)	0(0.0)	0(0.0)
주 장애 유형	지체	63(7.0)	77(8.7)	135(15.1)	25(2.8)	7(0.8)	31(3.5)	15(1.7)	4(0.5)
	뇌병변	19(2.1)	50(5.6)	74(8.3)	8(0.9)	0(0.0)	15(1.7)	10(1.1)	3(0.3)
	시각	30(3.4)	22(2.5)	23(2.6)	2(0.2)	3(0.3)	12(1.4)	4(0.5)	0(0.0)
	청각	33(3.7)	6(0.7)	39(4.4)	7(0.8)	11(1.2)	5(0.6)	2(0.2)	0(0.0)
	지적/자폐성	26(3.0)	36(4.0)	58(6.5)	3(0.3)	0(0.0)	20(2.3)	7(0.8)	0(0.0)
기타 장애	1(0.1)	1(0.1)	2(0.2)	0(0.0)	1(0.1)	0(0.0)	0(0.0)	0(0.0)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기초수급	20(2.3)	79(8.9)	321(36.0)	2(0.2)	3(0.3)	5(0.6)	2(0.2)	5(0.6)
	차상위	10(1.1)	60(6.7)	4(0.5)	4(0.5)	1(0.1)	14(1.6)	4(0.5)	0(0.0)
	기타	130(14.6)	53(6.0)	3(0.3)	37(4.2)	17(1.9)	62(7.0)	31(3.5)	1(0.1)
	무응답	12(1.4)	0(0.0)	3(0.3)	2(0.2)	1(0.1)	2(0.2)	1(0.1)	1(0.1)
결혼 상태	미혼	110(12.4)	149(16.7)	210(23.6)	6(0.7)	9(1.0)	73(8.2)	23(2.6)	6(0.7)
	기혼/동거	54(6.1)	23(2.6)	85(9.6)	39(4.4)	12(1.4)	6(0.7)	13(1.5)	1(0.1)
	이혼/별거/사별	8(0.9)	20(2.3)	36(4.0)	0(0.0)	1(0.1)	4(0.5)	2(0.2)	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49(5.5)	64(7.2)	154(17.3)	2(0.2)	0(0.0)	0(1.1)	5(0.6)	0(0.0)
	2명	39(4.4)	33(3.1)	78(8.8)	10(1.1)	3(0.3)	11(1.3)	7(0.8)	4(0.5)
	3명	28(3.2)	45(5.0)	61(6.9)	9(1.0)	6(0.7)	16(1.8)	9(1.0)	1(0.1)
	4명	32(3.6)	34(3.8)	32(3.6)	15(1.7)	9(1.0)	28(3.2)	15(1.7)	1(0.1)
	5명 이상	22(2.5)	15(1.7)	5(0.6)	9(1.0)	3(0.3)	17(1.9)	2(0.2)	1(0.1)
	무응답	2(0.2)	1(0.1)	1(0.1)	0(0.0)	1(0.1)	1(0.1)	0(0.0)	0(0.0)
교육 수준	무학	6(0.7)	21(2.4)	36(4.0)	4(0.5)	2(0.2)	9(1.0)	2(0.2)	0(0.0)
	초등학교	10(1.1)	15(1.7)	30(3.4)	4(0.5)	1(0.1)	4(0.5)	3(0.3)	2(0.2)
	중학교	10(1.1)	22(2.5)	47(5.3)	7(0.8)	0(0.0)	5(0.6)	1(0.1)	0(0.0)
	고등학교	81(9.1)	89(10.0)	168(18.9)	22(2.5)	10(1.1)	38(4.3)	19(2.1)	2(0.2)
	대학교	47(5.3)	43(4.9)	41(4.6)	8(0.9)	9(1.0)	25(2.8)	9(1.0)	2(0.2)
	대학원	18(2.0)	1(0.1)	9(1.0)	0(0.0)	0(0.0)	0(0.0)	0(0.0)	1(0.1)
무응답	0(0.0)	1(0.1)	0(0.0)	0(0.0)	0(0.0)	0(0.0)	0(0.0)	1(0.1)	

2) 부채

(1) 부채 보유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부채가 있는 장애인은 20.8%, 부채가 없는 장애인은 78.5%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20.3%, 시설의 경우 0.5%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양 거주형태에서 모두 부채가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낮았으며, 특히 시설 장애인의 경우 부채를 지닐 확률이 재가 장애인에 비해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1.8%, 여성의 경우 9.0%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부채가 없는 사례가 더 많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은 20대 이하 1.5%, 30대 5.2%, 40대 7.6%, 50대 이상 6.3%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를 가진 사례가 부채가 없는 사례보다 적었다. 40대의 경우 부채를 가질 확률이 비교적 크고, 20대 이하의 경우 부채를 가질 확률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사례는 지체(9.6%), 뇌병변(3.8%), 시각(2.7%), 청각(3.8%), 지적/자폐성(0.8%), 기타 장애(0.1%)의 모든 장애유형에서 부채가 없는 사례보다 적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부채를 가질 확률이 비교적 높으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부채를 가질 확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사례는 기초생활수급권자(9.8%), 차상위(2.0%), 기타 자격(8.2%)에서 모두 부채가 없는 사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사례는 미혼(8.0%), 기혼 또는 동거(9.9%), 이혼, 별거, 사별(2.9%)의 모든 유형에서 부채가 없는 사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나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미혼에 비해 부채를 가질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사례는 1명(5.4%), 2명(5.3%), 3명(4.7%), 4명(4.4%), 5명 이상(1.0%)로 모든 경우에서 부채가 없는 사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가족 구성원이 2명, 3명, 4명인 사례들은 1명 또는 5명 이상인 사례에 비해 부채를 가질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무학(1.0%), 초등학교(1.4%), 중학교(2.6%), 고등학교(10.0%), 대학교(4.8%), 대학원(1.0%)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부채가 없다

고 응답한 사례보다 적었다. 무학과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더 높은 교육 수준의 장애인들에 비해 부채를 가질 확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부채

※단위: 명(%)

구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무응답
전체	185(20.8)	699(78.5)	6(0.7)
거주형태	채가	521(58.5)	3(0.3)
	시설(법정/비법정)	178(20.0)	3(0.3)
성별	남	395(44.4)	4(0.5)
	여	304(34.2)	2(0.2)
연령	20대 이하	178(20.0)	2(0.2)
	30대	195(21.9)	2(0.2)
	40대	153(17.2)	2(0.2)
	50대 이상	171(19.2)	0(0.0)
	무응답	2(0.2)	2(0.2)
주 장애 유형	지체	267(30.0)	5(0.6)
	뇌병변	145(7.8)	0(0.0)
	시각	72(8.1)	0(0.0)
	청각	69(7.8)	0(0.0)
	지적/자폐성	143(16.1)	0(0.0)
	기타 장애	3(0.3)	0(0.0)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347(39.0)	3(0.3)
	차상위	79(8.9)	0(0.0)
	기타	259(29.1)	2(0.2)
	무응답	14(1.6)	1(0.1)
결혼상태	미혼	510(57.3)	5(0.6)
	기혼/동거	144(16.2)	1(0.1)
	이혼/별거/사별	45(5.1)	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236(26.5)	0(0.0)
	2명	137(15.4)	1(0.1)
	3명	132(14.8)	1(0.1)
	4명	125(14.0)	2(0.2)
	5명 이상	64(7.2)	1(0.1)
	무응답	5(0.6)	1(0.1)
교육수준	무학	71(8.0)	0(0.0)
	초등학교	56(6.3)	1(0.1)
	중학교	69(7.8)	0(0.0)
	고등학교	338(38.0)	2(0.2)
	대학교	138(15.5)	3(0.3)
	대학원	25(2.8)	0(0.0)
무응답	2(0.2)	0(0.0)	

(2) 부채 보유액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부채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부채 보유액 규모는 3000만원 이상(27.0%),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18.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7.8%)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재가 장애인이었으며, 시설 장애인은 2.1%에 불과했다.

부채 보유액 규모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00만원 이상(17.3%),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 3000만원 이상(9.7%),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9.2%)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1.6%로 가장 높았고, 30대의 경우도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5.4%로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부채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청각 장애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공히 4.3%로 가장 높았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사례 수는 많지 않으나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과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동일하게 1.0%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1.4%로 가장 높았고, 차상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기타 자격의 경우에도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동일하게 3.2%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 모두에서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동일하게 6.0%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이 3명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 수가 4명인 경우와 5명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비

율이 각 8.7%,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규모를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동일하게 1.6%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중학교인 경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인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12.4%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도 30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8.7%, 3.2%로 가장 높았다.

<표 2-5> 부채 보유액

※단위: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8(4.3)	13(7.0)	26(14.0)	33(17.8)	34(18.4)	19(10.3)	50(27.0)	2(0.2)
거주 형태	재가	8(4.3)	13(7.0)	23(12.4)	33(17.8)	34(18.4)	19(10.3)	49(26.5)	2(1.0)
	시설(법정/비법정)	0(0.0)	0(0.0)	3(1.6)	0(0.0)	0(0.0)	0(0.0)	1(0.5)	0(0.0)
성별	남	4(2.2)	5(2.7)	16(8.7)	19(10.3)	17(9.2)	11(6.0)	32(17.3)	1(0.5)
	여	4(2.2)	8(4.3)	10(5.4)	14(7.6)	17(9.2)	8(4.3)	18(9.7)	1(0.5)
연령	20대 이하	2(1.0)	2(1.0)	1(0.5)	3(1.6)	0(0.0)	2(1.0)	3(1.6)	0(0.0)
	30대	1(0.5)	3(1.6)	9(4.9)	10(5.4)	7(3.8)	5(2.7)	10(5.4)	1(0.5)
	40대	5(2.7)	4(2.2)	13(7.0)	7(3.8)	19(10.3)	4(2.2)	15(8.1)	1(0.5)
	50대 이상	0(0.0)	4(2.2)	3(1.6)	12(6.5)	7(3.8)	8(4.3)	22(11.9)	0(0.0)
	무응답	0(0.0)	0(0.0)	0(0.0)	1(0.5)	1(0.5)	0(0.0)	0(0.0)	0(0.0)
주 장애 유형	지체	3(1.6)	3(1.6)	13(7.0)	15(8.1)	17(9.2)	7(3.8)	25(13.5)	2(1.0)
	뇌병변	0(0.0)	5(2.7)	4(2.2)	8(4.3)	6(3.3)	4(2.2)	7(3.8)	0(0.0)
	시각	0(0.0)	2(1.0)	1(0.5)	1(0.5)	6(3.2)	3(1.6)	11(6.0)	0(0.0)
	청각	4(2.2)	1(0.5)	8(4.3)	8(4.3)	5(2.7)	3(1.6)	5(2.7)	0(0.0)
	지적/자폐성	1(0.5)	2(1.0)	0(0.0)	1(0.5)	0(0.0)	2(1.0)	1(0.5)	0(0.0)
기타 장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5)	0(0.0)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기초수급	2(1.0)	8(4.3)	18(9.7)	21(11.4)	19(10.3)	9(4.9)	9(4.9)	1(0.5)
	차상위	1(0.5)	0(0.0)	5(2.7)	1(0.5)	1(0.5)	4(2.2)	6(3.2)	0(0.0)
	기타	3(1.6)	4(2.2)	3(1.6)	9(4.9)	13(7.0)	6(3.2)	34(18.4)	1(0.5)
	무응답	2(1.0)	1(0.5)	0(0.0)	2(1.0)	1(0.5)	0(0.0)	1(0.5)	0(0.0)
결혼 상태	미혼	4(2.2)	5(2.7)	10(5.4)	17(9.2)	14(7.6)	6(3.2)	14(7.6)	1(0.5)
	기혼/동거	3(1.6)	5(2.7)	10(5.4)	13(7.0)	14(7.6)	11(6.0)	31(16.8)	1(0.5)
	이혼/별거/사별	1(0.5)	3(1.6)	6(3.2)	3(1.6)	6(3.2)	2(0.5)	5(2.7)	0(0.0)
가구원 수	1명	1(0.5)	4(2.2)	10(5.4)	10(5.4)	10(5.4)	1(0.5)	11(6.0)	1(0.5)
	2명	4(2.2)	3(1.6)	6(3.2)	9(4.9)	9(4.9)	5(2.7)	11(6.0)	0(0.0)
	3명	1(0.5)	5(2.7)	5(2.7)	8(4.3)	9(4.9)	6(3.2)	8(4.3)	0(0.0)
	4명	2(1.0)	1(0.5)	5(2.7)	5(2.7)	5(2.7)	4(2.2)	16(8.7)	1(0.5)
	5명 이상	0(0.0)	0(0.0)	0(0.0)	1(0.5)	1(0.5)	3(1.6)	4(2.2)	0(0.0)
교육 수준	무학	1(0.5)	1(0.5)	1(0.5)	3(1.6)	1(0.5)	1(0.5)	1(0.5)	0(0.0)
	초등학교	0(0.0)	1(0.5)	3(1.6)	1(0.5)	3(1.6)	1(0.5)	3(1.6)	0(0.0)
	중학교	0(0.0)	2(1.0)	6(3.2)	3(1.6)	7(3.8)	4(2.2)	1(0.5)	0(0.0)
	고등학교	3(1.6)	6(3.2)	13(7.0)	17(9.2)	17(9.2)	9(4.9)	23(12.4)	1(0.5)
	대학교	4(2.2)	2(1.0)	3(1.6)	8(4.3)	5(2.7)	4(2.2)	16(8.7)	1(0.5)
대학원	0(0.0)	1(0.5)	0(0.0)	1(0.5)	1(0.5)	0(0.0)	6(3.2)	0(0.0)	

(3) 부채발생원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발생원인을 설문한 결과, 주택임대보증금(37.8%)과 생계비(35.7%)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꼽혔으며, 의료비용(17.3%)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6> 부채발생원인

구분	사례수(N)	비율(%)
생계비	66	35.7
주택월세비용	18	9.7
주택임대보증금	70	37.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6	3.2
의료비용	32	17.3
교통비용	6	3.2
통신비용	15	8.1
장애보조기구 유지비 및 수리비	8	4.3
장애보조기구 구입비	10	5.4
주택마련비용(전세, 구입)	8	4.3
학비	6	3.2
사업관련 비용	4	2.2
기타	23	12.4

3)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소득지원 방안을 설문한 결과, 1순위로 장애연금 상향 지원(45.4%), 2순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19.6%), 3순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2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7>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애연금 상향 지원	404 (45.4)	127 (14.3)	99 (11.1)
비수급자에게도 일정부분 생계비 지원	119 (13.4)	141 (15.8)	67 (7.5)
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 긴급생계비 지원	29 (3.3)	55 (6.2)	54 (6.1)
수급자 자격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5 (11.8)	104 (11.7)	75 (8.4)
장애인 교통비 보조	40 (4.5)	105 (11.8)	145 (16.3)
장애인 보조기구 유지 및 수리비 지원 확대	40 (4.5)	118 (13.3)	138 (15.5)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89 (10.0)	174 (19.6)	223 (25.1)
자녀 교육 및 보육료 지원서비스 확대	28 (3.1)	34 (3.8)	43 (4.8)
기타(생계비지원확대, 주거지원확대, 취업지원확대, 활동보조서비스확대등)	17 (1.9)	12 (1.3)	24 (2.7)
무응답	19 (2.1)	20 (2.2)	22 (2.5)

2. 고용 영역

1) 취업 경험

(1) 임금근로 경험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근로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 경험 있음 48.2%, 경험 없음 51.5%로 경험 여부 간 전체적인 분포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경험 있음 36.2%, 경험 없음 43.0%로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경험 있음 12.0%, 경험 없음 8.4%로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험 있음 28.9%, 경험 없음 27.5%로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경험 있음 19.3%, 경험 없음 23.9%로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11.7%)와 40대(13.3%), 50대 이상(14.4%)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30대에서는 경험 있음 15.3%, 경험 없음 11.9%로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21.8%), 뇌병변(14.0%)의 경우에는 더 높은 반면, 시각(4.7%), 청각(3.7%), 지적/자폐성(6.9%)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낮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29.7%), 차상위의 경우 (6.3%)로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기타 자격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22.8%)로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14.7%)보다 더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34.2%)가 더 많은 반면,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13.4%)가 다소 많았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4.5%로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3.5%)보다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무학(7.0%), 초등학교(4.6%), 중학교(6.2%), 고등학교(25.3%)인 경우에 더 높은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12.7%, 3.0%로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사례보다 많았다.

<표 2-8> 임금근로 경험

*단위: 명(%)

구분	임금근로경험유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429(48.2)	458(51.5)	3(0.3)	
거주형태	재가	322(36.2)	383(43.0)	0(0.0)
	시설(법정/비법정)	107(12.0)	75(8.4)	3(0.3)
성별	남성	257(28.9)	245(27.5)	2(0.2)
	여성	172(19.3)	213(23.9)	1(0.1)
연령	20대 이하	87(9.8)	104(11.7)	2(0.2)
	30대	136(15.3)	106(11.9)	1(0.1)
	40대	104(11.7)	119(13.3)	0(0.0)
	50대 이상	99(11.1)	128(14.4)	0(0.0)
	무응답	3(0.3)	1(0.1)	0(0.0)
주장애유형	지체	161(18.1)	194(21.8)	2(0.2)
	뇌병변	54(6.1)	125(14.0)	0(0.0)
	시각	54(6.1)	42(4.7)	0(0.0)
	청각	70(7.9)	33(3.7)	0(0.0)
	지적/자폐성	89(10.0)	61(6.9)	0(0.0)
	기타장애	1(0.1)	3(0.3)	1(0.1)
사회복지신청자격	기초수급	171(19.2)	264(29.7)	2(0.2)
	차상위	41(4.6)	56(6.3)	0(0.0)
	기타	203(22.8)	131(14.7)	0(0.0)
	무응답	14(1.6)	7(0.8)	1(0.1)
결혼상태	미혼	279(31.3)	304(34.2)	3(0.3)
	기혼+동거	119(13.4)	114(12.8)	0(0.0)
	이혼+별거+사별	31(3.5)	40(4.5)	0(0.0)
교육수준	무학	18(2.0)	62(7.0)	0(0.0)
	초등학교	28(3.2)	41(4.6)	0(0.0)
	중학교	37(4.2)	55(6.2)	0(0.0)
	고등학교	203(22.8)	225(25.3)	1(0.1)
	대학교	113(12.7)	69(7.8)	2(0.2)
	대학원	30(3.0)	4(0.4)	0(0.0)
	무응답	0(0.0)	2(0.2)	0(0.0)

(2) 이전에 일했던 직장유형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거 직장의 유형을 설문한 결과,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8.0%, 사회복지관련 시설이 27.7%로 그 뒤를 따랐다.

<표 2-9> 이전에 일했던 직장 유형

구분	사례수(N)	비율(%)
사회복지관련 시설	119	2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0	28.0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사업체	132	30.8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40	9.3
기타	43	10.0

2) 취업 현황

(1) 현 취업상태

현재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무직(59.8%)인 사례가 현격히 많았으며, 상용근로자(13.1%), 임시근로자(10.1%)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와 시설 모두에서 무직,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의 순으로 현재 취업상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무직(34.2%), 상용근로자(8.5%), 임시근로자(5.5%) 순으로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무직이 25.6%로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주부인 경우가 모두 4.6%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무직(10.2%), 학생(3.9%), 임시근로자(3.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무직(14.6%), 상용근로자(5.5%), 임시근로자(3.5%)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도 무직(17.0%), 상용근로자(3.5%), 임시근로자(1.6%)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역시 무직(17.6%)이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와 주부가 각각 2.0%로 그 뒤를 이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직,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 장애인의 경우 무직(5.2%), 학생(1.5%), 상용근로자(1.3%)의 순이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무직(4.6%), 상용근로자(2.9), 주부(1.9%) 순으로 많았다. 지적/자폐성의 경우 무직(8.7%), 임시근로자(2.7%), 상용근로자(2.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무직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3.0%),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각 2.9%)가 그 뒤를 이었다. 차상위의 경우 무직(7.0%)이 가장 많았으며, 상용근로자와 학생(각 0.8%)이 공히 그 뒤를 따랐다. 기타 자격의 경우 무직(17.1%), 상용근로자(8.5%), 임시근로자(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무직(39.7%), 상용근로자(9.6%), 임시근로자(7.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역시 무직(14.3%), 주부(3.8%), 상용근로자(3.0%)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무직(5.8%), 주부(0.8%) 순으로 많았고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0.6%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 무직의 비율이 현격히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직일 확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띄었다.

<표 2-10> 현재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현재 취업상태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학생	주부	무직	기타	무응 답	
전체	117(13.1)	90(10.1)	19(2.1)	6(0.7)	1(0.1)	6(0.7)	38(4.3)	42(4.7)	532(59.8)	34(3.8)	5(0.5)	
거주 형태	재가	83(9.3)	62(7.0)	17(1.9)	4(0.4)	1(0.1)	6(0.7)	28(3.1)	41(4.6)	448(50.3)	13(1.5)	2(0.2)
	시설(법정/ 비법정)	34(3.8)	28(3.1)	2(0.2)	2(0.2)	0(0.0)	0(0.0)	10(1.0)	1(0.1)	84(9.4)	21(2.4)	3(0.3)
성별	남성	76(8.5)	49(5.5)	14(1.6)	6(0.7)	1(0.1)	6(0.7)	20(2.2)	1(0.1)	304(34.2)	24(2.7)	3(0.3)
	여성	41(4.6)	41(4.6)	5(0.5)	0(0.0)	0(0.0)	0(0.0)	18(2.0)	41(4.6)	228(25.6)	10(1.0)	2(0.2)
연령 범주	20대이하	18(2.0)	32(3.6)	2(0.2)	0(0.0)	0(0.0)	1(0.1)	35(3.9)	2(0.2)	91(10.2)	10(1.0)	2(0.2)
	30대	49(5.5)	31(3.5)	6(0.7)	1(0.1)	0(0.0)	0(0.0)	2(0.2)	9(1.0)	130(14.6)	13(1.5)	2(0.2)
	40대	31(3.5)	14(1.6)	4(0.4)	3(0.3)	0(0.0)	2(0.2)	1(0.1)	13(1.5)	151(17.0)	4(0.4)	0(0.0)
	50대이상	18(2.0)	13(1.5)	7(0.8)	2(0.2)	1(0.1)	3(0.3)	0(0.0)	18(2.0)	157(17.6)	7(0.8)	1(0.1)
	무응답	1(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3)	0(0.0)	0(0.0)
주 장 애 유 형	지체	42(4.7)	38(4.3)	4(0.4)	3(0.3)	0(0.0)	3(0.3)	14(1.6)	17(1.9)	227(25.5)	6(0.7)	3(0.3)
	뇌병변	14(1.6)	12(1.3)	4(0.4)	0(0.0)	0(0.0)	1(0.1)	5(0.6)	4(0.4)	138(15.5)	1(0.1)	0(0.0)
	시각	12(1.3)	10(1.1)	2(0.2)	3(0.3)	0(0.0)	2(0.2)	13(1.5)	4(0.4)	46(5.2)	4(0.4)	0(0.0)
	청각	26(2.9)	5(0.6)	8(0.9)	0(0.0)	1(0.1)	0(0.0)	2(0.2)	17(1.9)	41(4.6)	3(0.3)	0(0.0)
	지적/자폐성	23(2.6)	24(2.7)	1(0.1)	0(0.0)	0(0.0)	0(0.0)	4(0.4)	0(0.0)	77(8.7)	20(2.2)	1(0.1)
기타장애	0(0.0)	1(0.1)	0(0.0)	0(0.0)	0(0.0)	0(0.0)	0(0.0)	0(0.0)	3(0.3)	0(0.0)	1(0.1)	
신 청 자 격	기초수급	26(2.9)	26(2.9)	6(0.7)	1(0.1)	1(0.1)	1(0.1)	13(1.5)	27(3.0)	313(35.2)	21(2.4)	2(0.2)
	차상위	7(0.8)	6(0.7)	5(0.6)	1(0.1)	0(0.0)	1(0.1)	7(0.8)	4(0.4)	62(7.0)	4(0.4)	0(0.0)
	기타	76(8.5)	55(6.2)	7(0.8)	4(0.4)	0(0.0)	4(0.4)	16(1.8)	9(1.0)	152(17.1)	9(1.0)	2(0.2)
	무응답	8(0.9)	3(0.3)	1(0.1)	0(0.0)	0(0.0)	0(0.0)	2(0.2)	2(0.2)	5(0.6)	0(0.0)	1(0.1)
결 혼 상 태	미혼	85(9.6)	67(7.5)	10(1.1)	4(0.4)	0(0.0)	2(0.2)	36(4.0)	1(0.1)	353(39.7)	24(2.7)	4(0.4)
	기혼/동거	27(3.0)	18(2.0)	8(0.9)	2(0.2)	1(0.1)	4(0.4)	2(0.2)	34(3.8)	127(14.3)	9(1.0)	1(0.1)
	이혼/별거/ 사별	5(0.6)	5(0.6)	1(0.1)	0(0.0)	0(0.0)	0(0.0)	0(0.0)	7(0.8)	52(5.8)	1(0.1)	0(0.0)
교 육 수 준	무학	4(0.4)	2(0.2)	3(0.3)	0(0.0)	0(0.0)	0(0.0)	0(0.0)	4(0.4)	65(7.3)	1(0.1)	1(0.1)
	초등학교	10(1.1)	3(0.3)	1(0.1)	0(0.0)	0(0.0)	1(0.1)	0(0.0)	2(0.2)	52(5.8)	0(0.0)	0(0.0)
	중학교	3(0.3)	6(0.7)	2(0.2)	0(0.0)	0(0.0)	1(0.1)	1(0.1)	7(0.8)	72(8.0)	0(0.0)	0(0.0)
	고등학교	53(6.0)	49(5.5)	11(1.2)	2(0.2)	1(0.1)	3(0.3)	16(1.8)	20(2.2)	248(27.9)	24(2.7)	2(0.2)
	대학교	33(3.7)	26(2.9)	1(0.1)	4(0.4)	0(0.0)	0(0.0)	19(2.1)	8(0.9)	87(9.8)	4(0.4)	2(0.2)
	대학원	14(1.6)	4(0.5)	1(0.1)	0(0.0)	0(0.0)	1(0.1)	2(0.2)	0(0.0)	7(0.8)	5(0.6)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1)	1(0.1)	0(0.0)	0(0.0)	

(2) 현 직장유형

현재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 유형을 설문한 결과, 사회복지관 시설이 33.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28.0%),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23.4%)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26.8%)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13.0%)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 19.2%, 여성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공히 7.9%로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가 9.6%로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동일하게 5.0%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14.2%), 뇌병변(6.7%), 시각(5.4%), 청각(6.3%) 장애인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12.1%)가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가 각각 2.1%로 공히 가장 많았다. 기타 자격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 또는 동거인 경우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례가 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례가 각각 1.3%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사례의 비율이 무학(2.1%), 초등학교(3.8%), 중학교(1.7%), 고등학교(19.2%)의 경우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가 각각 15.1%, 3.8%로 가장 많았다.

<표 2-11> 현 직장유형

※단위: 명(%)

구분	현 직장유형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무응답	
전체	79(33.1)	67(28.0)	56(23.4)	21(8.8)	15(6.3)	1(0.4)	
거주형태	재가	64(26.8)	36(15.1)	41(17.2)	19(7.9)	12(5.0)	1(0.4)
	시설(법정/비법정)	15(6.3)	31(13.0)	15(6.3)	2(0.8)	3(1.3)	0(0.0)
성별	남성	46(19.2)	39(16.3)	42(17.6)	16(6.7)	9(3.8)	0(0.0)
	여성	33(13.8)	28(11.7)	14(5.9)	5(2.1)	6(2.5)	1(0.4)
연령	20대 이하	19(7.9)	19(7.9)	8(3.3)	5(2.1)	2(0.8)	0(0.0)
	30대	24(10.0)	27(11.3)	24(10.0)	7(2.9)	4(1.7)	1(0.4)
	40대	23(9.6)	11(4.6)	12(5.0)	6(2.5)	2(0.8)	0(0.0)
	50대 이상	12(5.0)	10(4.2)	12(5.0)	3(1.3)	7(2.9)	0(0.0)
	무응답	1(0.4)	0(0.0)	0(0.0)	0(0.0)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34(14.2)	20(8.4)	14(5.9)	14(5.9)	7(2.9)	1(0.4)
	뇌병변	16(6.7)	8(3.3)	2(0.8)	4(1.7)	1(0.4)	0(0.0)
	시각	13(5.4)	0(0.0)	12(5.0)	0(0.0)	4(1.7)	0(0.0)
	청각	15(6.3)	9(3.8)	14(5.9)	1(0.4)	1(0.4)	0(0.0)
	지적/자폐성	1(0.0)	30(12.6)	13(5.4)	2(0.8)	2(0.8)	0(0.0)
	기타장애	0(0.0)	0(0.0)	1(0.4)	0(0.0)	0(0.0)	0(0.0)
사회복지신청자 격	기초수급	15(6.3)	29(12.1)	12(5.0)	2(0.8)	2(0.8)	1(0.4)
	차상위	5(2.1)	5(2.1)	3(1.6)	1(0.4)	6(2.5)	0(0.0)
	기타	53(22.2)	30(12.6)	38(15.9)	18(7.5)	7(2.9)	0(0.0)
	무응답	6(2.5)	3(1.3)	3(1.3)	0(0.0)	0(0.0)	0(0.0)
결혼상태	미혼	60(25.1)	54(22.6)	33(13.8)	12(5.0)	8(3.3)	1(0.4)
	기혼/동거	17(7.1)	10(4.2)	21(8.8)	6(2.5)	6(2.5)	0(0.0)
	이혼/별거/사별	2(0.8)	3(1.3)	2(0.8)	3(1.3)	1(0.4)	0(0.0)
교육수준	무학	2(0.8)	5(2.1)	1(0.4)	0(0.0)	1(0.4)	0(0.0)
	초등학교	5(2.1)	9(3.8)	1(0.4)	0(0.0)	0(0.0)	0(0.0)
	중학교	2(0.8)	4(1.7)	2(0.8)	3(1.3)	1(0.4)	0(0.0)
	고등학교	25(10.5)	46(19.2)	32(13.4)	6(2.5)	9(3.8)	1(0.4)
	대학교	36(15.1)	3(1.3)	14(5.9)	8(3.3)	3(1.3)	0(0.0)
	대학원	9(3.8)	0(0.0)	6(2.5)	4(1.7)	1(0.4)	0(0.0)

(3) 취업경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을 알게 된 경로를 설문한 결과, 친구 등 지인의 소개(35.6%), 공공기관 알선(29.7%), 기타(8.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사례(31.4%)가 가장 많은 반면, 시설의 경우 공공기관 알선을 통하는 사례(14.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24.7%)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공공기관 알선을 통하는 경우(11.3%)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사례의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알선을 통하는 경우의 비율이 공히 12.1%로 가장 높았다. 40대 이상과 50대 이상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사례가 각각 8.8%, 7.5%로 가장 많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청각 장애인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취업한 사례의 비율이 각각 18.0%, 6.3%, 7.5%로 가장 높은 반면, 시각 장애인의 경우 학교의 소개나 추천(3.8%),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공공기관 알선(15.5%)을 통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공공기관 알선(10.0%)을 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반면, 차상위와 기타 자격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의 비율이 각각 3.8%, 23.0%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공공기관 알선(25.1%)을 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반면,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와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8.8%, 2.5%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1.3%), 고등학교(18.8%), 대학교(10.8%), 대학원(2.5%)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공공기관 알선을 통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3.3%, 2.1%로 가장 높았다.

<표 2-12> 취업경로

※단위: 명(%)

구분		현 직장 취업경로								
		가족 및 친척 소개	친구 등 지인의 소개	공공기관 알선	사설 직업알선 기관	대중매체 및 전단지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 프로그램	학교의 소개나 추천	기타	무응답
전체		16(6.7)	85(35.6)	71(29.7)	2(0.8)	16(6.7)	9(3.8)	17(7.1)	21(8.8)	2(0.8)
거주 형태	재가	13(5.4)	75(31.4)	37(15.5)	2(0.8)	13(5.4)	3(1.3)	9(3.8)	19(7.9)	2(0.8)
	시설(법/비법정)	3(1.3)	10(4.2)	34(14.2)	0(0.0)	3(1.3)	6(2.5)	8(3.3)	2(0.8)	0(0.0)
성별	남성	10(4.2)	59(24.7)	44(18.4)	1(0.4)	8(3.3)	6(2.5)	9(3.8)	14(5.9)	1(0.4)
	여성	6(2.5)	26(10.9)	27(11.3)	1(0.4)	8(3.3)	3(1.3)	8(3.3)	7(2.9)	1(0.4)
연령	20대 이하	2(0.8)	17(7.1)	15(6.3)	1(0.4)	3(1.3)	4(1.7)	8(3.3)	3(1.3)	0(0.0)
	30대	7(2.9)	29(12.1)	29(12.1)	0(0.0)	8(3.3)	2(0.8)	5(2.1)	6(2.5)	1(0.4)
	40대	3(1.3)	21(8.8)	18(7.5)	1(0.4)	3(1.3)	1(0.4)	1(0.4)	6(2.6)	0(0.0)
	50대 이상	4(1.7)	18(7.5)	8(3.3)	0(0.0)	2(0.8)	2(0.8)	3(1.3)	6(2.6)	1(0.0)
	무응답	0(0.0)	0(0.0)	1(0.4)	0(0.0)	0(0.0)	0(0.0)	0(0.0)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10(4.2)	43(18.0)	13(5.4)	0(0.0)	7(2.9)	3(1.3)	2(0.8)	11(4.6)	1(0.4)
	뇌병변	3(1.3)	15(6.3)	5(2.1)	1(0.4)	1(0.4)	0(0.0)	3(1.3)	3(1.3)	0(0.0)
	시각	0(0.0)	5(2.1)	5(2.1)	1(0.4)	4(1.7)	2(0.8)	9(3.8)	3(1.3)	0(0.0)
	청각	2(0.8)	18(7.5)	10(4.2)	0(0.0)	4(1.7)	0(0.0)	1(0.4)	4(1.7)	1(0.4)
	지적/자폐성	1(0.4)	4(1.7)	37(15.5)	0(0.0)	0(0.0)	4(1.7)	2(0.8)	0(0.0)	0(0.0)
	기타장애	0(0.0)	0(0.0)	1(0.4)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 복지 신청 자격	기초수급	7(2.9)	17(7.1)	24(10.0)	1(0.4)	1(0.4)	5(2.1)	2(0.8)	2(0.8)	2(0.8)
	차상위	3(1.3)	9(3.8)	3(1.3)	0(0.0)	2(0.8)	1(0.4)	2(0.8)	0(0.0)	0(0.0)
	기타	5(2.1)	55(23.0)	43(18.0)	0(0.0)	13(5.5)	3(1.3)	11(4.6)	16(6.7)	0(0.0)
	무응답	1(0.4)	4(1.7)	1(0.4)	1(0.4)	0(0.0)	0(0.0)	2(0.8)	3(1.3)	0(0.0)
결혼 상태	미혼	12(5.0)	58(24.3)	60(25.1)	1(0.4)	9(3.8)	5(2.1)	14(5.9)	8(3.3)	1(0.4)
	기혼/동거	3(1.3)	21(8.8)	9(3.8)	1(0.4)	6(2.5)	4(1.7)	3(1.3)	12(5.0)	1(0.4)
	이혼/별거/사별	1(0.4)	6(2.5)	2(0.8)	0(0.0)	1(0.4)	0(0.0)	0(0.0)	1(0.4)	0(0.0)
교육 수준	무학	1(0.4)	3(1.3)	2(0.8)	0(0.0)	0(0.0)	1(0.4)	0(0.0)	2(0.8)	0(0.0)
	초등학교	3(1.3)	2(0.8)	8(3.3)	0(0.0)	0(0.0)	0(0.0)	1(0.4)	1(0.4)	0(0.0)
	중학교	0(0.0)	3(1.3)	5(2.1)	0(0.0)	2(0.8)	2(0.8)	0(0.0)	0(0.0)	0(0.0)
	고등학교	10(4.2)	45(18.8)	38(15.9)	1(0.4)	4(1.7)	4(1.7)	8(3.3)	7(2.9)	2(0.8)
	대학교	2(0.8)	26(10.8)	14(5.9)	0(0.0)	6(2.5)	2(0.8)	8(3.3)	6(2.5)	0(0.0)
	대학원	0(0.0)	6(2.5)	4(1.7)	1(0.4)	4(1.7)	0(0.0)	0(0.0)	5(2.1)	0(0.0)

(4) 직장만족도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 여부를 설문한 결과, 79.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재가 55.2%, 시설 24.7%로 만족한다는 사례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례보다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 51.0%, 여성 28.8%로 나타나 남녀 모두에서 만족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20대 이하(18.4%), 30대(27.6%), 40대(18.4%), 50대 이상(15.5%)의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보다 많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주장애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지체(29.7%), 뇌병변(9.6%), 시각(11.3%), 청각(11.7%), 지적/자폐성(17.6%)에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시각 장애인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0.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하는 사례가 기초생활수급권자(21.3%), 차상위(5.9%), 기타 자격(49.4%)에서 모두 만족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하는 사례가 미혼(55.6%), 기혼 또는 동거(20.9%), 이혼, 별거, 사별(3.3%)에서 모두 만족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모든 사례(3.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4.6%, 중학교 3.3%, 고등학교 41.8%, 대학교 19.2%, 대학원 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교육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보다 많았다.

<표 2-13> 직장만족도

※단위: 명(%)

구분		근로만족도		
		만족	불만족	무응답
전체		191(79.9)	45(18.8)	3(1.3)
거주형태	재가	132(55.2)	38(15.9)	3(1.3)
	시설(법정/비법정)	59(24.7)	7(2.9)	0(0.0)
성별	남성	122(51.0)	28(11.7)	2(0.8)
	여성	69(28.8)	17(7.1)	1(0.4)
연령	20대 이하	44(18.4)	8(3.3)	1(0.4)
	30대	66(27.6)	20(8.4)	1(0.4)
	40대	44(18.4)	10(4.2)	0(0.0)
	50대 이상	37(15.5)	6(2.5)	1(0.4)
	무응답	0(0.0)	1(0.4)	0(0.0)
주장애유형	지체	71(29.7)	17(7.1)	2(0.8)
	뇌병변	23(9.6)	8(3.3)	0(0.0)
	시각	27(11.3)	2(0.8)	0(0.0)
	청각	28(11.7)	11(4.6)	1(0.4)
	지적/자폐성	42(17.6)	6(2.5)	0(0.0)
	기타장애	0(0.0)	1(0.4)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51(21.3)	8(3.3)	2(0.8)
	차상위	14(5.9)	6(2.5)	0(0.0)
	기타	118(49.4)	27(11.3)	1(0.4)
	무응답	8(3.3)	4(1.7)	0(0.0)
결혼상태	미혼	133(55.6)	33(13.8)	2(0.8)
	기혼/동거	50(20.9)	9(3.8)	1(0.4)
	이혼/별거/사별	8(3.3)	3(1.3)	0(0.0)
교육수준	무학	9(3.8)	0(0.0)	0(0.0)
	초등학교	11(4.6)	4(1.7)	0(0.0)
	중학교	8(3.3)	4(1.7)	0(0.0)
	고등학교	100(41.8)	17(7.1)	2(0.8)
	대학교	46(19.2)	17(7.1)	1(0.4)
	대학원	17(7.1)	3(1.3)	0(0.0)

(5) 불만족 사유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의 불만족스러운 점을 설문한 결과, 임금(80.0%)을 꼽은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40.0%), 동료들과의 관계(33.3%)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14> 불만족사유

구분	사례수(N)	비율(%)
임금	36	80.0
근로조건	18	40.0
업무환경	12	26.7
출퇴근 거리 및 이동	14	31.1
동료들과의 관계	15	33.3
사업주와의 관계	9	20.0
기타	3	6.7

3) 취업 욕구

(1) 이직의향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하는 곳에 만족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직의향을 설문한 결과, 60.0%가 이직을 원한다고, 40.0%가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이직을 원하는 사례는 재가의 경우 46.7%, 시설의 경우 13.3%로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남성의 경우 35.6%, 여성의 경우 24.4%로 남녀 모두에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40대의 경우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11.1%, 13.3%로 이직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직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35.6%, 8.9%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경우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24.4%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13.3%)보다 많았다. 시각,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직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4.4%, 15.6%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이직을 원하는 사례와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동일하여 이직 의향에 있어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한편, 다른 장애유형군에 비해 이직 의향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11.1%)가 이직을 원하는 사례(6.7%)보다 많은 반면, 차상위와 기타 자격의 경우는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각각 11.1%, 37.8%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와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이직을 원하는 사례가 각각 46.7%, 11.1%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보다 많은 반면,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이직을 원하지 않는 사례(4.4%)가 이직을 원하는 사례(2.2%)보다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이직을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이 6.7%로 이직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 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이직 의향이 있는 사례와 이직 의향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같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직 의향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20.0%로 이직 의향이 없는 사례의 비율 17.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교의 경우 이직 의향이 없는 사례의 비율이 1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모든 사례들(6.7%)이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2-15> 이직의향

※단위: 명(%)

구분		이직의향	
		이직 원함	이직 원하지 않음
전체		27(60.0)	18(40.0)
거주형태	재가	21(46.7)	17(37.8)
	시설(법정/비법정)	6(13.3)	1(2.2)
성별	남성	16(35.6)	12(26.7)
	여성	11(24.4)	6(13.3)
연령	20대 이하	3(6.7)	5(11.1)
	30대	16(35.6)	4(8.9)
	40대	4(8.9)	6(13.3)
	50대 이상	4(8.9)	2(4.4)
	무응답	0(0.0)	1(2.2)
주장애유형	지체	11(24.4)	6(13.3)
	뇌병변	4(8.9)	4(8.9)
	시각	2(4.4)	0(0.0)
	청각	7(15.6)	4(8.9)
	지적/자폐성	3(6.7)	3(6.7)
	기타장애	0(0.0)	1(2.2)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3(6.7)	5(11.1)
	차상위	5(11.1)	1(2.2)
	기타	17(37.8)	10(22.2)
	무응답	2(4.4)	2(4.4)
결혼상태	미혼	21(46.7)	12(26.7)
	기혼+동거	5(11.1)	4(8.9)
	이혼+별거+사별	1(2.2)	2(4.4)
교육수준	초등학교	1(2.2)	3(6.7)
	중학교	2(4.4)	2(4.4)
	고등학교	9(20.0)	8(17.8)
	대학교	12(6.7)	5(11.1)
	대학원	3(6.7)	0(0.0)

(2) 향후 취업의향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취업 의향을 설문한 결과, 취업을 원하지 않음(48.8%), 취업을 원함(31.6%),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음(19.0%) 순으로 나타나, 취업을 원하거나 향후 의향이 있는 사례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41.5%로 취업을 원하거나(24.0%), 향후 의향이 있는(15.9%) 사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례(7.6%)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7.3%)보다 많았으며, 향후 의향이 있는 사례의 비율은 3.1%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25.7%), 여성(23.1%)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8.5%, 9.6%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11.8%, 19.5%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20.7%), 뇌병변(11.1%), 시각(3.7%), 청각(4.5%), 지적/자폐성(8.2%), 기타장애(0.5%)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3.4%, 향후 의향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3.1%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29.6%), 차상위(5.9%), 기타 자격(12.5%)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미혼(29.4%), 기혼 또는 동거(13.6%), 이혼, 별거, 사별(5.7%)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8.2%), 초등학교(5.6%), 중학교(6.5%), 고등학교(23.7%)의 경우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각각 8.8%, 0.9%로 가장 많았다.

<표 2-16> 향후 취업의향

※단위: 명(%)

구분	향후 취업의향				
	취업 원함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취업할 의향 있음	취업 원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204(31.6)	123(19.0)	315(48.8)	4(0.6)	
거주형태	재가	155(24.0)	103(15.9)	268(41.5)	4(0.6)
	시설(법정/비법정)	49(7.6)	20(3.1)	47(7.3)	0(0.0)
성별	남성	115(17.8)	66(10.2)	166(25.7)	2(0.3)
	여성	89(13.8)	57(8.8)	149(23.1)	2(0.3)
연령	20대 이하	55(8.5)	31(4.8)	52(8.0)	0(0.0)
	30대	62(9.6)	30(4.6)	60(9.3)	2(0.3)
	40대	57(8.8)	36(5.6)	76(11.8)	0(0.0)
	50대 이상	29(4.5)	25(3.9)	126(19.5)	2(0.3)
	무응답	1(0.2)	1(0.2)	1(0.2)	0(0.0)
주장애 유형	지체	77(11.9)	51(7.9)	134(20.7)	2(0.3)
	뇌병변	47(7.3)	29(4.5)	72(11.1)	0(0.0)
	시각	22(3.4)	20(3.1)	24(3.7)	1(0.2)
	청각	24(3.7)	10(1.5)	29(4.5)	0(0.0)
	지적/자폐성	34(5.3)	13(2.0)	53(8.2)	1(0.2)
	기타장애	0(0.0)	0(0.0)	3(0.5)	0(0.0)
사회복지신청자격	기초수급	111(17.2)	70(10.8)	191(29.6)	2(0.3)
	차상위	27(4.2)	11(1.7)	38(5.9)	1(0.2)
	기타	63(9.6)	41(6.3)	81(12.5)	1(0.2)
	무응답	3(0.5)	1(0.2)	5(0.8)	0(0.0)
결혼상태	미혼	142(22.0)	80(12.4)	190(29.4)	2(0.3)
	기혼/동거	50(7.7)	32(5.0)	88(13.6)	2(0.3)
	이혼/별거/사별	12(1.9)	11(1.7)	37(5.7)	0(0.0)
교육수준	무학	7(1.1)	10(1.5)	53(8.2)	0(0.0)
	초등학교	12(1.9)	5(0.8)	36(5.6)	1(0.2)
	중학교	23(3.6)	15(2.3)	42(6.5)	0(0.0)
	고등학교	98(15.2)	55(8.5)	153(23.7)	2(0.3)
	대학교	57(8.8)	34(5.3)	26(4.0)	1(0.2)
	대학원	6(0.9)	3(0.5)	5(0.8)	0(0.0)
	무응답	1(0.2)	1(0.2)	0(0.0)	0(0.0)

(3) 원하는 직장

취업을 원하거나 앞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장을 설문한 결과, 사회복지관련 시설(27.5%), 장애인직업재활시설(23.2%),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19.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23.2%)이 가장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8.3%)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16.5%)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11.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사업체를 원하는 사례(5.5%)가 가장 많은 반면, 30대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8.6%로 가장 높았다. 40대(8.0%)와 50대 이상(5.2%)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희망하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12.5%), 뇌병변(6.4%), 시각(3.4%), 청각(3.7%)의 경우에 가장 높은 한편, 지적/지폐성 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8.9%)가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18.7%)가 가장 많은 반면, 차상위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3.1%)가 가장 많았다. 기타 자격의 경우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원하는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미혼(18.3%), 기혼 또는 동거(6.4%), 이혼, 별거, 사별(2.8%)의 모든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2.1%)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와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원하는 사례가 공히 1.5%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3.4%, 14.4%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원하는 사례(9.8%)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기타 직장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각각 0.9%로 가장 높았다.

<표 2-17> 원하는 직장

※단위: 명(%)

구분	원하는 직장 형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 사업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무응답	
전체	90(27.5)	76(23.2)	62(19.0)	49(15.0)	43(13.1)	7(2.1)	
거주형태	채가	76(23.2)	49(15.0)	51(15.6)	46(14.1)	30(9.2)	6(1.8)
	시설(법정/비법정)	14(4.3)	27(8.3)	11(3.4)	3(0.9)	13(4.0)	1(0.3)
성별	남성	54(16.5)	37(11.3)	38(11.6)	30(9.2)	19(5.8)	3(0.9)
	여성	36(11.0)	39(11.9)	24(7.3)	19(5.8)	24(7.3)	4(1.2)
연령	20대 이하	17(5.2)	17(5.2)	18(5.5)	17(5.2)	15(4.6)	2(0.6)
	30대	28(8.6)	28(8.6)	15(4.6)	7(2.1)	12(3.7)	2(0.6)
	40대	26(8.0)	22(6.7)	18(5.5)	15(4.6)	9(2.8)	3(0.9)
	50대 이상	17(5.2)	9(2.8)	11(3.4)	10(3.1)	7(2.1)	0(0.0)
	무응답	2(0.6)	0(0.0)	0(0.0)	0(0.0)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41(12.5)	23(7.0)	23(7.0)	20(6.1)	18(5.5)	3(0.9)
	뇌병변	21(6.4)	16(4.9)	19(5.8)	13(4.0)	5(1.5)	2(0.6)
	시각	11(3.4)	4(1.2)	7(2.1)	9(2.8)	10(2.0)	1(0.3)
	청각	12(3.7)	4(1.2)	10(3.1)	4(1.2)	4(1.2)	0(0.0)
	지적/자폐성	5(1.5)	29(8.9)	3(0.9)	3(0.9)	6(1.8)	1(0.3)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61(18.7)	43(13.1)	29(8.9)	21(6.4)	22(6.7)	5(1.5)
	차상위	9(2.8)	10(3.1)	7(2.1)	8(2.4)	4(1.2)	0(0.0)
	기타	20(6.1)	22(6.7)	24(7.3)	19(5.8)	17(5.2)	2(0.6)
	무응답	0(0.0)	1(0.3)	2(0.6)	1(0.3)	0(0.0)	0(0.0)
결혼상태	미혼	60(18.3)	57(17.4)	43(13.1)	32(9.8)	25(7.6)	5(1.5)
	기혼/동거	21(6.4)	15(4.6)	15(4.6)	14(4.3)	15(4.6)	2(0.6)
	이혼/별거/사별	9(2.8)	4(1.2)	4(1.2)	3(0.9)	3(0.9)	0(0.0)
교육수준	무학	7(2.1)	5(1.5)	1(0.3)	1(0.3)	3(0.9)	0(0.0)
	초등학교	4(1.2)	5(1.5)	5(1.5)	0(0.0)	1(0.3)	2(0.6)
	중학교	9(2.8)	11(3.4)	8(2.4)	6(1.8)	3(0.9)	1(0.3)
	고등학교	36(11.0)	47(14.4)	31(9.5)	19(5.8)	16(4.9)	4(1.2)
	대학교	32(9.8)	8(2.4)	16(4.9)	19(5.8)	16(4.9)	0(0.0)
	대학원	2(0.6)	0(0.0)	1(0.3)	3(0.9)	3(0.9)	0(0.0)
	무응답	0(0.0)	0(0.0)	0(0.0)	1(0.3)	1(0.3)	0(0.0)

(4)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해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71.7%로 현격히 많았고, 수급권자에서 탈락할까봐(8.9%), 내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8.3%)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18>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사례수(N)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226	71.7
내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6	8.3
원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서	3	1.0
수급권자에서 탈락할까봐	28	8.9
단기일자리로 지속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없어서	6	1.9
활동보조인이나 근로지원인과 같은 지원이 부족해서	1	0.3
기타	22	7.0
무응답	3	1.0
합계	315	100.0

4)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영역을 설문한 결과, 1순위로는 취업 시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의 수급권을 계속 유지(28.8%), 2순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16.7%), 3순위로는 장애인 취업 상담 지원 확대(10.8%)가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표 2-19>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취업 시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의 수급권을 계속 유지	256(28.8)	49(5.5)	49(5.5)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155(17.4)	137(15.4)	87(9.8)
서울시 및 산하기관 일자리 확대	60(6.7)	95(10.7)	73(8.2)
취업관련 기관의 일자리 연계(알선)	37(4.2)	73(8.2)	61(6.9)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48(5.4)	64(7.2)	50(5.6)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46(5.2)	62(7.0)	59(6.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12(12.6)	149(16.7)	93(10.4)
취업 시 사업장 환경 및 시설정비 지원금 제공	20(2.2)	44(4.9)	69(7.8)
자녀를 위한 위탁보육시설 확대	11(1.2)	15(1.7)	16(1.8)
취업 후 지속적인 상담지원	7(0.8)	29(3.3)	57(6.4)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11(1.2)	15(1.7)	25(2.8)
일자리 정보 제공	40(4.5)	54(6.1)	86(9.7)
장애인 취업 상담 지원 확대	25(2.8)	48(5.4)	96(10.8)
기타	34(3.8)	7(0.8)	18(2.0)
무응답	28(3.1)	49(5.5)	51(5.7)

5)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욕구

(1)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의향

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싶은지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원함 46.1%, 원하지 않음 53.4%로 취업 관련 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35.1%가 원함, 43.7%가 원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취업관련 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11.0%가 원함, 9.7%가 원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30.7%, 여성의 경우 22.7%로 남녀 모두에서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12.1%가 원함, 9.4%가 원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가 17.0%로 원하는 사례 8.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이 23.0%로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17.1%)보다 높은 반면, 뇌병변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10.2%로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 9.8%보다 높았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6.5%)가 원치 않는 사례(4.0%)보다 많은 반면, 청각 장애인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6.2%)가 원하는 사례(5.4%)보다 많았다. 지적/자폐성(9.9%)과 기타 장애(0.4%)의 경우에도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27.5%)가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21.2%)보다 많은 반면, 차상위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5.8%)가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5.1%)보다 많았다. 기타 자격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치 않는 사례의 비율이 19.4%로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 17.9%에 비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미혼(33.9%), 기혼 또는 동거(15.4%), 이혼, 별거, 사별(4.0%)에서 모두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무학(6.1%), 초등학교(5.2%), 중학교(5.4%), 고등학교(27.0%), 대학원(2.1%)의 경우에서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교의 경우 취업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12.9%로 취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0> 취업을 위한 교육이수 의향

※단위: 명(%)

		취업과 관련된 교육 이수 의향		
		원함	원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410(46.1)	475(53.4)	5(0.6)
거주형태	재가	312(35.1)	389(43.7)	4(0.4)
	시설(법정/비법정)	98(11.0)	86(9.7)	1(0.1)
성별	남성	228(25.6)	273(30.7)	3(0.3)
	여성	182(20.4)	202(22.7)	2(0.2)
연령	20대 이하	108(12.1)	84(9.4)	1(0.1)
	30대	117(13.1)	124(13.9)	2(0.2)
	40대	110(12.4)	113(12.7)	0(0.0)
	50대 이상	74(8.3)	151(17.0)	2(0.2)
	무응답	1(0.1)	3(0.3)	0(0.0)
주장애유형	지체	152(17.1)	205(23.0)	0(0.0)
	뇌병변	91(10.2)	87(9.8)	1(0.1)
	시각	58(6.5)	36(4.0)	2(0.2)
	청각	48(5.4)	55(6.2)	0(0.0)
	지적/자폐성	60(6.7)	88(9.9)	2(0.2)
	기타장애	1(0.1)	4(0.4)	0(0.0)
사회복지신 청자격	기초수급	189(21.2)	245(27.5)	3(0.3)
	차상위	52(5.8)	45(5.1)	0(0.0)
	기타	159(17.9)	173(19.4)	2(0.2)
	무응답	10(1.1)	12(1.3)	0(0.0)
결혼상태별	미혼	281(31.6)	302(33.9)	3(0.3)
	기혼/동거	94(10.6)	137(15.4)	2(0.2)
	이혼/별거/사별	35(3.9)	36(4.0)	0(0.0)
교육수준	무학	25(2.8)	54(6.1)	1(0.1)
	초등학교	22(2.5)	46(5.2)	1(0.1)
	중학교	44(4.9)	48(5.4)	0(0.0)
	고등학교	188(21.2)	240(27.0)	1(0.1)
	대학교	115(12.9)	67(7.5)	2(0.2)
	대학원	15(1.7)	19(2.1)	0(0.0)
	무응답	1(0.1)	1(0.1)	0(0.0)

(2) 원하는 교육·훈련 내용

취업 관련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1순위로는 자격증 취득 및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50.2%), 2순위로는 직업생활적응교육(면접기술, 대인관계 훈련, 출퇴근 교육 등)(34.1%), 3순위로는 일반 취업관련 프로그램(어학, 시험 준비 등)이(24.6%)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표 2-21> 원하는 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증 취득 및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206 (50.2)	104 (25.4)	57 (13.9)
직업생활적응교육(면접기술, 대인관계 훈련, 출퇴근 교육 등)	88 (21.5)	140 (34.1)	67 (16.3)
창업교육	34 (8.3)	57 (13.9)	94 (22.9)
일반 취업관련 프로그램(어학, 시험준비 등)	40 (9.8)	64 (15.6)	101 (24.6)
상급학교 취학	30 (7.3)	28 (6.8)	52 (12.7)
기타(장애특성별 맞춤형 취업교육 등)	6 (1.5)	8 (2.0)	23 (5.6)
무응답	6 (1.5)	9 (2.2)	16 (3.9)

(3) 원하는 교육·훈련의 형태

취업 관련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육 형태를 설문한 결과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60.2%)가 사이버 교육을 원하는 사례(39.0%)보다 많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재가의 경우 46.1%, 시설의 경우 14.1%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31.5%, 여성의 경우 28.8%로 남녀 모두에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20대 이하 14.9%, 30대 18.8%, 40대 16.6%, 50대 이상 10.0%로 모든 연령대에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는 지체(19.5%), 뇌병변(12.9%), 시각(8.3%), 청각(8.5%), 지적/자폐성(10.7%), 기타 장애(0.2%)로 모든 장애 유형에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보다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출석교육을 원하는 사례가 무학 5.1%, 초등학교 3.9%, 중학교 6.1%, 고등학교 27.1%, 대학교 14.6%, 대학원 3.2%로 모든 교육수준에서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보다 많았다. 단, 대학교의 경우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13.4%로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서 같이 출석교육과 사이버교육 간 비율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표 2-22> 원하는 교육 형태 ※단위: 명(%)

구분		원하는 교육형태		
		출석교육	사이버교육	무응답
전체		247(60.2)	160(39.0)	3(0.7)
거주형태	재가	189(46.1)	120(29.3)	3(0.7)
	시설(법정/비법정)	58(14.1)	40(9.8)	0(0.0)
성별	남성	129(31.5)	99(24.1)	0(0.0)
	여성	118(28.8)	61(14.9)	3(0.7)
연령	20대 이하	61(14.9)	46(11.2)	1(0.2)
	30대	77(18.8)	40(9.6)	0(0.0)
	40대	68(16.6)	41(10.0)	1(0.2)
	50대 이상	41(10.0)	32(7.8)	1(0.2)
	무응답	0(0.0)	1(0.2)	0(0.0)
주장애유형	지체	80(19.5)	72(17.6)	0(0.0)
	뇌병변	53(12.9)	36(8.8)	2(0.5)
	시각	34(8.3)	24(5.9)	0(0.0)
	청각	35(8.5)	12(2.9)	1(0.2)
	지적/자폐	44(10.7)	16(3.9)	0(0.0)
	기타장애	1(0.2)	0(0.0)	0(0.0)
교육수준	무학	21(5.1)	4(1.0)	0(0.0)
	초등학교	16(3.9)	6(1.5)	0(0.0)
	중학교	25(6.1)	17(4.1)	2(0.5)
	고등학교	111(27.1)	76(18.5)	1(0.2)
	대학교	60(14.6)	55(13.4)	0(0.0)
	대학원	13(3.2)	2(0.5)	0(0.0)
	무응답	1(0.2)	0(0.0)	0(0.0)

(4) 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더 이상의 취업 관련 교육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24.2%), 원하는 내용의 교육 없음(13.7%)이 그 뒤를 따랐다.

<표 2-23> 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활동보조인 등의 보조인력 지원 부족	39	8.2
장애에 맞는 보조기구 지원 부족	16	3.4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224	47.2
교육비용 부담	13	2.7
원하는 내용의 교육 없음	65	13.7
기타	115	24.2
무응답	3	0.6
합계	475	100.0

6) 필요로 하는 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취업지원 영역을 설문한 결과, 1순위로 중증장애인 교육비 지원 확대(29.3%), 교육기관 내 장애인 보조인력 확대 배치(26.3%) 등이 꼽혔고, 2순위로 중증장애인 교육비 지원 확대(20.5%),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14.6%) 등이 꼽혔으며, 3순위로는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18.5%),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15.9%) 등이 꼽혔다.

<표 2-24>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기관 내 장애인 보조인력 확대 배치	108 (26.3)	52 (12.7)	44 (10.7)
중증장애인 교육비 지원 확대	120 (29.3)	84 (20.5)	47 (11.5)
문화 여가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19 (4.6)	45 (11.0)	46 (11.2)
자립생활훈련 교육 확대	34 (8.3)	46 (11.2)	50 (12.2)
(중도장애인을 위한)장애 적용 교육 확대	4 (1.0)	22 (5.4)	25 (6.1)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	70 (17.1)	60 (14.6)	65 (15.9)
학습관련 보조기구 개발 및 확대 보급	14 (3.4)	30 (7.3)	34 (8.3)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22 (5.4)	53 (12.9)	76 (18.5)
기타	4 (1.0)	1 (0.2)	3 (0.7)
무응답	15 (3.7)	17 (4.1)	20 (4.9)

3. 주거 영역

1) 주거 현황

(1) 주택유형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인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19.0%), 주택 이외의 거처(11.4%)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 장애인의 경우 아파트(46.3%), 다세대주택(14.7%), 단독주택(9.1%)의 순으로, 시설 장애인의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9.4%), 다세대주택(4.3%), 아파트(3.2%)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26.9%), 여성(22.6%)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의 비율이 20대 이하(9.3%), 30대(10.7%), 40대(13.2%), 50대 이상(16.1%)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21.8%), 뇌병변(10.6%), 시각(3.9%), 청각(8.1%), 기타 장애(0.2%)의 경우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사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24.0%), 차상위(5.4%), 기타 자격(19.0%)의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주택유형

※단위: 명(%)

구분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무응답	
전체	90(10.1)	440(49.4)	66(7.4)	169(19.0)	18(2.0)	101(11.4)	6(0.7)	
거주형태	재가	81(9.1)	412(46.3)	53(6.0)	131(14.7)	8(0.9)	17(1.9)	3(0.3)
	시설(법정/비법정)	9(1.0)	28(3.2)	13(1.5)	38(4.3)	10(1.1)	84(9.4)	3(0.3)
성별	남성	51(5.7)	239(26.9)	43(4.8)	107(12.0)	11(1.2)	49(5.5)	4(0.5)
	여성	39(4.4)	201(22.6)	23(2.6)	62(7.0)	7(0.8)	52(5.8)	2(0.2)
연령	20대 이하	13(1.5)	83(9.3)	17(1.9)	37(4.2)	5(0.6)	36(4.0)	2(0.2)
	30대	30(3.4)	95(10.7)	24(2.7)	48(5.4)	5(0.6)	39(4.4)	2(0.2)
	40대	25(2.8)	117(13.2)	16(1.8)	46(5.2)	3(0.3)	16(1.8)	0(0.0)
	50대 이상	22(2.5)	143(16.1)	8(0.9)	37(4.2)	5(0.6)	10(1.1)	2(0.2)
	무응답	0(0.0)	2(0.2)	1(0.1)	1(0.1)	0(0.0)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35(3.9)	194(21.8)	29(3.3)	66(7.4)	10(1.1)	21(2.4)	2(0.2)
	뇌병변	21(2.4)	94(10.6)	13(1.5)	39(4.4)	3(0.3)	9(1.0)	0(0.0)
	시각	12(1.4)	35(3.9)	3(0.3)	24(2.7)	4(0.5)	16(1.8)	2(0.2)
	청각	8(0.9)	72(8.1)	4(0.5)	18(2.0)	0(0.0)	1(0.1)	0(0.0)
	지적/자폐성	14(1.6)	43(4.8)	17(1.9)	21(2.4)	1(0.1)	53(6.0)	1(0.1)
	기타장애	0(0.0)	2(0.2)	0(0.0)	1(0.1)	0(0.0)	1(0.1)	1(0.1)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29(3.3)	214(24.0)	31(3.5)	75(8.4)	10(1.1)	74(8.3)	4(0.5)
	차상위	9(1.0)	48(5.4)	6(0.7)	28(3.2)	1(0.1)	5(0.6)	0(0.0)
	기타	49(5.5)	169(19.0)	27(3.0)	59(6.6)	7(0.8)	22(2.5)	1(0.1)
	무응답	3(0.3)	9(1.0)	2(0.2)	7(0.8)	0(0.0)	0(0.0)	1(0.1)
교육수준	무학	10(1.1)	45(5.1)	4(0.5)	10(1.1)	3(0.3)	8(0.9)	0(0.0)
	초등학교	10(1.1)	33(3.7)	2(0.2)	12(1.4)	1(0.1)	1(1.1)	1(0.1)
	중학교	9(1.0)	53(6.0)	9(1.0)	11(1.2)	3(0.3)	7(0.8)	0(0.0)
	고등학교	37(4.2)	190(21.4)	40(4.5)	91(10.2)	8(0.9)	62(7.0)	1(0.1)
	대학교	18(2.0)	102(11.5)	10(1.1)	36(4.0)	2(0.2)	12(1.4)	4(0.5)
	대학원	6(0.7)	17(1.9)	1(0.1)	8(0.9)	1(0.1)	1(0.1)	0(0.0)
무응답	0(0.0)	0(0.0)	0(0.0)	1(0.1)	0(0.0)	1(0.1)	0(0.0)	

(2) 점유형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를 설문한 결과, 보증금 있는 월세(33.6%), 자가(21.9%), 전세(20.0%), 무상(19.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2.8%)와 사글세(1.1%)인 사례는 비교적 드물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30.7%), 자가(20.7%), 전세(19.4%)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무상의 비율이 14.6%로 가장 높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2.9%), 자가(1.2%)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20.1%), 자가(12.3%), 전세(10.8%) 순으로, 여성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13.5%), 자가(9.7%), 전세와 무상(각 9.2%)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무상(5.8%), 자가(4.9%), 전세(4.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9.8%), 무상(5.8%), 전세(5.5%) 순으로, 40대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9.3%), 전세(6.0%), 자가(5.5%)의 순으로, 50대 이상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10.0%), 자가(6.5%), 무상(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14.4%), 전세(9.3%), 자가(8.0%)의 순으로, 뇌병변의 경우도 보증금 있는 월세(7.1%), 전세(4.6%), 자가(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세(3.0%), 자가(2.5%), 보증금 있는 월세(2.3%)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5.3%), 자가(3.3%), 전세(2.0%)의 순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무상(7.1%), 보증금 있는 월세(4.4%), 자가(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23.7%), 무상(14.7%), 전세(7.2%) 순으로, 차상위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3.9%), 전세(2.8%), 자가(2.5%)의 순으로, 기타 자격의 경우 자가(17.2%), 전세(9.6%), 보증금 있는 월세(5.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18.7%), 무상(17.3%), 자가(13.5%)의 순으로,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10.1%), 자가(8.0%), 전세(5.8%)의 순으로,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4.8%), 전세(1.6%), 무상(0.9%)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명인 경우 무상의 비율(12.0%)이 가장 높았으며,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에 모두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각각 8.8%, 7.4%로 가장 높았다. 한편, 4명인 경우와 5명인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이 각각 7.5%, 3.8%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인 사례의 비율이 무학(3.2%), 초등학교(2.4%), 중학교(5.1%), 고등학교(15.8%), 대학교(6.2%)로 가장 높았다. 대학원인 경우 전세(1.2%), 자가(1.1%), 보증금 있는 월세(1.0%)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6> 점유형태

※단위: 명(%)

구분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무응답	
전체	195(21.9)	178(20.0)	299(33.6)	25(2.8)	10(1.1)	174(19.6)	9(1.0)	
거주 형태	재가	184(20.7)	173(19.4)	273(30.7)	17(1.9)	9(1.0)	44(4.9)	5(0.6)
	시설(법정/비법정)	11(1.2)	5(0.6)	26(2.9)	8(0.9)	1(0.1)	130(14.6)	4(0.5)
성별	남성	109(12.3)	96(10.8)	179(20.1)	15(1.7)	6(0.7)	92(10.3)	7(0.8)
	여성	86(9.7)	82(9.2)	120(13.5)	10(1.1)	4(0.5)	82(9.2)	2(0.2)
연령	20대 이하	44(4.9)	43(4.8)	39(4.4)	9(1.0)	3(0.3)	52(5.8)	3(0.3)
	30대	42(4.7)	49(5.5)	87(9.8)	8(0.9)	2(0.2)	52(5.8)	3(0.3)
	40대	49(5.5)	53(6.0)	83(9.3)	3(0.3)	1(0.1)	33(3.7)	1(0.1)
	50대 이상	58(6.5)	32(3.6)	89(10.0)	5(0.6)	4(0.5)	37(4.2)	2(0.2)
	무응답	2(0.2)	1(0.1)	1(0.1)	0(0.0)	0(0.0)	0(0.0)	0(0.0)
주장애유 형	지체	71(8.0)	83(9.3)	128(14.4)	9(1.0)	4(0.5)	59(6.6)	3(0.3)
	뇌병변	37(4.2)	41(4.6)	63(7.1)	5(0.6)	3(0.3)	30(3.4)	0(0.0)
	시각	22(2.5)	27(3.0)	20(2.3)	8(0.9)	2(0.2)	15(1.7)	2(0.2)
	청각	29(3.3)	18(2.0)	47(5.3)	1(0.1)	1(0.1)	6(0.7)	1(0.1)
	지적/자폐성	35(3.9)	9(1.0)	39(4.4)	2(0.2)	0(0.0)	63(7.1)	2(0.2)
	기타장애	1(0.1)	0(0.0)	2(0.2)	0(0.0)	0(0.0)	1(0.1)	1(0.1)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10(1.1)	64(7.2)	211(23.7)	11(1.2)	5(0.6)	131(14.7)	5(0.6)
	차상위	22(2.5)	25(2.8)	35(3.9)	2(0.2)	2(0.2)	11(1.2)	0(0.0)
	기타	153(17.2)	85(9.6)	47(5.3)	12(1.4)	3(0.3)	31(3.5)	3(0.3)
	무응답	10(1.1)	4(0.5)	6(0.7)	0(0.0)	0(0.0)	1(0.1)	1(0.1)
결혼 상태	미혼	120(13.5)	112(12.6)	166(18.7)	21(2.4)	6(0.7)	154(17.3)	7(0.8)
	기혼/동거	71(8.0)	52(5.8)	90(10.1)	3(0.3)	3(0.3)	12(1.4)	2(0.2)
	이혼/별거/사별	4(0.5)	14(1.6)	43(4.8)	1(0.1)	1(0.1)	8(0.9)	0(0.0)
가족 구성원수	1명	10(1.1)	56(6.3)	99(11.1)	9(1.0)	1(0.1)	107(12.0)	2(0.2)
	2명	35(3.9)	35(3.9)	78(8.8)	3(0.3)	4(0.5)	28(3.2)	2(0.2)
	3명	49(5.5)	35(3.9)	66(7.4)	5(0.6)	3(0.3)	15(1.7)	2(0.2)
	4명	67(7.5)	39(4.4)	41(4.6)	3(0.3)	2(0.2)	13(1.5)	1(0.1)
	5명이상	34(3.8)	13(1.5)	13(1.5)	5(0.6)	0(0.0)	8(0.9)	1(0.1)
	무응답	0(0.0)	0(0.0)	2(0.2)	0(0.0)	0(0.0)	3(0.3)	1(0.1)
교육 수준	무학	18(2.0)	15(1.7)	28(3.2)	1(0.1)	1(0.1)	17(1.9)	0(0.0)
	초등학교	12(1.4)	12(1.4)	21(2.4)	1(0.1)	1(0.1)	20(2.3)	2(0.2)
	중학교	13(1.5)	16(1.8)	45(5.1)	3(0.3)	1(0.1)	14(1.6)	0(0.0)
	고등학교	91(10.2)	75(8.4)	141(15.8)	14(1.6)	4(0.5)	101(11.4)	3(0.3)
	대학교	51(5.7)	49(5.5)	55(6.2)	6(0.7)	2(0.2)	17(1.9)	4(0.5)
	대학원	10(1.1)	11(1.2)	9(1.0)	0(0.0)	1(0.1)	3(0.3)	0(0.0)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2(0.2)	0(0.0)

(3) (공공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공공주택의 유형을 설문한 결과, 영구임대(46.2%), 공공임대(25.8%), 국민임대(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분양(6.9%)과 장기전세(5.7%)인 사례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영구임대(45.9%), 공공임대(16.4%)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의 경우 공공임대의 비율이 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영구임대(24.2%), 공공임대(15.4%)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도 영구임대(22.0%), 공공임대(10.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영구임대(4.7%), 공공임대(3.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30대의 경우 공공임대(10.1%), 영구임대(7.2%) 순으로 많았다. 40대의 경우 영구임대(14.5%), 공공임대(6.6%) 순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영구임대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각각 5.4%로 그 뒤를 이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영구임대(21.1%), 국민임대(8.8%)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뇌병변의 경우 영구임대(7.2%), 공공임대(5.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구임대(2.5%), 공공임대(2.2%) 순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영구임대(12.3%), 공공임대(2.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공공임대(7.6%), 영구임대(2.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영구임대(38.7%), 공공임대(18.9%)의 순으로 나타난 한편, 차상위의 경우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비율이 2.8%로 공히 가장 높고, 영구임대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자격의 경우 공공분양(4.4%), 공공임대(4.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공공임대(18.9%), 영구임대(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동거의 경우는 영구임대(20.1%), 국민임대(5.4%)의 순으로,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영구임대(8.2%), 공공임대(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살펴보면, 1명인 경우 공공임대(12.0%), 영구임대(11.0%) 순으로, 2명인 경우 영구임대(13.8%), 공공임대(5.0%)의 순으로, 3명인 경우 영구임대(12.0%), 공공임대(4.4%)의 순으로, 4명인 경우 영구임대(8.3%), 국민임대(2.8%) 순으로, 5명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1.9%), 공공분양(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비율이 무학은 6.6%, 초등학교는 4.1%, 중학교는 8.2%, 고등학교는 20.8%, 대학교는 5.4%, 대학원은 1.3%로 다른 공공주택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7> (공공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공주택 유형 *단위: 명(%)

구분	공공주택유형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체	22(6.9)	82(25.8)	18(5.7)	49(15.4)	147(46.2)	
거주형태	재가	21(6.6)	52(16.4)	17(5.4)	49(15.4)	146(45.9)
	시설(법정/비법정)	1(0.3)	30(9.4)	1(0.3)	0(0.0)	1(0.3)
성별	남성	9(2.8)	49(15.4)	12(3.8)	25(7.9)	77(24.2)
	여성	13(4.1)	33(10.4)	6(1.9)	24(7.6)	70(22.0)
연령	20대 이하	7(2.2)	12(3.8)	3(0.9)	7(2.2)	15(4.7)
	30대	2(0.6)	32(10.1)	7(2.2)	10(3.1)	23(7.2)
	40대	3(0.9)	21(6.6)	5(1.6)	15(4.7)	46(14.5)
	50대 이상	10(3.1)	17(5.4)	3(0.9)	17(5.4)	62(19.5)
	무응답	0(0.0)	0(0.0)	0(0.0)	0(0.0)	1(0.3)
주장애 유형	지체	9(2.8)	24(7.6)	4(1.3)	28(8.8)	67(21.1)
	뇌병변	5(1.6)	18(5.7)	11(3.5)	8(2.5)	23(7.2)
	시각	1(0.3)	7(2.2)	0(0.0)	5(1.6)	8(2.5)
	청각	6(1.9)	9(2.8)	2(0.6)	6(1.9)	39(12.3)
	지적/자폐성	1(0.3)	24(7.6)	1(0.3)	1(0.3)	9(2.8)
사회복지신 청자격	기초수급	0(0.0)	0(0.0)	0(0.0)	1(0.3)	1(0.3)
	차상위	2(0.6)	60(18.9)	5(1.6)	29(9.1)	123(38.7)
	기타	6(1.9)	9(2.8)	5(1.6)	9(2.8)	8(2.5)
	무응답	14(4.4)	13(4.1)	8(2.5)	11(3.5)	12(3.8)
결혼상태	미혼	0(0.0)	0(0.0)	0(0.0)	0(0.0)	4(1.3)
	기혼/동거	10(3.1)	60(18.9)	10(3.1)	25(7.9)	57(17.9)
	이혼/별거/사별	11(3.5)	12(3.8)	6(1.9)	17(5.4)	64(20.1)
가족 구성원수	1명	1(0.3)	10(3.1)	2(0.6)	7(2.2)	26(8.2)
	2명	0(0.0)	38(12.0)	2(0.6)	18(5.7)	35(11.0)
	3명	1(0.3)	16(5.0)	7(2.2)	9(2.8)	44(13.8)
	4명	10(3.1)	14(4.4)	2(0.6)	12(3.8)	38(12.0)
	5명 이상	6(1.9)	7(2.2)	5(1.6)	9(2.8)	26(8.3)
	무응답	5(1.6)	6(1.9)	2(0.6)	1(0.3)	4(1.3)
교육수준	무학	0(0.0)	1(0.3)	0(0.0)	0(0.0)	0(0.0)
	초등학교	1(0.3)	7(2.2)	0(0.0)	6(1.9)	21(6.6)
	중학교	2(0.6)	4(1.3)	2(0.6)	2(0.6)	13(4.1)
	고등학교	1(0.3)	6(1.9)	3(0.9)	6(1.9)	26(8.2)
	대학교	13(4.1)	48(15.1)	10(3.1)	20(6.3)	66(20.8)
	대학원	5(1.6)	16(5.0)	3(0.9)	13(4.1)	17(5.4)
		0(0.0)	1(0.3)	0(0.0)	2(0.6)	4(1.3)

(4)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54.9%), 불만족(24.4%), 매우 만족(11.4%), 매우 불만족(8.4%)로 나타나 주거와 관련하여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만족(41.2%), 불만족(21.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한편, 시설 거주자의 경우 만족(13.7%), 매우 만족(3.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비교적 거주와 관련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만족(29.8%), 불만족(14.9%) 순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만족(25.2%), 불만족(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만족(13.2%), 불만족(4.0%) 순으로 높았고, 30대의 경우에도 만족(14.8%), 불만족(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도 만족(13.4%), 불만족(6.4%) 순으로 높았고, 50대 이상의 경우도 만족(13.4%), 불만족(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만족(20.9%), 불만족(10.2%) 순으로, 뇌병변의 경우도 만족(9.6%), 불만족(6.6%) 순으로, 시각의 경우도 만족(6.4%), 불만족(2.7%) 순으로, 청각의 경우도 만족(6.7%), 불만족(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적/자폐성의 경우 만족(11.0%), 매우 만족(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만족(26.2%), 불만족(12.6%) 순으로, 차상위의 경우도 만족(5.8%), 불만족(2.7%) 순으로, 기타 자격의 경우도 만족(21.7%), 불만족(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만족(36.5%), 불만족(14.9%) 순으로,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도 만족(14.5%), 불만족(7.1%) 순으로,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에도 만족(3.93%), 불만족(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명인 경우 만족(16.6%), 불만족(8.2%) 순으로, 2명인 경우도 만족(12.0%), 불만족(5.4%), 3명인 경우도 만족(11.0%), 불만족(4.8%) 순으로, 4명인 경우도 만족(10.1%), 불만족(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사례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각각 1.6%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교육수준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그 뒤를 이어, 응답자 전반의 주거 만족 수준 경향과 일치하였다.

<표 2-28> 주거만족도

※단위: 명(%)

구분	주거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체	75(8.4)	217(24.4)	489(54.9)	101(11.4)	8(0.9)	
거주형태	재가	73(8.2)	193(21.7)	367(41.2)	68(7.6)	4(0.5)
	시설(법정/비법정)	2(0.2)	24(2.7)	122(13.7)	33(3.7)	4(0.5)
성별	남성	36(4.0)	133(14.9)	265(29.8)	64(7.2)	6(0.7)
	여성	39(4.4)	84(9.4)	224(25.2)	37(4.2)	2(0.2)
연령	20대 이하	8(0.9)	36(4.0)	117(13.2)	29(3.3)	3(0.3)
	30대	21(2.4)	59(6.6)	132(14.8)	28(3.2)	3(0.3)
	40대	22(2.5)	57(6.4)	119(13.4)	25(2.8)	0(0.0)
	50대 이상	23(2.6)	64(7.2)	119(13.4)	19(2.1)	2(0.2)
	무응답	1(0.1)	1(0.1)	2(0.2)	0(0.0)	0(0.0)
주장애유형	지체	38(4.3)	91(10.2)	186(20.9)	40(4.5)	2(0.2)
	뇌병변	17(1.9)	59(6.6)	85(9.6)	17(1.9)	1(0.1)
	시각	4(0.5)	24(2.7)	57(6.4)	9(1.0)	2(0.2)
	청각	9(1.0)	21(2.4)	60(6.7)	13(1.5)	0(0.0)
	지적/자폐성 기타장애	7(0.8) 0(0.0)	21(2.4) 1(0.1)	98(11.0) 3(0.3)	22(2.5) 0(0.0)	2(0.2) 1(0.1)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45(5.1)	112(12.6)	233(26.2)	42(4.7)	5(0.6)
	차상위	10(1.1)	24(2.7)	52(5.8)	11(1.2)	0(0.0)
	기타	20(2.3)	76(8.5)	193(21.7)	43(4.8)	2(0.2)
	무응답	0(0.0)	5(0.6)	11(1.2)	5(0.6)	1(0.1)
결혼상태	미혼	43(4.8)	133(14.9)	325(36.5)	79(8.9)	6(0.7)
	기혼/동거	22(2.5)	63(7.1)	129(14.5)	17(1.9)	2(0.2)
	이혼/별거/사별	10(1.1)	21(2.4)	35(3.9)	5(0.6)	0(0.0)
가족 구성원수	1명	19(2.1)	73(8.2)	148(16.6)	42(4.7)	2(0.2)
	2명	16(1.8)	48(5.4)	107(12.0)	12(1.4)	2(0.2)
	3명	22(2.5)	43(4.8)	98(11.0)	11(1.2)	1(0.1)
	4명	15(1.7)	37(4.2)	90(10.1)	22(2.5)	2(0.2)
	5명 이상	3(0.3)	14(1.6)	43(4.8)	14(1.6)	0(0.0)
	무응답	0(0.0)	2(0.2)	3(0.3)	0(0.0)	1(0.1)
교육수준	무학	12(1.4)	25(2.8)	36(4.0)	7(0.8)	0(0.0)
	초등학교	10(1.1)	16(1.8)	32(3.6)	10(1.1)	1(0.1)
	중학교	7(0.8)	31(3.5)	44(4.9)	10(1.1)	0(0.0)
	고등학교	37(4.2)	94(10.6)	250(28.1)	45(5.1)	3(0.3)
	대학교	8(0.9)	42(4.7)	107(12.0)	23(2.6)	4(0.5)
	대학원	1(0.1)	9(1.0)	18(2.0)	6(0.7)	0(0.0)
	무응답	0(0.0)	0(0.0)	2(0.2)	0(0.0)	0(0.0)

(5) 주거불만족 이유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만족을 느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73.6%), 집이나 방의 구조가 불편해서(69.9%), 채광 및 환풍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57.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29> 주거불만족 이유(중복응답)

구분	사례수(N)	비율(%)
사생활보장이 안 되어서	101	34.6
이동 및 교통여건 등 주변 환경이 불편해서	163	55.8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15	73.6
전월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126	43.2
채광 및 환풍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167	57.2
집이나 방의 구조가 불편해서	204	69.9
기타(협소함, 계단 등)	55	18.8

(6) 수리 받고 싶은 곳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수리하기를 원하는 곳을 설문한 결과, 1순위는 화장실(33.6%), 부엌(18.8%) 순으로, 2순위는 화장실(25.0%), 출입문 및 방문(14.7%) 순으로, 3순위는 현관, 냉난방 시설, 출입구 및 계단이 공히 11.6%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표 2-30> 수리 받고 싶은 곳 1순위, 2순위,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부엌	55(18.8)	34(11.6)	28(9.6)
화장실	98(33.6)	73(25.0)	30(10.3)
현관	10(3.4)	30(10.3)	34(11.6)
방안	29(9.9)	23(7.9)	30(10.3)
바닥 및 천장	6(2.1)	17(5.8)	17(5.8)
출입문 및 방문	11(3.8)	43(14.7)	31(10.6)
냉난방 시설	18(6.2)	22(7.5)	34(11.6)
채광 및 환풍	15(5.1)	19(6.5)	29(9.9)
출입구 및 계단	35(12.0)	13(4.5)	34(11.6)
기타	9(3.1)	9(3.1)	13(4.5)
무응답	6(2.1)	9(3.1)	12(4.1)

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1순위로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36.9%), 2순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확대(19.7%), 3순위로 전월세 계약 및 거주 기간 내 발생하는 집주인과의 마찰 중재(19.0)가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표 2-31>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	328(36.9)	116(13.0)	98(11.0)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확대	243(27.3)	175(19.7)	80(9.0)
장애인 맞춤형 아파트 분양	106(11.9)	146(16.4)	111(12.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	53(6.0)	137(15.4)	122(13.7)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24(2.7)	70(7.9)	83(9.3)
중증장애인을 위한 월세 지원	39(4.4)	92(10.3)	135(15.2)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10(1.1)	27(3.0)	22(2.5)
전월세 계약 및 거주 기간 내 발생하는 집주인과의 마찰 중재	56(6.3)	85(9.6)	169(19.0)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임대주택 제공	5(0.6)	16(1.8)	39(4.4)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	3(0.3)	2(0.2)	7(0.8)
무응답	23(2.6)	24(2.7)	24(2.7)

4. 일상생활 영역

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1) 서비스 이용 현황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57.0%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비율 (42.6%)보다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51.2%로 더 높은 반면, 시설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5.7%,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14.9%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남성 32.9%, 여성 24.0%로 남녀 모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20대 이하 11.9%, 30대 14.6%, 40대 15.3%, 50대 이상 14.8%로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지체 27.6%, 뇌병변 16.1%, 시각 7.5%, 기타장애 0.3%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반면, 청각과 지적/자폐성의 경우에는 각각 11.2%, 11.7%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26.7%, 차상위 7.8%, 기타 자격 21.7%로 모든 자격 유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미혼 38.3%, 기혼 또는 동거 13.6%, 이혼, 별거, 사별 5.1%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보다 높았다.

<표 2-32>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유무		
		이용함	이용 안 함	무응답
전체		507(57.0)	379(42.6)	4(0.5)
거주형태	재가	456(51.2)	246(27.6)	3(0.3)
	시설(법정/비법정)	51(5.7)	133(14.9)	1(0.1)
성별	남성	293(32.9)	209(23.5)	2(0.2)
	여성	214(24.0)	170(19.1)	2(0.2)
연령	20대 이하	106(11.9)	87(9.8)	0(0.0)
	30대	130(14.6)	111(12.5)	2(0.2)
	40대	136(15.3)	87(9.8)	0(0.0)
	50대 이상	132(14.8)	93(10.5)	2(0.2)
	무응답	3(0.3)	1(0.1)	0(0.0)
주장애유형	지체	246(27.6)	111(12.5)	0(0.0)
	뇌병변	143(16.1)	36(4.0)	0(0.0)
	시각	67(7.5)	27(3.0)	2(0.2)
	청각	3(0.3)	100(11.2)	0(0.0)
	지적/자폐성	45(5.1)	104(11.7)	1(0.1)
	기타장애	3(0.3)	1(0.1)	1(0.1)
사회복지신청자격	기초수급	238(26.7)	197(22.1)	2(0.2)
	차상위	69(7.8)	28(3.2)	0(0.0)
	기타	193(21.7)	140(15.7)	1(0.1)
	무응답	7(0.8)	14(1.6)	1(0.1)
결혼상태	미혼	341(38.3)	243(27.3)	2(0.2)
	기혼/동거	121(13.6)	110(12.4)	2(0.2)
	이혼/별거/사별	45(5.1)	26(2.9)	0(0.0)

(2) 서비스 이용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문한 결과,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30.8%), 300시간 이상(28.2%), 100시간미만(2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29.6%), 300시간 이상(23.0%) 순으로 많았으며, 시설의 경우 300시간 이상(5.2%), 100시간미만(3.2%)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0시간 이상(16.5%),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16.3%) 순으로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14.5%), 300시간 이상(11.7%)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100시간 미만과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의 비율이 7.1%로 공히 가장 높았으며, 30대(9.9%)와 40대(10.1%)의 경우 300시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의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14.7%)와 뇌병변(12.5%)의 경우 300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각의 경우 100시간 이상 200시간미만을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다. 청각(0.4%), 지적/자폐성(5.8%)의 경우 100시간미만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00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16.9%로 가장 높았으며, 차상위(4.4%)와 기타 자격(13.9%)의 경우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을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100시간 이상~200시간미만을 이용하는 사례의 비율이 미혼(18.9%), 기혼 또는 동거(8.7%), 이혼, 별거, 사별(3.2%) 모든 결혼상태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표 2-33> 서비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활동보조 이용시간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200시간 이상 ~ 300시간 미만	300시간 이상	
전체	128(25.4)	155(30.8)	79(15.7)	142(28.2)	
거주형태	채가	112(22.2)	149(29.6)	77(15.3)	116(23.0)
	시설(법정/비법정)	16(3.2)	6(1.2)	2(0.4)	26(5.2)
성별	남성	72(14.3)	82(16.3)	54(10.7)	83(16.5)
	여성	56(11.1)	73(14.5)	25(5.0)	59(11.7)
연령	20대 이하	36(7.1)	36(7.1)	22(4.4)	11(2.2)
	30대	24(4.8)	37(7.3)	18(3.6)	50(9.9)
	40대	29(5.8)	35(6.9)	20(4.0)	51(10.1)
	50대 이상	39(7.7)	45(8.9)	18(3.6)	30(6.0)
	무응답	0(0.0)	2(0.4)	1(0.2)	0(0.0)
주장애 유형	지체	63(12.5)	66(13.1)	43(8.5)	74(14.7)
	뇌병변	19(3.8)	32(6.4)	29(5.8)	63(12.5)
	시각	14(2.8)	47(9.3)	3(0.6)	3(0.6)
	청각	2(0.4)	0(0.0)	0(0.0)	0(0.0)
	지적/자폐성	29(5.8)	9(1.8)	3(0.6)	2(0.4)
	기타장애	1(0.2)	1(0.2)	1(0.2)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59(11.7)	60(11.9)	32(6.4)	85(16.9)
	차상위	17(3.4)	22(4.4)	14(2.8)	16(3.2)
	기타	52(10.3)	70(13.9)	32(6.4)	38(7.5)
	무응답	0(0.0)	3(0.6)	1(0.2)	3(0.6)
결혼상태	미혼	81(16.1)	95(18.9)	54(10.7)	108(21.4)
	기혼/동거	34(6.8)	44(8.7)	23(4.6)	20(4.0)
	이혼/별거/사별	13(2.6)	16(3.2)	2(0.4)	14(2.8)

(3) 희망하는 서비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이용시간을 설문한 결과,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31.7%), 200시간미만(28.0%), 600시간 이상~800시간미만(20.3%)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30.1%), 200시간미만(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경우 600시간 이상~800시간미만(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을 원하는 사례가 남성 18.1%, 여성 1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200시간 미만과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의 비율이 동일하게 7.8%로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600시간 이상~800시간미만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200시간미만의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의 비율이 14.5%로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의 경우 600시간 이상~800시간미만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시각장애의 경우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의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청각(0.4%)과 지적/자폐성(5.4%)의 경우 200시간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200시간 이상~ 400시간미만을 원하는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13.0%, 차상위 4.6%, 기타 자격 13.6%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19.7%), 기혼 또는 동거(9.6%)의 경우 200시간 이상~400시간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200시간미만의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표 2-34> 희망하는 서비스 시간 ※단위: 명(%)

구분	활동보조 희망시간					
	200시간 미만	200시간 이상 ~ 400시간 미만	400시간 이상 ~ 600시간 미만	600시간 이상 ~ 800시간 미만	800시간 이상	
전체	141(28.0)	159(31.7)	76(15.1)	102(20.3)	24(4.8)	
거주형태	채가	134(26.7)	151(30.1)	68(13.6)	82(16.3)	18(3.6)
	시설(법정/비법정)	7(1.4)	8(1.6)	8(1.6)	20(4.0)	6(1.2)
성별	남성	78(15.5)	91(18.1)	44(8.8)	61(12.2)	15(3.0)
	여성	63(12.6)	68(13.6)	32(6.4)	41(8.2)	9(1.8)
연령	20대 이하	39(7.8)	39(7.8)	13(2.6)	13(2.6)	2(0.4)
	30대	26(5.2)	34(6.8)	19(3.8)	38(7.6)	10(2.0)
	40대	32(6.4)	44(8.8)	23(4.6)	29(5.8)	6(1.2)
	50대 이상	43(8.6)	41(8.2)	20(4.0)	22(4.4)	6(1.2)
	무응답	1(0.2)	1(0.2)	1(0.2)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67(13.4)	73(14.5)	41(8.2)	56(11.2)	8(1.6)
	뇌병변	19(3.8)	40(8.0)	25(5.0)	44(8.8)	14(2.7)
	시각	25(5.0)	37(7.4)	5(1.0)	0(0.0)	0(0.0)
	청각	2(0.4)	0(0.0)	0(0.0)	0(0.0)	0(0.0)
	지적/자폐성	27(5.4)	8(1.6)	4(0.8)	2(0.4)	2(0.4)
	기타장애	1(0.2)	1(0.2)	1(0.2)	0(0.0)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56(11.2)	65(13.0)	43(8.6)	56(11.2)	14(2.7)
	차상위	20(4.0)	23(4.6)	3(0.6)	18(3.6)	5(1.0)
	기타	64(12.8)	68(13.6)	30(6.0)	26(5.2)	4(0.8)
	무응답	1(0.2)	3(0.6)	0(0.0)	2(0.4)	1(0.2)
결혼상태	미혼	83(16.5)	99(19.7)	57(11.4)	76(15.1)	22(4.4)
	기혼/동거	42(8.4)	48(9.6)	13(2.6)	16(3.2)	1(0.2)
	이혼/별거/사별	16(3.2)	12(2.4)	6(1.2)	10(2.0)	1(0.2)

(4) 서비스 만족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을 설문한 결과, 50.4%가 만족, 28.9%가 불만족, 16.2%가 매우 만족, 4.3%가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66.6%)이 더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만족(45.5%), 불만족(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경우에도 만족(4.9%), 불만족(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만족(30.6%), 불만족(1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만족(19.8%), 불만족(13.6%)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 불만족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단, 30대의 경우 불만족 10.22%, 매우 불만족 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만족하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의 경우는 불만족(23%), 만족(8.5%)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만족으로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21.7%, 차상위 7.5%, 기타 20.0%로 모든 자격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만족으로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미혼 32.6%, 기혼 또는 동거 12.0%, 이혼, 별거, 사별 4.9%로 모든 결혼상태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표 2-35>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전체		76(16.2)	237(50.4)	136(28.9)	20(4.3)	1(0.2)
거주형태	재가	73(15.5)	214(45.5)	125(26.6)	12(2.6)	1(0.2)
	시설(법정/비법정)	3(0.6)	23(4.9)	11(2.3)	8(1.7)	0(0.0)
성별	남성	44(9.4)	144(30.6)	72(15.3)	9(1.9)	1(0.2)
	여성	32(6.8)	93(19.8)	64(13.6)	11(2.3)	0(0.0)
연령	20대 이하	15(3.2)	46(9.8)	28(6.0)	7(1.5)	0(0.0)
	30대	16(3.4)	56(11.9)	48(10.22)	3(0.6)	1(0.2)
	40대	22(4.7)	71(15.1)	29(6.2)	4(0.9)	0(0.0)
	50대 이상	23(4.9)	64(13.6)	29(6.2)	6(1.3)	0(0.0)
	무응답	0(0.0)	0(0.0)	2(0.4)	0(0.0)	0(0.0)
주장애 유형	지체	40(8.5)	114(24.3)	62(13.2)	10(2.1)	1(0.2)
	뇌병변	18(3.8)	60(12.8)	50(10.6)	7(1.5)	0(0.0)
	시각	12(2.6)	40(8.5)	14(23.0)	0(0.0)	0(0.0)
	청각	0(0.0)	2(0.4)	0(0.0)	0(0.0)	0(0.0)
	지적/자폐성	5(1.1)	20(4.3)	10(2.1)	3(0.6)	0(0.0)
	기타장애	1(0.2)	1(0.2)	0(0.0)	0(0.0)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31(6.6)	102(21.7)	71(15.1)	13(2.8)	1(0.2)
	차상위	14(3.0)	35(7.5)	15(3.2)	2(0.4)	0(0.0)
	기타	30(6.4)	94(20.0)	50(10.6)	5(1.1)	0(0.0)
	무응답	1(0.2)	6(1.3)	0(0.0)	0(0.0)	0(0.0)
결혼상태	미혼	48(10.2)	153(32.6)	95(20.2)	16(3.4)	1(0.2)
	기혼/동거	22(4.7)	61(12.0)	30(6.4)	2(0.4)	0(0.0)
	이혼/별거/사별	6(1.3)	23(4.9)	11(2.3)	2(0.4)	0(0.0)

(5) 서비스 불만족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만족하지 못 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내가 필요한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73.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제공 받을 수 없어서(55.1%)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36> 서비스 불만족 이유

구분	사례수(N)	비율(%)
내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	86	55.1
내가 필요한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	115	73.7
서비스제공기관이 부당한 대우나 강요를 해서	15	9.6
활동보조인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53	34.0
기타(서비스 시간 부족 등)	56	35.9

2) 활동보조서비스 비이용 실태

(1) 서비스 필요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 여부를 설문한 결과, 45.4%가 '필요하다'고, 54.1%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39.3%)가 더 많은 반면, 시설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19.8%)가 더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30.1%, 여성은 24.0%로 남녀 모두 활동지원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13.2%)가 더 많은 반면, 30대(16.1%), 40대(12.4%), 50대 이상(15.8%)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17.2%), 뇌병변(5.0%), 시각(5.0%), 지적/자폐성(14.3%), 기타(0.3%) 장애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22.7%)이 현저하게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32.7%)가 더 많은 반면, 기혼 또는 동거(19.3%), 이혼, 별거, 사별(4.0%)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더 많았다.

<표 2-37> 서비스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유무		
		필요함	불필요함	무응답
전체		172 (45.4)	205 (54.1)	2 (0.5)
거주형태	재가	97 (25.6)	149 (39.3)	0 (0.0)
	시설(법정/비법정)	75 (19.8)	56 (14.8)	2 (0.5)
성별	남성	93 (24.5)	114 (30.1)	2 (0.5)
	여성	79 (20.8)	91 (24.0)	0 (0.0)
연령	20대 이하	50 (13.2)	36 (9.5)	1 (0.3)
	30대	50 (13.2)	61 (16.1)	0 (0.0)
	40대	39 (10.3)	47 (12.4)	1 (0.3)
	50대 이상	33 (8.7)	60 (15.8)	0 (0.0)
	무응답	0 (0.0)	1 (0.3)	0 (0.0)
주장애유형	지체	65 (17.2)	44 (11.6)	2 (0.5)
	뇌병변	19 (5.0)	17 (4.5)	0 (0.0)
	시각	19 (5.0)	8 (2.1)	0 (0.0)
	청각	14 (3.7)	86 (22.7)	0 (0.0)
	지적/자폐성	54 (14.3)	50 (13.2)	0 (0.0)
	기타장애	1 (0.3)	0 (0.0)	0 (0.0)
결혼상태	미혼	124 (32.7)	117 (30.9)	2 (0.5)
	기혼/동거	37 (9.8)	73 (19.3)	0 (0.0)
	이혼/별거/사별	11 (2.9)	15 (4.0)	0 (0.0)

(2)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한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공 받지 못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신청자격조건이 안 되어서(49.0%), 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할까 생각되어(24.0%), 가족이나 친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18.0%)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38>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한 이유

구분	사례수(N)	비율(%)
신청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98	49.0
충분한 서비스 시간이 되지 않아서	19	9.5
가족이나 친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36	18.0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9	4.5
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할까 생각되어	48	24.0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	15	7.5
기타(거주시설에서 생활하므로 등)	33	16.5

(3) 타인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도움을 받은 사례(85.5%)가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12.5%)보다 많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재가 장애인은 49.0%, 시설거주 장애인은 36.5%로 도움을 못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보다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7.0%, 여성 38.5%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도움을 못 받은 사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28.5, 뇌병변 12.5%, 시각 9.0%, 청각 7.0%, 지적/자폐성 28.5%가 도움을 받았으며, 이들 장애유형에서 모두 도움을 받은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체의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의 비율이 10.5%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47.5%, 차상위 9.5%, 기타 자격 26.5%로 모든 자격 유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 64.5%, 기혼 또는 동거 16.0%, 이혼, 별거, 사별 5.0%로 모든 결혼상태 유형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명 31.5%, 2명 14.5%, 3명 15.5%, 4명 18.0%, 5명 이상 5.5%로 모든 유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2-39> (비수급자인 경우)타인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일상생활도움받는지여부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무응답
전체		171(85.5)	25(12.5)	4(2.0)
거주형태	재가	98(49.0)	22(11.0)	3(1.5)
	시설(법정/비법정)	73(36.5)	3(1.5)	1(0.5)
성별	남성	94(47.0)	13(6.5)	3(1.5)
	여성	77(38.5)	12(6.0)	1(0.5)
주장애 유형	지체	57(28.5)	21(10.5)	3(1.5)
	뇌병변	25(12.5)	2(1.0)	0(0.0)
	시각	18(9.0)	1(0.5)	0(0.0)
	청각	14(7.0)	0(0.0)	0(0.0)
	지적/자폐성	57(28.5)	0(0.0)	1(0.5)
	기타장애	0(0.0)	1(0.5)	0(0.0)
사회복지신청 자격	기초수급	95(47.5)	15(7.5)	4(2.0)
	차상위	19(9.5)	2(1.0)	0(0.0)
	기타	53(26.5)	8(4.0)	0(0.0)
	무응답	4(2.0)	0(0.0)	0(0.0)
결혼상태	미혼	129(64.5)	13(6.5)	2(1.0)
	기혼/동거	32(16.0)	9(4.5)	1(0.5)
	이혼/별거/사별	10(5.0)	3(1.5)	1(0.5)
가족 구성원수	1명	63(31.5)	9(4.5)	3(1.5)
	2명	29(14.5)	4(2.0)	1(0.5)
	3명	31(15.5)	5(2.5)	0(0.0)
	4명	36(18.0)	5(2.5)	0(0.0)
	5명 이상	11(5.5)	1(0.5)	0(0.0)
	무응답	1(0.5)	1(0.5)	0(0.0)

<표 2-40> (비수급자인 경우)주로 도움 받는 대상

구분	사례수(N)	비율(%)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 활동지원	5	2.9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단체 지원	65	38.0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	83	48.5
친구, 선후배 등의 도움	36	21.1
민간단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원	4	2.3
기타(선생님 등)	16	9.4

(4) 주로 도움을 받는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설문한 결과,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4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단체 지원(38.0%)이 그 뒤를 이었다.

(5) 서비스 신청 경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험을 설문한 결과,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는 61.0%, 신청 경험이 없는 사례는 37.3%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 56.0%, 시설 4.9%가 신청 경험이 있었는데, 시설의 경우 신청 경험이 없는 사례가 4.5%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와 신청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신청 경험이 있는 남성은 35.3% 여성은 25.6%로 남녀 공히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신청 경험이 있는 20대 이하는 15.0%, 30대 14.8%, 40대 15.0%, 50대 이상 15.8%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신청 경험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 경험이 있는 지체 장애인은 31.4%, 시각 7.9%, 청각 0.4%, 지적/자폐성 5.7%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고, 뇌병변 장애인 역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은 12.6%, 없는 비율은 7.9%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청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6.4%, 차상위 8.9%, 기타 자격 25.0%로 모든 자격 유형에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신청 경험이 있는 미혼은 41.0%, 기혼 또는 동거는 14.8%, 이혼, 별거, 사별은 5.1%로 모든 유형에서 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41> 서비스 신청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무응답
전체		309(61.0)	189(37.3)	9(1.9)
거주형태	재가	284(56.0)	166(32.7)	6(1.2)
	시설(법정/비법정)	25(4.9)	23(4.5)	3(0.6)
성별	남	179(35.3)	107(21.1)	7(1.4)
	여	130(25.6)	82(16.2)	2(0.4)
연령	20대 이하	76(15.0)	29(5.7)	1(0.2)
	30대	75(14.8)	53(10.6)	2(0.4)
	40대	76(15.0)	57(11.2)	3(0.6)
	50대 이상	80(15.8)	50(9.9)	2(0.4)
	무응답	2(0.4)	0(0.0)	1(0.2)
주장애유형	지체	159(31.4)	85(16.8)	2(0.4)
	뇌병변	78(12.6)	64(7.9)	1(0.2)
	시각	40(7.9)	26(5.1)	1(0.2)
	청각	2(0.4)	0(0.0)	1(0.2)
	지적/자폐성	29(5.7)	13(2.6)	3(0.6)
	기타 장애	1(0.2)	1(0.2)	1(0.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134(26.4)	99(19.5)	5(1.0)
	차상위	45(8.9)	24(4.7)	0(0.0)
	기타	127(25.0)	62(12.2)	4(0.8)
	무응답	3(0.6)	4(0.8)	0(0.0)
결혼상태	미혼	208(41.0)	126(24.9)	7(1.4)
	기혼/동거	75(14.8)	44(8.7)	2(0.4)
	이혼/별거/사별	26(5.1)	19(3.8)	0(0.0)

(6) 재심사로 인한 서비스 비수급 경험

2013년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장애인의 비율은 9.1%,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90.6%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심사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재가 8.4%, 시설 0.7%였으며, 비수급 확률에 있어 두 거주형태 유형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재심사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남성 5.5%, 여성 3.6%였으며, 비수급 확률에 있어 남녀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2.9%, 30대 1.0%, 40대 2.3%, 50대 이상 2.9%가 재심사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비수급 확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5.2%, 뇌병변 2.6%, 지적/자폐성 1.3%가 재심사로 인한 비수급 경험이 있었으며, 주장애유형 간 비수급 확률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4.5%, 차상위 1.0, 기타 자격 3.6%가 재심사로 인한 비수급 경험이 있었으며, 각 자격 유형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6.5%, 기혼 또는 동거 1.6%, 이혼, 별거, 사별 1.0%가 재심사로 인한 비수급 경험이 있었으며, 각 유형 간 비수급 확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혼 장애인의 경우 다른 결혼상태 유형에 비하여 비수급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 재심사로 인한 서비스 비수급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28(9.1)	280(90.6)	1(0.3)
거주형태	재가	26(8.4)	258(83.5)	0(0.0)
	시설(법정/비법정)	2(0.7)	22(7.1)	1(0.3)
성별	남	17(5.5)	162(52.4)	0(0.0)
	여	11(3.6)	118(38.2)	1(0.3)
연령	20대 이하	9(2.9)	67(21.7)	0(0.0)
	30대	3(1.0)	71(23.0)	1(0.3)
	40대	7(2.3)	69(22.3)	0(0.0)
	50대 이상	9(2.9)	71(23.0)	0(0.0)
	무응답	0(0.0)	2(0.7)	0(0.0)
주장애유형	지체	16(5.2)	142(46.0)	1(0.3)
	뇌병변	8(2.6)	70(22.7)	0(0.0)
	시각	0(0.0)	40(12.9)	0(0.0)
	청각	0(0.0)	2(0.7)	0(0.0)
	지적/자폐성	4(1.3)	25(8.1)	0(0.0)
	기타 장애	0(0.0)	1(0.3)	0(0.0)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14(4.5)	119(38.5)	1(0.3)
	차상위	3(1.0)	42(13.6)	0(0.0)
	기타	11(3.6)	116(37.5)	0(0.0)
	무응답	0(0.0)	3(1.0)	0(0.0)
결혼상태	미혼	20(6.5)	187(60.5)	1(0.3)
	기혼/동거	5(1.6)	70(22.7)	0(0.0)
	이혼/별거/사별	3(1.0)	23(7.4)	0(0.0)

(7) 이의신청 경험

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이의신청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24.8%로 이의신청 경험이 없는 사례의 비율(74.2%)보다 더 낮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 21.7%, 시설 3.1%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14.0%, 여성 10.7%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4.9%, 30대 6.5%, 40대 7.0%, 50대 이상 6.5%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이의신청 경험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13.0%, 뇌병변 6.1%, 시각 3.9%, 청각 0.6%, 지적/자폐성 1.2%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었으며, 기타 장애의 경우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경험한 사례가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10.7%, 차상위 4.1%, 기타 자격 9.0%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2.2%, 초등학교 2.3%, 중학교 3.1%, 고등학교 8.4%, 대학교 7.2%, 대학원 1.4%가 이의신청 경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육수준의 사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의신청 경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이의신청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27(24.8)	380(74.2)	5(1.0)
거주형태	재가	111(21.7)	294(57.4)	4(0.8)
	시설(법정/비법정)	16(3.1)	86(16.8)	1(0.2)
성별	남	72(14.0)	222(43.4)	3(0.6)
	여	55(10.7)	158(30.9)	2(0.4)
연령	20대 이하	25(4.9)	95(18.6)	0(0.0)
	30대	33(6.5)	91(17.8)	1(0.2)
	40대	36(7.0)	102(19.9)	1(0.2)
	50대 이상	33(6.5)	92(18.0)	3(0.6)
주장애유형	지체	67(13.0)	164(32.0)	4(0.8)
	뇌병변	31(6.1)	73(14.3)	0(0.0)
	시각	20(3.9)	51(10.0)	0(0.0)
	청각	3(0.6)	13(2.5)	0(0.0)
	지적/자폐성	6(1.2)	76(14.8)	1(0.2)
	기타 장애	0(0.0)	3(0.6)	0(0.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55(10.7)	190(33.1)	2(0.3)
	차상위	21(4.1)	48(9.4)	1(0.2)
	기타	46(9.0)	136(26.6)	2(0.4)
	무응답	5(1.0)	6(1.2)	0(0.0)
교육수준	무학	11(2.2)	34(6.6)	2(0.4)
	초등학교	12(2.3)	29(5.7)	1(0.2)
	중학교	16(3.1)	27(5.3)	1(0.2)
	고등학교	43(8.4)	195(38.1)	1(0.2)
	대학교	37(7.2)	77(15.0)	0(0.0)
	대학원	7(1.4)	17(3.3)	0(0.0)
	무응답	1(0.2)	1(0.2)	0(0.0)

3) 의료서비스 비이용 실태

(1)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응답자 중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는 24.7%, 시설은 1.9%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재가의 경우 시설보다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15.2%, 여성 11.5%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3.7%, 30대 6.0%, 40대 8.0%, 50대 이상 8.8%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12.1%, 뇌병변 5.7%, 시각 2.6%, 청각 3.4%, 지적/자폐성 2.7%, 기타 장애 0.1%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11.7%, 차상위 3.6%, 기타 자격 10.7%가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3.4%, 초등학교 1.1%, 중학교 3.6%, 고등학교 12.0%, 대학교 5.3%, 대학원 1.2%가 미치료 경험이 있었다.

<표 2-44>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237(26.6)	646(72.6)	7(0.8)
거주형태	재가	220(24.7)	479(53.8)	6(0.7)
	시설(법정/비법정)	17(1.9)	167(18.8)	7(0.1)
성별	남	135(15.2)	366(41.1)	3(0.3)
	여	102(11.5)	280(31.5)	4(0.5)
연령	20대 이하	33(3.7)	158(41.1)	2(0.3)
	30대	53(6.0)	188(21.1)	2(0.2)
	40대	71(8.0)	151(17.0)	1(0.1)
	50대 이상	78(8.8)	147(16.5)	2(0.2)
	무응답	2(0.2)	2(0.2)	0(0.0)
주장애유형	지체	108(12.1)	248(27.9)	1(0.1)
	뇌병변	51(5.7)	127(14.3)	1(0.1)
	시각	23(2.6)	71(8.0)	2(0.2)
	청각	30(3.4)	73(8.2)	0(0.0)
	지적/자폐성	24(2.7)	124(13.9)	2(0.2)
	기타 장애	1(0.1)	3(0.3)	1(0.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104(11.7)	331(37.2)	2(0.2)
	차상위	32(3.6)	65(7.3)	0(0.0)
	기타	95(10.7)	235(26.4)	4(0.5)
	무응답	6(0.7)	15(1.7)	1(0.1)
교육수준	무학	30(3.4)	50(5.6)	0(0.0)
	초등학교	10(1.1)	58(6.5)	1(0.1)
	중학교	32(3.6)	60(6.7)	0(0.0)
	고등학교	107(12.0)	319(35.8)	3(0.3)
	대학교	47(5.3)	134(15.1)	3(0.3)
	대학원	11(1.2)	23(2.6)	0(0.0)
	무응답	0(0.0)	2(0.2)	0(0.0)

(2) 치료 받지 못한 이유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63.3%), 장애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44.3%),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없어서(4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5> 치료 받지 못한 이유

구분	사례수(N=237, 중복응답)	비율(%)
돈이 없어서	150	63.3
병의원 등에 예약이 힘들어서	70	29.5
교통이 불편해서	90	38.0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102	43.0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이 힘들어서	77	32.5
나의 장애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105	44.3
기타(보호자 및 활동보조인의 부재 등)	31	13.1

4)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영역

활동보조가 가장 필요한 활동영역은 보행 및 외출(60.5%), 청소, 빨래 등 가사(60.0%),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5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46>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영역

구분	사례수(N=854, 중복응답)	비율(%)
신변처리	340	39.8
보행 및 외출	517	60.5
청소, 빨래 등 가사	512	60.0
육아	44	5.2
약 먹기, 병간호 등 건강관리	292	34.2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477	55.9
교육(훈련) 참여	289	33.8
여행,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	431	50.5
의사소통(말벗 포함)	342	40.0
근로(사무)지원	189	22.1
전화 및 인터넷 사용	290	34.2
법률 서비스	145	17.0
행정민원 서비스	255	29.9
주말 야외활동	321	37.6
기타(응급상황 발생시 등)	21	2.5

5)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공공시설 이용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관련 서비스는 1순위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택시 공급 확충(38.1%), 2순위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지하철 및 버스 확충(26.0%), 3순위로 여가문화시설 접근성 향상(17.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47> 공공시설 이용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실시 확대	112 (12.6)	3 (6.0)	55 (6.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택시 공급 확충	339 (38.1)	133 (14.9)	75 (8.4)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지하철 및 버스 확충	117 (13.1)	231 (26.0)	126 (14.2)
여가문화시설(극장, 연극공연장) 접근성 향상	70 (7.9)	136 (15.3)	156 (17.5)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66 (7.4)	131 (14.7)	138 (15.5)
관공서 접근성 향상	13 (1.5)	32 (3.6)	67 (7.5)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안내원, 수화통역사 등) 배치	105 (11.8)	75 (8.4)	100 (11.2)
장애인을 위한 설비(전용 컴퓨터, 점자문서, 음성파일 등) 배치	105 (11.8)	75 (8.4)	100 (11.2)
공공시설 또는 관공서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32 (3.6)	55 (6.2)	98 (11.0)
기타	7 (0.8)	4 (0.4)	15 (1.7)
무응답	20 (2.2)	22 (2.5)	24 (2.7)

(2)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는 1순위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55.5%), 2순위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29.3%), 3순위로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31.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48>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494 (55.5)	112 (12.6)	69 (7.8)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77 (8.7)	181 (20.3)	175 (19.7)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114 (12.8)	261 (29.3)	133 (14.9)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강화	27 (3.0)	51 (5.7)	64 (7.2)
장애인 생활교육기관 확충(점자, 수화 교육 등)	44 (4.9)	105 (11.8)	116 (13.0)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 (수화통역인력, 전문상담서비스 확충 등)	100 (11.2)	143 (16.1)	281 (31.6)
기타	12 (1.3)	13 (1.5)	22 (2.5)
무응답	22 (2.5)	24 (2.7)	30 (3.4)

(3) 의료서비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의료 관련 서비스는 1순위로 의료급여 비수급자의 의료비 일정 부분 지원(22.7%), 2순위는 입원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18.2%), 3순위로 입원시 간병인 제공 제도화(1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49> 의료서비스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역보건소 및 병원의 접근성 향상	164 (18.4)	72 (8.1)	96 (10.8)
의료급여 비수급자 의료비 일정 부분 지원	202 (22.7)	113 (12.7)	95 (10.7)
의료서비스 가정방문 지원 확대 실시	86 (9.7)	113 (12.7)	99 (11.1)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 실시	90 (10.1)	147 (16.5)	116 (13.0)
입원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110 (12.4)	162 (18.2)	116 (13.0)
입원시 간병인 제공 제도화	131 (14.7)	137 (15.4)	140 (15.7)
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 긴급 의료급여 지원	25 (2.8)	41 (4.6)	88 (9.9)
취업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혜택 지속적 제공	53 (6.0)	82 (9.2)	115 (12.9)
기타	9 (1.0)	3 (0.3)	4 (0.4)
무응답	20 (2.2)	20 (2.2)	21 (2.4)

(4) 지역사회 환경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서비스는 1순위로 지역사회 내 이동 편의성(29.0%), 2순위로 편의시설 접근성(23.7%), 3순위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22.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50> 지역사회 환경 관련 서비스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역사회 내 이동 편의성(도로, 주거지 진입로 등)	258(29.0)	121(13.6)	102(11.5)
편의시설 접근성(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등)	155(17.4)	211(23.7)	127(14.3)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점자유도블럭, 점멸등 등)	72(8.1)	97(10.9)	118(13.3)
인적 네트워크(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등)	127(14.3)	146(16.4)	124(13.9)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장애에 대한 인식(편견 없는 태도 등)	199(22.4)	167(18.8)	186(20.9)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54(6.1)	124(13.9)	201(22.6)
기타	5(0.6)	4(0.4)	9(1.0)
무응답	20(2.2)	20(2.2)	23(2.6)

(5) 전환서비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전환서비스 관련 서비스로는 1순위로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확충(61.0%), 2순위로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입소기간 연장(40.7%), 3순위로 장애인전환서비스 시설 입주자격 완화(23.7%)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51> 전환서비스 관련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N=59)	1순위	2순위	3순위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확충	36 (61.0)	4 (6.8)	13 (22.0)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입소기간 연장	12 (20.3)	24 (40.7)	6 (10.2)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입주자격 완화	3 (5.1)	13 (22.0)	14 (23.7)
장애인전환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2 (3.4)	2 (3.4)	13 (22.0)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퇴소자를 위한 사후지원 확대	6 (10.2)	16 (27.1)	12 (20.3)
기타	0 (0.0)	0 (0.0)	1 (1.7)

5. 기타 영역

1) 자립생활지원 전반에 대한 의견

(1)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소득(49.3%), 주거(17.8%), 일상생활(14.7%)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5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

구분	빈도(명)	비율(%)
소득	439	49.3
고용	78	8.8
주거	158	17.8
일상생활(활동지원, 보조기구 등)	131	14.7
의료	28	3.1
평생교육	21	2.4
여가문화	15	1.7
양육	7	0.8
기타	5	0.6
무응답	8	0.9
합계	890	100.0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영역을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43.2%), 일상생활(1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거(9.5%), 소득(6.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의 경우 소득(23.0%), 일상생활(6.5%) 순으로 나타났고, 뇌병변의 경우 소득(9.8%), 일상생활(4.5%)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 청각 지적/자폐성의 경우에도 소득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표 2-5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2) ※단위: 명(%)

구분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활동지원, 보조기구 등)	기타
전체		439(49.8)	78(8.8)	158(17.9)	131(14.9)	76(8.6)
거주형태	재가	381(43.2)	66(7.5)	74(8.4)	115(13.0)	65(7.4)
	시설(법정/비법정)	58(6.6)	12(1.4)	84(9.5)	16(1.8)	11(1.2)
주장애 유형	지체	203(23.0)	27(3.1)	48(5.4)	57(6.5)	21(2.4)
	뇌병변	86(9.8)	9(1.0)	34(3.9)	40(4.5)	9(1.0)
	시각	45(5.1)	16(1.8)	14(1.6)	10(1.1)	8(0.9)
	청각	45(5.1)	16(1.8)	8(0.9)	10(1.1)	23(2.6)
	지적/자폐성	59(6.7)	9(1.0)	54(6.1)	12(1.4)	15(1.7)
	기타장애	1(0.1)	1(0.1)	0(0.0)	2(0.2)	0(0.0)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유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489명의 응답자가 653건의 제안을 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주거 영역에서 나왔고, 다음은 소득 영역과 일상생활 영역에서 나왔다.

<표 2-5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489명, 653건) ※단위: 명(%)

영역	빈도(%)	주요내용
소득	124(19.0)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고려한 기초생활급여(생계비), 장애수당 증액 비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용	88(13.5)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의무고용 및 정규직 고용 확대, 취업차별 철폐, 기간제 고용시 계약기간 연장,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한 현실적인 직업교육
주거	130(19.9)	공공 및 영구임대 확충 및 우선권 제공, (영구 거주 가능한) 그룹홈 확충, 장애인에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춘 주거 확충, 전세금 지원 확대
일상생활	118(18.1)	활동보조시간 연장(24시간) 및 본인부담금 인하, 보조기구 지원 확대, 전동휠체어 튜닝비용 등 지원
의료	45(6.9)	의료비 지원금 증액,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비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일부라도 지원
평생교육	11(1.7)	고교(특수학교) 졸업 후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검정고시, 학원 등) 지원 확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보행교육, 점자, 컴퓨터 등)
여가문화	22(3.4)	문화 프로그램 및 바우처 확대, 체육활동 지원, 장애의 특성(청각장애 등)을 고려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양육	8(1.2)	아기용품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을 위한 의사소통 도우미 (수화통역 등) 지원
기타	107(16.4)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동환경 개선,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응답양상은 거주형태와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시설 장애인의 경우 주거 영역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양육 영역과 관련된 내용은 재가 장애인에서만 언급됐다.

각 영역별로 가장 자주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재가와 시설 모두의 경우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언급된 반면, 평생교육, 여가문화, 양육, 기타 영역에서는 재가와 시설 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2-55> 서울시의 역할(거주형태별 주요 응답내용) ※단위: 명

구분	재가		시설(법정/비법정)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소득	109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증액	15	기초생활급여 증액
고용	74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무고용제 확대)	14	장애인 일자리 확대
주거	78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확충	52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확충
일상생활	106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림	12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림(24시간 필요)
의료	38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증액	7	의료 지원 확대(무상제공)
평생교육	10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	1	외곽지역 교육 기회 보장
여가문화	19	중증장애인(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3	문화바우처 지원액 확대
양육	8	아기용품 지원, 양육을 위한 의사소통도우미(수화통역) 지원	0	
기타	85	장애인콜택시 확대	22	체험홈, 그룹홈 확대(영구거주)

장애유형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차이를 보였다. 지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영역, 뇌병변은 소득 영역, 시각과 청각은 고용 영역을, 지적/자폐성은 주거 영역을 가장 자주 언급했다.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의료 영역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 걸쳐 유사한 의견이 자주 제기되었으나, 평생교육, 여가문화, 양육, 기타 영역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56>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지체, 뇌병변) ※단위: 명

	지체		뇌병변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소득	15	기초생활급여 증액	33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증액
고용	39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8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주거	46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확충	32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마련
일상생활	67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림	32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림
의료	23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13	의료비 지원 증액
평생교육	7	취업을 위한 교육 확충	1	장애인 교육시설 확대(검정고시나 학원 교육비 지원)
여가문화	5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시설 확충	3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양육	3	아기용품 지원	3	자녀 취업 전 양육비, 교육비 지원 확대
기타	47	장애인 콜택시 공급 확충	22	장애인 콜택시 공급 확충

<표 2-57>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 시각, 청각) ※단위: 명

	시각		청각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소득	16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증액	1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고용	18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감시 및 규제 철폐	14	청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주거	13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1	넓은 집 필요
일상생활	12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림	1	청각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5	가정방문 진료 영역 확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0	
평생교육	1	보행교육, 점자, 컴퓨터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교육 필요	0	
여가문화	4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7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가문화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양육	0		2	양육에 필요한 교육 및 의사소통(수화통역) 지원
기타	13	장애인 콜택시 공급 확충	7	각 영역(등산로, 도서관, 대학교 등)에 수화통역서비스 확충

<표 2-58> 서울시의 역할(주장애유형별 주요내용 : 지적/자폐성, 기타 장애) ※단위: 명

	지적/자폐성		기타 장애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빈도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
소득	16	기초생활수급조건 완화 및 급여 증액	1	소득지원 확대
고용	8	고용보장 정책 수립 및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여 자립생활 지원 임금인상	1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주거	38	영구임대아파트 공급확충	0	
일상생활	4	활동보조급여 확대	2	공정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늘림
의료	4	의료비 지원	0	
평생교육	2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확충 특수학교 졸업 후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 확충	0	
여가문화	3	성인 지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충 시설거주자 문화바우처 지원 증액	0	
양육	0		0	
기타	18	그룹홈 형태의 거주시설 확대, 영구거주 필요	0	

2) 출산 및 양육지원

(1) 배우자의 장애 보유 여부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배우자에게도 장애가 있는 사례는 56.2%로 장애가 없는 사례(43.8%)보다 많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 27.0%, 지적/자폐성 0.5%로 그 배우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뇌병변(2.2%), 시각(5.4%) 장애의 경우 배우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의 비율이 더 낮았다. 지체 장애의 경우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23.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28.1%, 기타 자격 20.5%로 배우자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차상위(3.8%)의 경우 배우자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더 적었다.

<표 2-59> 배우자의 장애 보유 여부

※단위: 명(%)

구분		장애 있음	장애 없음
전체		104 (56.2)	81 (43.8)
주장애유형	지체	39 (21.1)	44 (23.8)
	뇌병변	4 (2.2)	19 (10.3)
	시각	10 (5.4)	12 (6.5)
	청각	50 (27.0)	4 (2.2)
	지적/자폐성	1 (0.5)	0 (0.0)
	기타장애	0 (0.0)	2 (1.1)
사회복지신청 자격	기초수급	52 (28.1)	33 (17.9)
	차상위	7 (3.8)	13 (7.0)
	기타	38 (20.5)	35 (18.9)
	무응답	7 (3.8)	0 (0.0)

(2) 만18세 이하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재가 장애인 중 54.1%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23.8%, 뇌병변 6.5%, 시각 8.7%, 청각 14.6%, 지적/자폐성 0.5%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례의 비율이 같거나 더 높았으며, 기타 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례가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8.7%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차상위(4.9%)와 기타 자격(17.3%)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사례의 비율이 더 낮았다.

<표 2-60> 만18세 이하 자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전체		100 (54.1)	85 (46.0)
주장애유형	지체	44 (23.8)	39 (21.1)
	뇌병변	12 (6.5)	11 (6.0)
	시각	16 (8.7)	6 (3.2)
	청각	27 (14.6)	27 (14.6)
	지적/자폐성	1 (0.5)	0 (0.0)
	기타장애	0 (0.0)	2 (1.1)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53 (28.7)	32 (17.3)
	차상위	9 (4.9)	11 (6.0)
	기타	32 (17.3)	41 (22.2)
	무응답	6 (3.2)	1 (0.5)

(3) 자녀의 장애 여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장애 있음'이 10.3%로 '없음(89.2%)'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2.2%, 뇌병변 1.1%, 시각 0.5%, 청각 6.0%로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적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7.6%, 차상위 0.5%, 기타 자격 2.2%로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적었다.

<표 2-61> 자녀의 장애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무응답
전체		19 (10.3)	165 (89.2)	1 (0.5)
주장애유형	지체	4 (2.2)	78 (42.2)	1 (0.5)
	뇌병변	2 (1.1)	21 (11.4)	0 (0.0)
	시각	1 (0.5)	21 (11.4)	0 (0.0)
	청각	11 (6.0)	43 (23.2)	0 (0.0)
	지적/자폐성	1 (0.5)	0 (0.0)	0 (0.0)
	기타장애	0 (0.0)	2 (1.1)	0 (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14 (7.6)	71 (38.4)	0 (0.0)
	차상위	1 (0.5)	19 (10.3)	0 (0.0)
	기타	4 (2.2)	68 (36.8)	1 (0.5)
	무응답	0 (0.0)	7 (3.8)	0 (0.0)

(4) 주양육자

장애인 자녀의 주양육자를 살펴보면, 본인(43.8%),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가족(25.4%), 배우자(1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14.6%, 뇌병변 3.8%, 시각 5.4%, 청각 19.5%로 본인이 양육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22.2%)와 차상위(3.8%)는 본인이 양육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자격의 경우 본인(14.6%),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가족(14.6%)이 양육하는 비율이 공히 가장 높았다.

<표 2-62>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가족	가사 및 육아도우미, 활동보조인	기타	무응답	
전체	81 (43.8)	22 (11.9)	47 (25.4)	10 (5.4)	3 (1.6)	22 (11.9)	
주장애 유형	지체	27 (14.6)	9 (4.9)	24 (13.0)	8 (4.3)	2 (1.1)	13 (7.0)
	뇌병변	7 (3.8)	5 (2.7)	5 (2.7)	1 (0.5)	1 (0.5)	4 (2.2)
	시각	10 (5.4)	2 (1.1)	7 (3.8)	1 (0.5)	0 (0.0)	2 (1.1)
	청각	36 (19.5)	5 (2.7)	10 (5.4)	0 (0.0)	0 (0.0)	3 (1.6)
	지적/자폐성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기타장애	1 (0.5)	0 (0.0)	1 (0.5)	0 (0.0)	0 (0.0)	0 (0.0)
사회복지 신청 자격	기초수급	41 (22.2)	11 (6.0)	15 (8.1)	9 (4.9)	2 (1.9)	7 (3.8)
	차상위	7 (3.8)	4 (2.2)	5 (2.7)	0 (0.0)	0 (0.0)	4 (2.2)
	기타	27 (14.6)	6 (3.2)	27 (14.6)	1 (0.5)	1 (0.5)	11 (6.0)
	무응답	6 (3.2)	1 (0.5)	0 (0.0)	0 (0.0)	0 (0.0)	0 (0.0)

(5) 월평균 자녀 양육비

월평균 자녀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20만원이상~40만원 미만과 40만원이상~60만원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이상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경우 40만원이상~60만원미만(10.8%)이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0만원 미만(3.2%)이 가장 많았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20만원이상~40만원미만(7.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0만원이상~60만원미만(13.0%)이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2.7%)와 기타 자격(8.7)의 경우 20만원이상~40만원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2-63> 월평균 자녀 양육비

*단위: 명(%)

구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27 (14.6)	38 (20.5)	38 (20.5)	17 (9.2)	14 (7.6)	28 (15.1)	23 (12.4)	
주장애 유형	지체	11 (6.0)	18 (9.7)	20 (10.8)	6 (3.2)	3 (1.6)	13 (7.0)	12 (6.5)
	뇌병변	6 (3.2)	2 (1.1)	3 (1.6)	3 (1.6)	2 (1.1)	3 (1.6)	4 (2.2)
	시각	2 (1.1)	4 (2.2)	4 (2.2)	4 (2.2)	2 (1.1)	4 (2.2)	2 (1.1)
	청각	6 (3.2)	13 (7.0)	11 (6.0)	4 (2.2)	7 (3.8)	8 (4.3)	5 (2.7)
	지적/자폐성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장애	2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 복지 신청 자격	기초수급	16 (8.7)	15 (8.1)	24 (13.0)	9 (4.9)	4 (2.2)	10 (5.4)	7 (3.8)
	차상위	2 (1.1)	5 (2.7)	3 (1.6)	2 (1.1)	1 (0.5)	3 (1.6)	4 (2.2)
	기타	9 (4.9)	16 (8.7)	11 (6.0)	4 (2.2)	7 (3.8)	15 (8.1)	11 (6.0)
	무응답	0 (0.0)	2 (1.1)	0 (0.0)	2 (1.1)	2 (1.1)	0 (0.0)	1 (0.5)

(6)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59.5%), 학교방문 및 행사참여(27.6%), 자녀의 심리적 위축(2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64>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구분	사례수(N=185, 중복응답)	비율(%)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	110	59.5
자녀와 함께 외출하기	44	23.8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	44	23.8
의사소통의 어려움	41	22.2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의 부재	20	10.8
자녀의 심리적 위축	47	25.4
학습지도	33	17.8
학교방문 및 행사참여	51	27.6
기타	8	4.3

(7) 장애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자녀양육 및 교육 비용 지원(46.5%)이 1순위로, 학습지원(15.1%)이 2순위로, 학습지원과 가족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15.7%)이 공히 3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65> 장애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홈헬퍼 서비스 확대 적용	23(12.4)	19(10.3)	7(3.8)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7(3.8)	9(4.9)	6(3.2)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86(46.5)	24(13.0)	17(9.2)
육아지원(육아보조기구, 병원 데려가기, 외출 등)	8(4.3)	18(9.7)	11(5.9)
바우처(영유아발달서비스, 치료 등) 지원 확대	9(4.9)	16(8.6)	14(7.6)
학습지원(독서지도, 숙제, 문제집 풀이 등)	6(3.2)	28(15.1)	29(15.7)
가족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9(4.9)	20(10.8)	29(15.7)
자녀 양육 및 교육 상담서비스	2(1.1)	10(5.4)	21(11.4)
보육시설(놀이방, 유치원 등) 우선 제공	6(3.2)	3(1.6)	10(5.4)
장애부모 모임의 활성화	4(2.2)	10(5.4)	12(6.5)
기타	1(0.5)	0(0.0)	0(0.0)
무응답	24(13.0)	28(15.1)	29(15.7)

3) 탈시설 경험

(1) 시설 거주 경험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9.7%, 여성 5.5%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2.1%, 30대 5.0%, 40대 6.1%, 50대 이상 2.0%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 7.0%, 뇌병변 장애인 5.0%, 시각 장애인 1.4%, 청각 장애인 0.6%, 지적/자폐성 장애인 1.1%, 기타 장애인 0.1%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10.2%, 차상위 1.6%, 기타 자격 3.4%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11.5%, 기혼 또는 동거 3.4%, 이혼, 별거, 사별 0.3%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혼의 경우 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사례의 비율이 다른 결혼상태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1.7%, 초등학교 1.0%, 중학교 2.1%, 고등학교 7.4%, 대학교 2.7%, 대학원 0.3%가 시설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2-66> 시설 거주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07(15.2)	587(83.3)	11(1.6)
성별	남성	68(9.7)	325(46.1)	9(1.3)
	여성	39(5.5)	262(37.2)	2(0.3)
연령	20대 이하	15(2.1)	117(16.6)	0(0.0)
	30대	35(5.0)	131(18.6)	4(0.6)
	40대	43(6.1)	148(21.0)	3(0.4)
	50대 이상	14(2.0)	187(26.5)	4(0.6)
	무응답	0(0.0)	4(0.6)	0(0.0)
주장애유형	지체	49(7.0)	258(36.6)	5(0.7)
	뇌병변	35(5.0)	117(16.6)	2(0.3)
	시각	10(1.4)	63(8.9)	2(0.3)
	청각	4(0.6)	92(13.6)	1(0.1)
	지적/자폐성	8(1.1)	54(7.7)	1(0.1)
	기타장애	1(0.1)	3(0.4)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72(10.2)	224(1.8)	5(0.7)
	차상위	11(1.6)	79(11.2)	0(0.0)
	기타	24(3.4)	267(37.9)	3(0.4)
	무응답	0(0.0)	17(2.4)	3(0.4)
결혼상태	미혼	81(11.5)	323(45.8)	6(0.9)
	기혼+동거	24(3.4)	199(28.2)	5(0.7)
	이혼+별거+사별	2(0.3)	65(9.2)	0(0.0)
교육수준	무학	12(1.7)	52(7.4)	1(0.1)
	초등학교	7(1.0)	42(6.0)	2(0.3)
	중학교	15(2.1)	64(9.1)	1(0.1)
	고등학교	52(7.4)	256(36.3)	5(0.7)
	대학교	19(2.7)	142(20.1)	2(0.3)
	대학원	2(0.3)	30(4.3)	0(0.0)
	무응답	0(0.0)	1(0.1)	0(0.0)

(2) 시설을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거주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점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57.9%),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미확보(56.1%), 주거문제 미해결(48.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2-67> 시설을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구분	사례수(N=107)	비율(%)
시설장 또는 시설직원의 반대	27	25.2
가족 또는 친척의 반대	20	18.7
자신감 부족	35	32.7
주거문제 미해결	52	48.6
생활비 부족	62	57.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확보	60	56.1
지역사회에 도움 받을 사람 부재	50	46.7
기타	6	5.6

(3)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은 대상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은 대상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31.8%),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의 지원(29.9%), 친구, 선배 등의 도움(2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20.6%)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14.0%)이 가장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15.0%), 시각 장애인(4.7%), 지적/자폐성 장애인(5.6%)의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의 지원이라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15.9%)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의 지원(22.4%)이 가장 높았던 반면, 차상위(4.7%)와 기타 자격(11.2%)의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의 지원(23.4%)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혼 또는 동거 상태(10.3%)과 이혼, 별거, 사별 상태(1.9%)인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3.7%), 대학교(6.5%)인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5.6%), 고등학교(17.8%)인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68>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은 대상 ※단위: 명(%)

구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 활동 보조지원	자립생활 센터 등 장애인관련 기관 지원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	친구, 선후배 등의 도움	민간단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원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함	기타	무응답
전체	6(5.6)	32(29.9)	34(31.8)	22(20.6)	5(4.7)	5(4.7)	2(1.9)	1(0.9)
성별	남성	4(3.7)	17(15.9)	22(20.6)	16(15.0)	3(2.8)	4(3.7)	1(0.9)
	여성	2(1.9)	15(14.0)	12(11.2)	6(5.6)	2(1.9)	1(0.9)	0(0.0)
주 장애 유형	지체	3(2.8)	14(13.1)	16(15.0)	9(8.4)	0(0.0)	4(3.7)	2(1.9)
	뇌병변	2(1.9)	17(15.9)	6(5.6)	7(6.5)	3(2.8)	0(0.0)	0(0.0)
	시각	1(0.9)	0(0.0)	5(4.7)	4(3.7)	0(0.0)	0(0.0)	0(0.0)
	청각	0(0.0)	0(0.0)	1(0.9)	1(0.9)	1(0.9)	1(0.9)	0(0.0)
	지적/자폐성	0(0.0)	1(0.9)	6(5.6)	0(0.0)	1(0.9)	0(0.0)	0(0.0)
	기타장애	0(0.0)	0(0.0)	0(0.0)	1(0.9)	0(0.0)	0(0.0)	0(0.0)
사회 복지 신청 자격	기초수급	4(3.7)	24(22.4)	17(15.9)	16(15.0)	5(4.7)	4(3.7)	1(0.9)
	차상위	2(1.9)	3(2.8)	5(4.7)	1(0.9)	0(0.0)	0(0.0)	0(0.0)
	기타	0(0.0)	5(4.7)	12(11.2)	5(4.7)	0(0.0)	1(0.9)	0(0.0)
결혼 상태	미혼	4(3.7)	25(23.4)	21(19.6)	20(18.7)	5(4.7)	4(3.7)	1(0.9)
	기혼+동거	2(1.9)	7(6.5)	11(10.3)	2(1.9)	0(0.0)	1(0.9)	0(0.0)
	이혼+별거+사별	0(0.0)	0(0.0)	2(1.9)	0(0.0)	0(0.0)	0(0.0)	0(0.0)
교육 수준	무학	1(0.9)	3(2.8)	4(3.7)	2(1.9)	0(0.0)	1(0.9)	0(0.0)
	초등학교	1(0.9)	2(1.9)	0(0.0)	1(0.9)	2(1.9)	0(0.0)	1(0.9)
	중학교	1(0.9)	6(5.6)	5(4.7)	1(0.9)	1(0.9)	1(0.9)	0(0.0)
	고등학교	0(0.0)	19(17.8)	17(15.9)	11(10.3)	2(1.9)	2(1.9)	0(0.0)
	대학교	3(2.8)	2(1.9)	7(6.5)	6(5.6)	0(0.0)	1(0.9)	0(0.0)
	대학원	0(0.0)	0(0.0)	1(0.9)	1(0.9)	0(0.0)	0(0.0)	0(0.0)

4) 가족으로부터의 자립 욕구

(1) 가족과 동거 여부

재가 장애인 중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례의 비율은 67.7%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30.5%)보다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8.7%, 여성 28.9%로 남녀 모두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5.9%, 30대 14.6%, 40대 17.5%, 50대 이상 19.3%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 27.9%, 뇌병변 장애인 13.8%, 청각 장애인 11.7%, 지적/자폐성 장애인 7.8%로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았으며, 기타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와 동거하지 않는 사례가 공히 0.3%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24.0%, 차상위 9.2%, 기타 자격 32.3%로 모든 자격유형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35.0%, 기혼 또는 동거 27.8%로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4.8%)과 동거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4.5%)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6.4%, 초등학교 5.3%, 중학교 7.4%, 고등학교 32.6%, 대학교 13.2%, 대학원 2.7%로 가족과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9> 가족과 동거 여부

※단위: 명(%)

구분		가족과 동거함	가족과 동거 안 함	무응답
전체		477(67.7)	215(30.5)	13(1.8)
성별	남성	273(38.7)	119(16.9)	10(1.4)
	여성	204(28.9)	96(13.6)	3(0.4)
연령	20대 이하	112(15.9)	20(2.8)	0(0.0)
	30대	103(14.6)	63(8.9)	4(0.6)
	40대	123(17.5)	67(9.5)	4(0.6)
	50대 이상	136(19.3)	64(9.1)	5(0.7)
	무응답	3(0.4)	1(0.1)	0(0.0)
주장애유형	지체	197(27.9)	108(15.3)	7(1.0)
	뇌병변	97(13.8)	54(7.7)	3(0.4)
	시각	48(6.8)	25(3.6)	2(0.3)
	청각	78(11.7)	19(2.7)	0(0.0)
	지적/자폐성	55(7.8)	7(1.0)	1(0.1)
	기타장애	2(0.3)	2(0.3)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169(24.0)	125(17.7)	7(1.0)
	차상위	65(9.2)	24(3.4)	1(0.1)
	기타	228(32.3)	63(8.9)	3(0.4)
	무응답	15(2.1)	3(0.4)	2(0.3)
결혼상태	미혼	247(35.0)	156(22.1)	7(1.0)
	기혼+동거	196(27.8)	27(3.8)	5(0.7)
	이혼+별거+사별	34(4.8)	32(4.5)	1(0.1)
교육수준	무학	45(6.4)	19(2.7)	1(0.1)
	초등학교	37(5.3)	12(1.7)	2(0.3)
	중학교	52(7.4)	27(3.8)	1(0.1)
	고등학교	230(32.6)	77(10.9)	6(0.9)
	대학교	93(13.2)	67(9.5)	3(0.4)
	대학원	19(2.7)	13(1.8)	0(0.0)
	무응답	1(0.1)	0(0.0)	0(0.0)

(2)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

재가 장애인 중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은 30.8%로 '독립 욕구가 없다'고 응답한 69.2%보다 낮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독립 욕구가 있는 남성은 19.3%, 여성은 11.5%로 남녀 모두 독립 욕구가 있는 사례의 비율이 낮았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9.6%, 30대는 9.1%, 40대는 7.8%, 50대 이상은 4.4%가 독립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 욕구를 가진 사례의 비율이 낮아졌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은 13.6%, 뇌병변 장애인은 9.2%, 시각 장애인은 2.7%, 청각 장애인은 1.9%,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3.4%가 독립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장애 유형에서 독립 욕구가 있는 쪽의 비율이 독립 욕구가 없는 쪽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9.1%, 차상위는 5.2%, 기타 자격은 15.6%가 독립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유형에서 독립 욕구가 있는 쪽의 비율이 독립 욕구가 없는 쪽보다 낮았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24.1%, 기혼 또는 동거는 5.0%, 이혼, 별거, 사별은 1.7%가 독립 욕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혼의 경우 독립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27.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른 결혼상태의 장애인에 비해 독립 욕구가 있는 사례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은 3.4%, 초등학교는 2.9%, 중학교는 1.7%, 고등학교는 13.4%, 대학교는 8.4%, 대학원은 0.8%가 '독립욕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교의 교육수준을 가진 장애인은 독립 욕구가 없는 쪽의 비율이 11.1%로 독립 욕구가 있는 사례의 비율과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였다.

<표 2-70>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 ※단위: 명(%)

구분		독립욕구 있음	독립욕구 없음
전체		147(30.8)	330(69.2)
성별	남성	92(19.3)	181(38.0)
	여성	55(11.5)	149(31.5)
연령	20대 이하	46(9.6)	66(13.8)
	30대	43(9.1)	60(12.6)
	40대	37(7.8)	86(18.0)
	50대 이상	21(4.4)	115(24.1)
	무응답	0(0.0)	3(0.6)
주장애유형	지체	65(13.6)	132(27.7)
	뇌병변	44(9.2)	53(11.1)
	시각	13(2.7)	35(7.3)
	청각	9(1.9)	69(14.5)
	지적/자폐성	16(3.4)	39(8.2)
	기타장애	0(0.0)	2(0.4)
사회복지신청자격	기초수급	43(9.0)	126(26.4)
	차상위	25(5.2)	40(8.4)
	기타	74(15.5)	154(32.3)
	무응답	5(1.1)	10(2.1)
결혼상태	미혼	115(24.1)	132(27.7)
	기혼+동거	24(5.0)	172(36.1)
	이혼+별거+사별	8(1.7)	26(5.5)
교육수준	무학	16(3.4)	29(6.1)
	초등학교	14(2.9)	23(4.8)
	중학교	8(1.7)	44(9.2)
	고등학교	64(13.4)	166(34.8)
	대학교	40(8.4)	53(11.1)
	대학원	4(0.8)	15(3.1)
	무응답	1(0.2)	0(0.0)

(3)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문제 미해결(77.6%), 생활비 마련 곤란(76.2%), 활동보조 시간 부족(6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1>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사례수(N=147, 중복응답)	비율(%)
가족 또는 친척의 반대	53	36.1
자신감 부족	62	42.2
주거문제 미해결	114	77.6
생활비 마련 곤란	112	76.2
활동보조 시간 부족	91	61.9
지역사회에 도움 받을 사람의 부재	73	49.7
기타	19	12.9

5)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

(1)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7.4%로 대부분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0%, 여성 3.4%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1.1%, 30대는 2.8%, 40대는 2.4%, 50대 이상은 1.0%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은 3.1%, 뇌병변 장애인은 3.1%, 시각 장애인은 0.6%, 지적/지체성 장애인은 0.4%가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기타 장애인 중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는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8%, 차상위는 1.0%, 기타 자격은 1.6%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5.4%, 기혼 및 동거는 1.8%,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0.1%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0.7%, 초등학교 0.4%, 중학교 1.0%, 고등학교 3.8%, 대학교 1.1%, 대학원 0.3%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52(7.4)	639(90.6)	14(2.0)
성별	남성	28(4.0)	364(51.6)	10(1.4)
	여성	24(3.4)	275(39.0)	4(0.6)
연령	20대 이하	8(1.1)	124(17.6)	0(0.0)
	30대	20(2.8)	146(20.7)	4(0.6)
	40대	17(2.4)	173(24.5)	4(0.6)
	50대 이상	7(1.0)	192(27.2)	6(0.9)
	무응답	0(0.0)	4(0.6)	0(0.0)
주장애유형	지체	22(3.1)	284(40.3)	6(0.9)
	뇌병변	22(3.1)	128(18.2)	4(0.6)
	시각	4(0.6)	69(9.8)	2(0.3)
	청각	1(0.1)	95(13.5)	1(0.1)
	지적/자폐성	3(0.4)	59(8.4)	1(0.1)
	기타장애	0(0.0)	4(0.6)	0(0.0)
사회복지신청자격	기초수급	34(4.8)	260(36.9)	7(1.0)
	차상위	7(1.0)	83(1.8)	0(0.0)
	기타	11(1.6)	278(39.4)	5(0.7)
	무응답	0(0.0)	18(2.60)	2(0.3)
결혼상태	미혼	38(5.4)	365(51.8)	7(1.0)
	기혼+동거	13(1.8)	208(29.5)	7(1.0)
	이혼+별거+사별	1(0.1)	66(9.4)	0(0.0)
교육수준	무학	5(0.7)	59(8.4)	1(0.1)
	초등학교	3(0.4)	46(6.5)	2(0.3)
	중학교	7(1.0)	73(10.4)	0(0.0)
	고등학교	27(3.8)	277(39.30)	9(1.3)
	대학교	8(1.1)	153(21.7)	2(0.3)
	대학원	2(0.3)	30(4.3)	0(0.0)
	무응답	0(0.0)	1(0.1)	0(0.0)

(2) 전환서비스가 지역사회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재가 장애인 중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환서비스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48.1%가 ‘매우 도움 됨’, 36.5%가 ‘조금 도움됨’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전환서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8.9%가 ‘매우 도움 됨’, 17.3%가 ‘조금 도움 됨’으로 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매우 도움 됨’, ‘조금 도움 됨’이 각각 19.2%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은 26.9%, 뇌병변 장애인은 21.2%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시각 장애인은 5.8%, 청각장애인은 1.9%,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5.8%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6.5%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는 9.6%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타 ‘자격은 매우 도움 됨’과 ‘조금 도움 됨’으로 응답한 사례가 7.7%로 공히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은 5.8%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는 3.9%, 중학교는 5.8%, 고등학교는 23.1%, 대학교는 9.6%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학원은 ‘매우 도움 됨’과 ‘조금 도움 됨’이 1.9%로 공히 가장 높았다.

<표 2-73> 전환서비스가 지역사회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전체		25 (48.1)	19 (36.5)	4 (7.7)	4 (7.7)
성별	남성	15 (28.9)	9 (17.3)	4 (7.7)	0 (0.0)
	여성	10 (19.2)	10 (19.2)	0 (0.0)	4 (7.7)
주장애유형	지체	14 (26.9)	4 (7.7)	2 (3.9)	2 (3.9)
	뇌병변	11 (21.2)	8 (15.4)	1 (1.9)	2 (3.9)
	시각	0 (0.0)	3 (5.8)	1 (1.9)	0 (0.0)
	청각	0 (0.0)	1 (1.9)	0 (0.0)	0 (0.0)
	지적/자폐성	0 (0.0)	3 (5.8)	0 (0.0)	0 (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19 (36.5)	10 (19.2)	3 (5.8)	2 (3.9)
	차상위	2 (3.9)	5 (9.6)	0 (0.0)	0 (0.0)
	기타	4 (7.7)	4 (7.7)	1 (1.9)	2 (3.9)
교육수준	무학	2 (3.9)	3 (5.8)	0 (0.0)	0 (0.0)
	초등학교	2 (3.9)	1 (1.9)	0 (0.0)	0 (0.0)
	중학교	3 (5.8)	1 (1.9)	3 (5.8)	0 (0.0)
	고등학교	12 (23.1)	10 (19.2)	1 (1.9)	4 (7.7)
	대학교	5 (9.6)	3 (5.8)	0 (0.0)	0 (0.0)
	대학원	1 (1.9)	1 (1.9)	0 (0.0)	0 (0.0)

(3) 전환서비스 탈락 경험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서비스 이용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재가 장애인 중 2.4%가 탈락 경험이 있었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1.8%, 여성은 0.6%가 탈락 경험이 있었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0.4%, 30대는 1.1%, 40대는 0.4%, 50대 이상은 0.4%가 탈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은 1.4%, 뇌병변 장애인은 0.1%,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0.6%가 탈락을 경험하였고, 청각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은 탈락 경험이 없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7%, 차상위는 0.1%, 기타 자격은 1.4%가 탈락을 경험하였다.

<표 2-74> 전환서비스 탈락 경험

*단위: 명(%)

구분		탈락경험 있음	탈락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7(2.4)	675(95.7)	13(1.8)
성별	남성	13(1.8)	380(53.9)	9(1.3)
	여성	4(0.6)	295(41.8)	4(0.6)
연령	20대 이하	3(0.4)	129(18.3)	0(0.0)
	30대	8(1.1)	158(22.4)	4(0.6)
	40대	3(0.4)	188(26.7)	3(0.4)
	50대 이상	3(0.4)	196(27.8)	6(0.9)
	무응답	0(0.0)	4(0.6)	0(0.0)
주장애유형	지체	10(1.4)	296(42.0)	6(0.86)
	뇌병변	1(0.1)	150(21.3)	3(0.4)
	시각	2(0.3)	71(10.1)	2(0.3)
	청각	0(0.0)	96(13.6)	1(0.1)
	지적/자폐성	4(0.6)	58(8.2)	1(0.1)
	기타장애	0(0.0)	4(0.6)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5(0.7)	290(41.1)	6(0.9)
	차상위	1(0.1)	89(12.6)	0(0.0)
	기타	10(1.4)	279(39.6)	5(0.7)
	무응답	1(0.1)	17(2.4)	2(0.3)

(4) 향후 전환서비스 이용 의향

재가 장애인 중 전환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전환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7%로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23.5%)보다 많았다.

<표 2-75> 향후 전환서비스 이용 의향

구분	빈도(N)	비율(%)
이용의향 있음	11	64.7
이용의향 없음	4	23.5
무응답	2	11.8
합계	17	100.0

6) 자립에 대한 욕구

(1) 자립에 대한 욕구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 욕구를 살펴보면, 자립을 원하는 응답자는 50.3%, 자립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는 35.1%로 자립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자립생활 의향이 있는 경우가 남성은 26.0%, 여성은 24.3%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2.7%, 30대는 16.8%, 50대 이상은 4.9%로 자립 의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40대의 경우 자립을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0%로 같았다.

주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은 11.4%, 뇌병변 장애인은 7.6%, 시각 장애인은 9.2%로 자립 의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청각 장애인은 2.2%,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22.7%로 자립을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0.5%, 차상위 자격은 2.2%로 자립 의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기타 자격의 경우 자립을 원치 않는 경우가 10.3%로 더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무학은 4.3%,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32.4%, 대학교는 7.0%, 대학원은 0.5%로 자립 의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자립 의향이 없는 경우가 4.3%로 더 많았다.

<표 2-76> 자립에 대한 욕구

※단위: 명(%)

구분		자립생활 의향 있음	자립생활 의향 없음	무응답
전체		93(50.3)	65(35.1)	27(14.6)
성별	남성	48(26.0)	37(20.0)	17(9.2)
	여성	45(24.3)	28(15.1)	10(5.4)
연령	20대 이하	42(22.7)	17(9.2)	2(1.1)
	30대	31(16.8)	29(15.7)	13(7.0)
	40대	11(6.0)	11(6.0)	7(3.8)
	50대 이상	9(4.9)	8(4.3)	5(2.7)
주장애 유형	지체	21(11.4)	16(8.7)	8(4.3)
	뇌병변	14(7.6)	1(0.5)	10(5.4)
	시각	17(9.2)	2(1.1)	2(1.1)
	청각	0(0.0)	4(2.2)	2(1.1)
	지적/자폐성	41(22.2)	42(22.7)	4(2.2)
	기타장애	0(0.0)	0(0.0)	1(0.5)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75(40.5)	44(23.8)	17(9.2)
	차상위	4(2.2)	2(1.1)	1(0.5)
	기타	13(7.0)	19(10.3)	8(4.3)
	무응답	1(0.5)	0(0.0)	1(0.5)
교육수준	무학	8(4.3)	5(2.7)	2(1.1)
	초등학교	5(2.7)	8(4.3)	5(2.7)
	중학교	6(3.2)	2(1.1)	4(2.2)
	고등학교	60(32.4)	45(24.3)	11(6.0)
	대학교	13(7.0)	5(2.7)	3(1.6)
	대학원	1(0.5)	0(0.0)	1(0.5)
	무응답	0(0.0)	0(0.0)	1(0.5)

(2)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영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살 집을 1순위(76.3%)로 생활비 보조를 2순위(41.9%),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3순위(36.6%)로 꼽았다.

<표 2-77>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살 집	71 (76.3)	6 (6.5)	3 (3.2)
생활비 보조	7 (7.5)	39 (41.9)	16 (17.2)
일자리	4 (4.3)	14 (15.1)	13 (14.0)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8 (8.6)	16 (17.2)	34 (36.6)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 (1.1)	1 (1.1)	3 (3.2)
보건의료서비스, 재활치료	0 (0.0)	4 (4.3)	3 (3.2)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0 (0.0)	1 (1.1)	0 (0.0)
여가, 취미, 문화생활 지원	0 (0.0)	1 (1.1)	3 (3.2)
외출할 때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0 (0.0)	3 (3.2)	3 (3.2)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0 (0.0)	1 (1.1)	2 (2.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2 (2.2)	1 (1.1)	4 (4.3)
가족의 지원 및 지지	0 (0.0)	0 (0.0)	1 (1.1)
퇴소 시 자립생활지원금 지원	0 (0.0)	6 (6.5)	7 (7.5)
민간단체 및 지역단체의 지원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1.1)

(3) 자립하는데 겪는 어려움

시설거주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주거문제 미해결(63.8%), 생활비 부족(55.1%), 자신감 부족(4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8> 자립하는데 겪는 어려움

구분	사례수(중복응답)	비율(%)
시설장 또는 시설직원의 반대	12	6.5
가족 또는 친척의 반대	33	17.8
자신감 부족	84	45.4
주거문제 미해결	118	63.8
생활비 부족	102	55.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제공	77	41.6
지역사회에 도움 받을 사람 부재	61	33.0
기타(자립의지부족 등)	3	1.9

7) 전환서비스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환서비스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환서비스 경험이 있는 78명의 장애인 중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62.8%,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34.6%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전환서비스가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례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각각 전체 응답자 중 24.4%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38.5%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26.9%로 가장 많았고, 30대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20.5%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각각 7.7%로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조금 도움이 된다’(10.3%), ‘매우 도움이 된다’(7.7%) 순으로 많았다.

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경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15.4%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 장애인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16.7%로 가장 많았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33.3%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자격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각각 55.1%, 2.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격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와 ‘조금 도움이 된다’가 각각 3.9%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60.3%로 가장 많았고, 기혼 또는 동거의 경우도 ‘매우 도움이 된다’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조금 도움이 된다’가 2.6%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인 경우와 초등학교인 경우 ‘조금 도움이 된다’가 각각 6.4%, 9.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가 각각 6.4%, 44.9%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인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와 ‘조금 도움이 된다’의 경우가 공히 2.6%로 가장 많았다.

<표 2-79> 전환서비스 경험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도움됨	조금 도움됨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전체		49(62.8)	27(34.6)	1(1.3)	1(1.3)
성별	남성	19(24.4)	19(24.4)	0(0.0)	1(1.3)
	여성	30(38.5)	8(10.3)	1(1.3)	0(0.0)
연령	20대 이하	21(26.9)	6(7.7)	0(0.0)	0(0.0)
	30대	16(20.5)	7(9.0)	0(0.0)	0(0.0)
	40대	6(7.7)	6(7.7)	1(1.3)	1(1.3)
	50대 이상	6(7.7)	8(10.3)	0(0.0)	0(0.0)
주장애유형	지체	10(12.8)	12(15.4)	0(0.0)	1(1.3)
	뇌병변	13(16.7)	2(2.6)	1(1.3)	0(0.0)
	시각	0(0.0)	1(1.3)	0(0.0)	0(0.0)
	지적/자폐성	26(33.3)	12(15.4)	0(0.0)	0(0.0)
사회복지 신청자격	기초수급	43(55.1)	23(29.5)	1(1.3)	1(1.3)
	차상위	2(2.6)	1(1.3)	0(0.0)	0(0.0)
	기타	3(3.9)	3(3.9)	0(0.0)	0(0.0)
	무응답	1(1.3)	0(0.0)	0(0.0)	0(0.0)
결혼상태	미혼	47(60.3)	24(30.8)	1(1.3)	1(1.3)
	기혼+동거	2(2.6)	1(1.3)	0(0.0)	0(0.0)
	이혼+별거+사별	0(0.0)	2(2.6)	0(0.0)	0(0.0)
교육수준	무학	1(1.3)	5(6.4)	0(0.0)	0(0.0)
	초등학교	6(7.7)	7(9.0)	0(0.0)	0(0.0)
	중학교	5(6.4)	1(1.3)	1(1.3)	0(0.0)
	고등학교	35(44.9)	12(15.4)	0(0.0)	1(1.3)
	대학교	2(2.6)	2(2.6)	0(0.0)	0(0.0)

6. 1차년도와의 비교

1) 조사설계 비교

(1) 조사설계

2011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통해 수행된 1차조사(이하 1차 조사)와 2014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 2차조사)의 조사 설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0> 조사설계 비교

구분	세 부 내 용	
	1차 조사(2011)	2차 조사(2014)
모집단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 중 만 18~64세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장애인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 중 19세~64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표본크기	목표 표본 수 : 1,000 유효 표본 수 : 801	목표 표본 수 : 1,000 유효 표본 수 : 890
표본추출방법	장애 주거형태, 유형별, 등급별 비례할당 추출	연령별, 주거형태, 장애유형별 비례할당 추출
조사 방법	조사원 방문에 의한 1:1 대인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1:1 면접조사 (시각장애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화조사 실시)
조사 기간	2011. 10. 06 ~ 2011. 11. 14	2014. 7. 8 ~ 2014. 10. 18

(2) 설문지 구성

1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조사의 설문지는 일반적특성, 주거, 소득보장, 고용, 일상생활, 문화여가, 의료, 교육, 양육, 기타영역으로 구분되어있었으나, 2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의 설문지는 문화여가, 의료, 교육, 양육영역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영역의 문항 중 교육욕구 문항은 고용영역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문항은 일상생활영역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항은 기타영역으로 이동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2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과 ‘전환서비스’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81> 설문지 구성 비교

영역	문항수		비고
	1차 조사(2011)	2차 조사(2014)	
일반적특성	13개	10개	일부 용어 개정
소득보장	4개	5개	일부 문항 개정
고용	4개	7개	일부 문항 개정
주거	5개	6개	일부 문항 개정
일상생활	6개	8개	지역사회환경 및 전환서비스 관련 문항 추가
문화	3개	-	영역 삭제
의료	5개	-	주요문항만 일상생활영역으로 이동
교육	2개	-	취업과 관련된 문항만을 고용 영역으로 이동하고 영역 자체는 삭제
양육	5개	-	기타영역으로 이동
기타	9개	18개	
계	56개	54개	

(3) 응답자 특성 비교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최종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형태, 성별, 연령, 주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 결혼상태, 교육수준은 응답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주장애등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가구원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거주형태는 재가장애인이 시설장애인에 비해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주장애유형은 두 조사 모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1차에서는 지체/뇌병변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발생시기는 선천, 후천장애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미혼이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로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장애등급은 1차에서 2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차에서는 1급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은 1차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50%에 가까운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2차에서는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이 38%와 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는 1차 조사의 응답자는 3명, 2차 조사의 응답자는 1명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82> 응답자 특성 비교

구분		응답 비율(%)	
		1차 조사(2011)	2차 조사(2014)
거주형태	재가	71.4	79.2
	시설(법정/비법정)	28.6	20.8
성별	남	58.6	56.6
	여	41.4	43.4
연령	20대 미만	19.2	21.7
	30대	22.8	27.3
	40대	23.6	25.1
	50대	24.0	19.3
	60대 이상	10.4	6.2
	무응답	1.0	0.4
주장애유형	지체	62.8	40.1
	뇌병변		20.1
	시각	10.9	10.8
	청각	11.0	11.6
	지적/자폐성	15.4	16.9
	기타 장애	-	0.6
주장애등급	1급	33.7	66.0
	2급	62.9	23.5
	3급	3.4	9.0
	4급 이상	-	1.0
	무응답	-	0.6
장애발생시기	선천	42.2	46.6
	후천	57.8	52.5
	무응답	-	0.9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기초수급	38.7	49.1
	차상위	35.1	10.9
	기타	26.2	37.5
	무응답	-	2.5
결혼상태	미혼	49.1	65.8
	기혼/동거	42.3	26.2
	이혼/별거/사별	8.6	8.0
가구원수	1명	18.7	31.9
	2명	13.2	20.8
	3명	27.1	19.7
	4명	19.9	18.7
	5명 이상	5.2	8.3
	무응답	15.9	0.7
교육수준	무학	15.5	9.0
	초등학교	69.0	7.8
	중학교		10.3
	고등학교		48.2
	대학교	15.1	20.7
	대학원		3.8
무응답	0.4	0.2	

2) 조사운영

1차조사와 2차조사의 조사운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1차조사는 조사전문업체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선발한 조사원들이 실사를 담당하였으나, 2차조사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및 협의회와 가입 센터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원 및 응답자 선정 등을 포함한 조사전반에 대한 업무를 함께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2차조사에서는 조사원 관리, 조사진행 상황 점검, 조사지 1차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조사코디네이터는 물론 실사를 담당한 조사원의 대다수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자들이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특성상 센터를 통해 추천되어 조사원 교육을 받은 29명의 조사원 중 60%에 해당하는 17명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였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및 시설장애인조사를 담당한 조사원들 모두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련자들이었다.

이러한 조사인력 구성으로 인해 2차조사는 첫째, 조사원과 응답자간 라포 형성이 용이했다. 둘째, 조사원들이 조사 종료 후에도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나 정책간담회 참석은 물론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조사운영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언해주는 등, 대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조사업체의 조사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중증장애인당사자 조사원의 경우 응답자 거주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진행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1차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한가지 요인이 되기도 했다.

3) 욕구현황

2011년 1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조사에서 나타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욕구는 1순위 소득, 2순위 주거, 3순위 일상생활지원의 순서로 나타났고 2014년 2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서는 1순위 소득, 2순위 일상생활지원, 3순위 주거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응답비율이 36.2%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54.0%로 비율이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순위와 3순위의 일상생활지원과 주거보장 항목은 1차와 2차에서 순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소득	36.2	54.0
고용	10.9	9.4
주거	20.2	10.5
일상생활(활동지원, 보조기구 등)	11.9	16.3
의료	5.5	3.5
평생교육	5.9	2.6
여가문화	4.0	1.4
양육	2.9	1.0
기타	-	0.7
무응답	2.6	0.6
합계	100	100

각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1,2차 모두 공통적으로 장애연금 상향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1차 조사에서는 주거비 지원 확대, 2차 조사에서는 의료비 지원 확대가 차순위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2순위는 1차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2차 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확대로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영역에서 일상생활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서 1차 조사에서는 항목을 14개로 질문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6가지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줄어든 항목들은 대부분 장애인 생활교육기관 확충 및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1순위는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 2순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으로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 1순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2순위는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로 응답하였다.

<표 2-84> 영역별 필요 서비스 순위 비교

영역	1차조사(2011)		2차조사(2014)	
	항목	%	항목	%
소득	(1순위) 장애연금 상향 지원	31.0	장애연금 상향 지원	23.6
	(2순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확대	22.1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18.2
	(3순위) 비수급자에게도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	18.6	비수급자에게도 일정부분 생계비 지원	12.2
주거	(1순위)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	18.0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	20.3
	(2순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16.8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확대	18.7
	(3순위)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제공확대	14.7	장애인 맞춤형 아파트 분양	13.6
일상생활	(1순위)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	14.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25.3
	(2순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13.2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	19.6
	(3순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10.6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9.0



제3장 | 정책제언



정책제언

1. 서울시 자립생활정책의 방향

1) 현실을 반영한 취업지원 정책

조사대상의 거의 반수에 이르는 43.7%에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20만 원 미만이었으며 61.9%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생활비도 상당수가 주로 기초생활보장급여(37.2%)나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21.6%)에 의해 조달하고 있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는 24.3%에 그쳤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절대적인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응답자의 과반수인 51.5%가 임금근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특히 재가장애인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54.3%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기관의 알선(29.7%)보다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35.6%)에 의해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알선의 비율이 높지만, 차상위와 기타 자격의 경우 친구 등 지인의 소개에 의한 취업비율이 높아서 수급권자 이외의 그룹에 대한 취업알선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게(79.9%) 나타나 일단 취업을 한 중증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직장생활 불만족 사례의 절대다수(80.0%)를 임금수준이 차지하여 일정 수준의 임금이 확보된 취업처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48.8%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71.7%)로 나타났고 ‘수급권 탈락(8.9%)’이나 ‘적합직종이 없음(8.3%)’은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나 장애 정도에 맞는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교육 희망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과반수인 53.4%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원하지 않는 이유로 상당수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47.2%) 원하는 교육내

용이 없다(13.7%)고 응답하여 현행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특히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특히 비수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더 적극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행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근로가 어려워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임금근로 이외의 소득보장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에 따라 중점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에서는 소득, 주거, 일상생활, 고용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동에 장애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화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등 기타 욕구가 고용이나 일상생활 지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에겐 고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할 영역에 대한 자유의견에서도 나타났다. 이동이 힘든 지체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영역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근로 경험이 많은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은 고용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

특히 평생교육이나 여가문화, 양육 등 기타영역에서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3)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다수(85.5%)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48.5%), 그 다음으로는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단체의 지원(38.0%), 친구와 선후배 등의 도움(21.1%)이었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활동보조지원(2.9%)이나 민간단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원(2.3%)을 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재가장애인 107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은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기관이나 사람은 가족 또는 친인척(31.8%)과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관련 기관(29.9%)이었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활동보조지원(5.6%)이나 민간단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지원(4.7%)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가족이나 친지 등 1차 집단을 통한 지원 이외에 지자체나 지역공동체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역공동체 지원의 활성화 필요성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응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지역사회 내 이동편의성(29.0%) 다음으로, 편의시설 접근성이나 안전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장애에 대한 인식(22.4%)’이 선택되어서 물리적인 환경만큼이나 기존 지역주민들이 중증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4) 전환서비스 확충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2명의 재가장애인의 대다수가 전환서비스가 지역사회 자립에 도움을 주었다(매우 도움됨 48.1%, 조금 도움됨 36.5%)고 응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서의 전환서비스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시설장애인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 전환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78명의 중증장애인 중 62.8%가 ‘매우 도움됨’ 34.6%가 ‘조금 도움됨’이라고 대답했고, 별로 도움이 안되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명(1.3%) 뿐이었다.

전환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은 탈시설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107명의 재가장애인들에게 질문한 결과 생활비 부족(57.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확보(56.1%), 주거문제 미해결(48.6%)

등이 가장 힘들었던 점들로 지적되었다.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등의 전환서비스 시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5) 탈시설 정책의 방향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를 물어보았을 때 50.3%에 해당하는 93명은 '자립생활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반수는 '자립생활 의향이 없음(35.1%)'또는 무응답(14.6%)이었다. 2011년 수행된 1차조사에서는 55.5%가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수만이 자립생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요건인 살 집이나 생활비,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을 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들어 시설의 환경이 개선되고 많은 시설이 그룹홈 등 소규모의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만족도(만족 41.2%, 매우 만족 17.8%)가 재가장애인(만족 52.1%, 매우 만족 9.6%)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탈시설과 관련하여 자립생활 또는 지역사회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지적된 장애연금 상향이나 비수급자를 위한 생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국가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고용 지원이나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에서도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행과 같은 중앙-지방 복지재정 분담 구

조에서는 소요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감당하거나 지방정부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이 복지건강실로 대표되는 서울시 내 일부 부서의 일로 치부되는 현상도 타파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지역사회 정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 교통, 의료, 고용, 문화, 보육, 교육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정책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의 역점사업이자 민선6기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또는 복지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이 행복한 마을이라야 노인도 어린이도 이주민도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개선방안

1)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 종료 후 향후 조사를 위한 개선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이번 조사에 협조해 준 조사협조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수화통역사와 조사원이었다. 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조사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시기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5명이 8월이었고, 7월, 9월이 각각 2개소, 10월에 조사한 기관이 1개소였다.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나 2명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폭염기와 휴가철인 8월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업진행 및 평가 이후 시점인 9~10월 이후와 폭염과 휴가철을 피해 4~6월 정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 조사방식

조사형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8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형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객관성을 위해 2인 1조로 조사원을 파견하거나, 장애유형(지적장애 등)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3) 설문지

의견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내용과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6명은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나 4명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는 장애의 특성(발달장애인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주상황(시설장애인 등)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은 문항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설문지 자체가 너무 어렵고 길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지의 내용과 유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각각의 장애 유형과 거주형태에 적합한 설문지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그림 등 조사보조 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그룹홈을 포함한 거주시설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도 각각의 설문영역에서 지원이나 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조사원

조사원이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에 대해서는 9명이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증장애인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공감대에 기초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조사원들이 보완할 점으로는 좀 더 세부적이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있었다면 더 원활한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5) 응답자

장애유형별로 표집이 적절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8명이 적절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을 통해 응답자를 섭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표집상의 개선점으로는 장애등급을 고려한 표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장애인의 비율이 30% 정도로 더 높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6) 향후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

향후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현행과 같은 3년 주기의 조사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0명 전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 준 8명 모두가 장애인당사자의 조사원 참여방식을 선호했다.

기타 개선의견으로는 ①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방식 활용 ② 시설거주장애인용 설문문항을 보다 시설거주자들에게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 ③ 거주시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답은 문항 제외 ④ 장애인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할 기회의 지속 ⑤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담당 교사 등이 보조자로 참여 ⑥ 좀 더 편안한 환경(찾집이나 거주지 등)에서 조사 ⑦ 응답자 선정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 ⑧ 질문문항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운 점 개선 ⑨ 조사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응답자가 힘들어하는 점 개선 ⑩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로 활용 ⑪ 조사결과가 잘 공유되고 서울시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조사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의견
조사시기의 적절성	8	2	9~10월(상반기 사업진행 및 평가 이후) 4~6월(폭염과 휴가철이 시작되기 이전)
조사형태의 적절성	8	2	조사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인1조로 파견 장애유형(지적 등)에 따라 보호자 동반 필요
설문지의 적절성	6	4	거주유형별 설문지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돼야 함 장애유형별 설문지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함
조사원 조사수행의 효과성	9	1	좀 더 세부적이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필요
응답자 섭외의 적절성	9	1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표집해야 함 시설장애인 비율을 30% 정도로 높였으면 함
조사주기의 적절성	10(100%)	-	* 응답자 전원이 현행 3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봄

2) 개선을 위한 제언¹⁾

(1) 조사협력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이번 조사는 서울시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및 협의회와 회원 센터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협회 및 서울시 거주시설, 서울시농아인협회와 각 지역 수화통역센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와 서울시 그룹홈,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등 많은 협회 및 단체들과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앞으로 이 조사가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연합회나 협의회와 같은 협회들은 물론, 조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센터와 시설들 각각에 대한 더 직접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의 기획 및 준비 단계부터 센터 실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한다면 응답자 섭외 및 조사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지 개선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설문지의 내용이나 서술방식이 일반적인 장애인의 이해 수준이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설문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번 설문지는 장애 및 자립생활에 대해 상당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는 활동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정도로 어렵게 구성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언어 및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응답자들이나 글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은 응답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시설거주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문항이 너무 많아서 특정 장애유형에 치우친 설문지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보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유형별, 거주형태별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과 연구인력이 확보되고 전문가와 현장실무자들이 포함한 개발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부분은 2014년 12월 10일에 자문위원, 조사코디네이터, 조사원, 조사협조시설 담당자와 서울시 및 재단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3)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조사 수행

이번 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조사코디네이터와 조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한 중증장애인 조사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앞으로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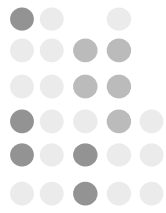
조사형태도 기존 조사형태를 답습하여 대규모 설문조사 형태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 욕구진단을 통한 자립생활 희망자 조사, 이미 자립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조사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조사의 초점에 맞추어(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자립생활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포괄할 것인지 등)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일년 안에, 현재 수준의 예산만을 가지고, 조사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유형 및 거주형태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실제 조사를 진행한 후 분석하여 정책제언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년 주기의 조사이므로 1년차는 조사도구 개발을 포함한 조사 준비, 2년차는 조사 수행, 3년차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로 3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2015년)부터 중증장애인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적인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조사문항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작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3), 「2013 장애인 통계」. 성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성희·권선진·강동욱·노승현·이민경·이송희(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황주희·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정희경(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연·김세림·이진석(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34집. pp.109-133.
- 김정득·이영미·김동기·주은주·이리나(2013),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 조사」. 대전: 대전복지재단.
- 김정화·유경민·이진숙·이정형(2010),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혜정·박현주(20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2013), 「장애인 복지 맵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자원 정보북 version1. 양수정·최종철·류정진·김호진(2011)」. 성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윤재영(2012),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센터”. 김용득 편(2012),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EM커뮤니티.
- 이익섭·최정아·이동영(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pp.49-81.
- 이준우(2012),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 과주: 나남.
- 정종화·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과주: 양서원.
- 조흥식·강상경·김용득·김진우·박희찬·윤민석·이준영(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Patricia L. Sitlington·Gary M. Clark·Oliver P. Kolstoe(2000),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성인생활로의 전환.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박승희·박현숙·박희찬 옮김(2006).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부록 |



부록. 설문지

권역	자치구	조사표 번호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나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니,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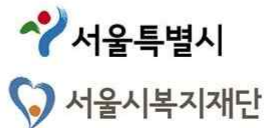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김지영 선임연구위원(02-2011-0570, jkim@welfare.seoul.kr)

김세림 연구원(02-2011-0562, serim0618@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중로구 송월길 52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014. 7월



응답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input type="checkbox"/> ② 보호자(관계: _____)		
최종 조사 일시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조사 장소			
조사원	(인)	조사 코디네이터	(인)

*** 응답자 특성**

1)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재가 ※ 시설(법정, 비법정 포함)이 아닌 집에서 거주 <input type="checkbox"/> ② 법정시설 ※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③ 비법정시설 ※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2)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3) 연령	만 [_____]세
4) 주장애유형/등급	[_____ / _____]급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
5) 중복지장애유형/등급	[_____ / _____]급
6) 장애 발생시기	<input type="checkbox"/> ① 선천성장애 <input type="checkbox"/> ② 중도장애(발생시기 : 만 _____ 세)
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① 국민기초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② 차상위 계층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8)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 <input type="checkbox"/> ③ 동거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input type="checkbox"/> ⑤ 별거 <input type="checkbox"/> ⑥ 사별
9) 가족구성원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구성원 수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①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③ 부 <input type="checkbox"/> ④ 모 <input type="checkbox"/> ⑤ 조부 <input type="checkbox"/> ⑥ 조모 <input type="checkbox"/> ⑦ 형제·자매 [_____]명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중복 시 모두 표시
10)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원 ※ ①을 제외한, ②~⑥의 경우 재학/중퇴/휴학/졸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I. 소득보장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2. 귀하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③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④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⑤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3. 귀하가 필요하신 용돈이나 생활비 등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 근로소득 ②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③ 기초생활보장수급비 ④ 배우자의 근로소득
 ⑤ 집세, 저축이자 등 기타 소득 ⑥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친인척의 지원
 ⑦ 기타 (_____)
4. 귀하는 현재 부채가 있으십니까? ()
- 기혼자는 배우자 부채 포함, 미혼자는 본인 부채만 해당
- ① 예 ② 아니오 → 5번으로 가십시오.
- ↓
- 4-1. 현재 가지고 계신 부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⑥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⑦ 3000만원 이상
- ↓
- 4-2. 귀하가 부채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응답 ()
- ① 생계비(식비, 생필품, 공공요금)등 ② 주택월세비용
 ③ 주택임대 보증금 ④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⑤ 의료비용 ⑥ 교통비용(콜택시 등)
 ⑦ 통신비용 ⑧ 장애보조기구 유지비 및 수리비
 ⑨ 장애보조기구 구입비 ⑩ 기타 (_____)

3-1. 귀하는 어떠한 직장을 원하십니까? → 4번으로 가십시오.

- ① 사회복지관련 시설
-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③ 민간회사 또는 소규모사업체
- ④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2.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4번으로 가십시오.

- 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 ② 내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 ③ 원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서
- ④ 수급권자에서 탈락할까봐
- ⑤ 단기일자리로 지속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없어서
- ⑥ 활동보조인이나 근로지원인과 같은 지원이 부족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일 자리 (취업) 지원 내용	순위
①	취업 시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의 수급권을 계속 유지	
②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③	서울시 및 산하기관 일자리 확대	
④	취업관련 기관의 일자리 연계(알선)	
⑤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⑥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⑦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⑧	취업 시 사업장 환경·시설정비 지원금 제공	
⑨	자녀를 위한 위탁보육시설 확대	
⑩	취업 후 지속적인 상담지원	
⑪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⑫	일자리 정보 제공	
⑬	장애인 취업 상담 지원 확대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귀하는 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좀 더 받고 싶으십니까? ()

- ① 예 → 5-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6으로 가십시오.

5-1. 원하는 유형의 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 순으로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번호	이유	순위
①	자격증 취득 및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②	직업생활적응교육(면접 기술, 대인관계 훈련, 출퇴근 교육 등)	
③	창업교육	
④	일반 취업관련 프로그램(어학, 시험준비 등)	
⑤	상급학교 취학	
⑥	기타 (구체적: _____)	

5-2.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

- ① 출석교육 ② 사이버교육(온라인 교육)

6. 교육을 더 받고 싶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활동보조인 등의 보조인력 지원이 부족해서
 ② 장애에 맞는 보조기구 지원이 부족해서
 ③ 교육을 받아도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④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내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이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귀하가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지원 내용	순위
①	교육기관 내 장애인 보조인력 확대 배치	
②	중증장애인 교육비 지원 확대	
③	문화 여가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④	자립생활훈련 교육 확대	
⑤	(중도장애인을 위한)장애 적응 교육 확대	
⑥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	
⑦	학습관련 보조기구 개발 및 확대 보급	
⑧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I. 주거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⑥ 주택 이외의 거주(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

2-1.(공공주택 거주자만 해당)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공공분양 ② 공공임대 ③ 장기전세 ④ 국민임대 ⑤ 영구임대

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
 - ③ 만족한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 → 6번으로 가십시오.

4. 귀하가 현재주거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든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이유	예	아니오
①	사생활보장이 안 되어서		
②	이동 및 교통여건 등 주변 환경이 불편해서		
③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④	전월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⑤	채광 및 환풍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⑥	집이나 방의 구조가 불편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만약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수리하고 싶은 곳부터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수리를 원하는 구역	순위	수리를 원하는 항목(구체적으로)
①	부엌		
②	화장실		
③	현관		
④	방안		
⑤	바닥 및 천장		
⑥	출입문 및 방문		
⑦	냉·난방 시설		
⑧	채광 및 환풍		
⑨	출입구 및 계단		
⑩	기타		

6. 귀하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지원 내용	순위
①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	
②	장애인 맞춤형 아파트 분양	
③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확대	
④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⑤	중증장애인을 위한 월세 지원	
⑥	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⑦	전월세 계약 및 거주 기간 내 발생하는 집주인과의 마찰 중재	
⑧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임대주택 제공	
⑨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	
⑩	기타(_____)	

4-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바로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도움을 주로 받았습니까? ※ **중복응답** ()

-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 활동지원
- ②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단체 지원
- ③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도움
- ④ 친구, 선후배 등의 도움
- ⑤ 민간단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지원(단체명 _____)
- ⑥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셨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6. 귀하는 최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7번으로 가십시오.

6-1.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이유	예	아니오
①	없어서		
②	병원 등에 예약이 힘들어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장애에 맞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⑤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이 힘들어서		
⑥	나의 장애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귀하가 지난 1달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나 보조가 '가장 필요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가능**)

- ① 신변처리 () ② 보행 및 외출 () ③ 청소, 빨래 등 가사 ()
- ④ 육아 () ⑤ 약 먹기, 병간호 등 건강관리 ()
- ⑥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 ⑦ 교육(훈련) 참여 ()
- ⑧ 여행,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 () ⑨ 의사소통(말벗 포함) ()
- ⑩ 근로(사무)지원 () ⑪ 전화 및 인터넷 사용 ()
- ⑫ 법률서비스 () ⑬ 행정민원서비스 ()
- ⑭ 주말 야외활동 ()
- ⑮ 기타 (구체적: _____) ⑯ 필요 없음

8. 아래 각각의 영역에서 **귀하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부터 각 3개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1. 공공시설 이용 관련	순위
①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실시 확대	
②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택시 공급 확충	
③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지하철 및 버스 확충	
④	여가문화시설(극장, 연극공연장) 접근성 향상	
⑤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⑥	관공서 접근성 향상	
⑦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안내원, 수화통역사 등) 배치	
⑧	장애인을 위한 설비(전용 컴퓨터, 점자문서, 음성파일 등) 보급 확대	
⑨	공공시설 또는 관공서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⑩	기타 (구체적: _____)	

번호	2. 일상생활 관련	순위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③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④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강화	
⑤	장애인 생활교육기관 확충(점자, 수화 교육 등)	
⑥	장애유형별 생활지원서비스(수화통역인력, 전문상담서비스 확충 등)	
⑦	기타 (구체적: _____)	

번호	3. 의료서비스 관련	순위
①	지역보건소 및 병원의 접근성 향상	
②	의료급여 비수급자 의료비 일정 부분 지원	
③	의료서비스 가정방문 지원 확대 실시	
④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 실시	
⑤	입원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⑥	입원시 간병인 제공 제도화	
⑦	수급자 재심사 기간 동안 긴급 의료급여 지원	
⑧	취업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혜택 지속적 제공	
⑨	기타 (구체적: _____)	

번호	4. 지역사회 환경 관련	순위
①	지역사회 내 이동 편의성(도로, 주거지 진입로 등)	
②	편의시설 접근성(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등)	
③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점자유도블럭, 점멸등 등)	
④	인적 네트워크(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등)	
⑤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장애에 대한 인식(편견 없는 태도 등)	
⑥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⑦	기타 (구체적: _____)	

번호	5. 전환서비스 관련 (전환서비스 이용경험자만 응답하세요.)	순위
①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체험홈, 자립생활기정 등) 확충	
②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입소기간 연장	
③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입주자격 완화	
④	장애인전환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⑤	장애인전환서비스시설 퇴소자를 위한 사후지원 확대	
⑥	기타 (구체적: _____)	

서울시복지재단-2014-50

201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발행일 : 2014년 12월
-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 발행인 : 임성규
- 편집인 : 김혜정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전 화 : 02-2011-0400
- 팩 스 : 02-2011-0500
- www.welfare.seoul.kr
- 인 쇄 : 명문인쇄공사 02-2275-5373
- ISBN 978-89-6298-331-9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